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100062-14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시행규칙·행정지침

2025. 8.



CONTENTS 목 차

-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1
-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1999)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시행규칙 101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Hague Agreement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지침 223
- 참고자료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관련 서식 255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
시행규칙 · 행정지침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TABLE OF CONTENTS

INTRODUCTORY PROVISIONS

-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Article 2: Applicability of Other Protection Accorded by Laws of
Contracting Parties and by Certain International Treaties

CHAPTER I: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INTERNATIONAL REGISTRATION

- Article 3: Entitlement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rticle 4: Procedure for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ticle 5: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ticle 6: Priority
Article 7: Designation Fees
Article 8: Correction of Irregularities
Article 9: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ticle 10: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ublication and Confidential Copie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ticle 11: Deferment of Publication
Article 12: Refusal
Article 13: Special Requirements Concerning Unity of Design
Article 14: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¹⁾

목 차

도입규정

- 제1조 : 약어적 표현
제2조 : 계약당사자의 법과 특정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보호의 적용가능성

제1장 :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 제3조 : 국제출원의 적격
제4조 : 국제출원의 절차
제5조 : 국제출원의 내용
제6조 : 우선권
제7조 : 지정수수료
제8조 : 하자의 보정
제9조 : 국제출원의 제출일
제10조 : 국제등록, 국제등록일, 공개 및 국제등록의 비밀사본

- 제11조 : 공개의 연기
제12조 : 거절
제13조 : 디자인의 단일성에 관한 특별 요건
제14조 : 국제등록의 효력

- Article 15: Invalidation
- Article 16: Recording of Change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Article 17: Initial Term and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Duration of Protection
- Article 18: Information Concerning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CHAPTER II: ADMINISTRATIVE PROVISIONS

- Article 19: Common Office of Several States
- Article 20: Membership of the Hague Union
- Article 21: Assembly
- Article 22: International Bureau
- Article 23: Finances
- Article 24: Regulations

CHAPTER III: REVISION AND AMENDMENT

- Article 25: Revision of This Act
- Article 26: Amendment of Certain Articles by the Assembly

CHAPTER IV: FINAL PROVISIONS

- Article 27: Becoming Party to This Act
- Article 28: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 Article 29: Prohibition of Reservations
- Article 30: Declaration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 Article 31: Applicability of the 1934 and 1960 Acts
- Article 32: Denunciation of This Act
- Article 33: Languages of This Act; Signature
- Article 34: Depositary

- 제15조 : 무효
제16조 : 국제등록에 관한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의 기록
제17조 : 국제등록의 최초 보호기간과 갱신 그리고 보호기간
제18조 :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제2장 : 행정적 규정

- 제19조 : 다수 국가의 공통관청
제20조 : 헤이그 동맹의 회원
제21조 : 총회
제22조 : 국제사무국
제23조 : 재정
제24조 : 규칙

제3장 : 개정

- 제25조 : 이 개정협정의 개정
제26조 : 총회에서의 특정 조항의 개정

제4장 : 최종 규정

- 제27조 :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
제28조 : 비준 및 가입의 발효일
제29조 : 유보 금지
제30조 : 계약당사자에 의한 선언
제31조 :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의 적용 가능성
제32조 : 이 개정협정의 폐기
제33조 : 이 개정협정의 언어; 서명
제34조 : 기탁처

INTRODUCTORY PROVISIONS

Article 1 Abbreviated Express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i) the Hague Agreement means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henceforth renamed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 (ii) this Act means the Hague Agreement as established by the present Act;
- (iii) Regulations means the Regulations under this Act;
- (iv) prescribed mea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 (v) Paris Convention mean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igned at Paris on March 20, 1883, as revised and amended;
- (vi) international registr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effected according to this Act;
- (vii) international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viii) International Register means the official collection of data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aintai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hich data this Act or the Regulations require or permit to be recorded, regardless of the medium in which such data are stored;
- (ix)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or a legal entity;

도입규정

제 1 조 약어적 표현 ²⁾

이 개정협정의 목적상 :

- 1) “헤이그 협정”이란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변경된 명칭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을 말한다.³⁾
- 2) “이 개정협정”이란 현재의 개정협정에 의하여 마련된 헤이그 협정을 말한다.
- 3) “규칙”이란 이 개정협정상의 규칙을 말한다.
- 4) “규정된”이란 규칙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5) “파리 협약”이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되고, 그 후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을 말한다.
- 6) “국제등록”이란 이 개정협정에 따라 실행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한다.
- 7) “국제출원”이란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
- 8) “국제등록부”란 국제사무국이 보유한 국제등록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의 집합으로서, 그 자료의 저장매체에 관계없이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이 기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자료이다.⁴⁾
- 9)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x) applicant means the person in whose nam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 (xi) holder means the person in whose name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xii)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ean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eligible to become party to this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ii);
- (xiii) Contracting Party means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y to this Act;
- (xiv)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or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from which the applicant derives its entitlement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virtue of satisfying, in relation to that Contracting Party,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Article 3; where there are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from which the applicant may, under Article 3, derive its entitlement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means the one which, among those Contracting Parties, is indicated as such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xv)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means,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 State, the territory of that State and, where the Contracting Party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territory in which the constituent treaty of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pplies;
- (xvi) Office means the agency entrusted by a Contracting Party with the grant of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with effect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 (xvii) Examining Office means an Office which ex officio examines applications filed with it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at least to determine whether the industrial designs satisfy the condition of novelty;

- 10) “출원인”이란 그 명의로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인을 말한다.
- 11) “권리자”란 그의 명의로 국제등록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인을 말한다.
- 12) “정부간 기구”란 제27조제1항제2목에 따라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⁵⁾
- 13) “계약당사자”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⁶⁾
- 14)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란 그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제3조에 명시된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함으로써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적격을 갖는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들 중 하나를 말한다. 출원인이 제3조에 따라 국제출원의 적격을 가질 수 있는 계약당사자가 둘 이상일 경우,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란 그러한 계약당사자들 중 국제출원에 그와 같이 표시된 하나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⁷⁾
- 15) “계약당사자의 영역”이란 계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영역을 말하고, 계약당사자가 정부간 기구인 경우 그 정부간 기구를 구성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 16) “관청”이란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효력을 갖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⁸⁾
- 17) “심사관청”이란 적어도 산업디자인이 신규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제출되는 출원을 직권으로 심사하는 관청을 말한다.⁹⁾

- (xviii) designation means a request that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have effect in a Contracting Party; it also means the recording,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f that request;
- (xix)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nd designated Office means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respectively, to which a designation applies;
- (xx) 1934 Act means the Act signed at London on June 2, 1934, of the Hague Agreement;
- (xxi) 1960 Act means the Act signed at The Hague on November 28, 1960, of the Hague Agreement;
- (xxii) 1961 Additional Act means the Act signed at Monaco on November 18, 1961, additional to the 1934 Act;
- (xxiii) Complementary Act of 1967 means the Complementary Act signed at Stockholm on July 14, 1967, as amended, of the Hague Agreement;
- (xxiv) Union means the Hague Union established by the Hague Agreement of November 6, 1925, and maintained by the 1934 and 1960 Acts, the 1961 Additional Act, the Complementary Act of 1967 and this Act;
- (xxv) Assembly means the Assembly referred to in Article 21(1)(a) or any body replacing that Assembly;
- (xxvi) Organization mean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xxvii) Director General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Organization;
- (xxviii) International Bureau means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Organization;

- 18) “지정”이란 국제등록이 계약당사자에 효력을 갖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는 또한 그 신청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19) “지정 계약당사자” 및 “지정 관청”이란 각각 지정이 적용되는 계약당사자 및 계약당사자의 관청을 말한다.
- 20) “1934년 개정협정”이란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 21) “1960년 개정협정”이란 1960년 11월 28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 22) “1961년 추가 개정협정”이란 1934년 개정협정에 추가하여 1961년 11월 18일 모나코에서 서명된 개정협정을 말한다.
- 23) “1967년 보충 개정협정”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개정된, 헤이그 협정의 보충 개정협정을 말한다.
- 24) “동맹”이란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협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 1961년 추가 개정협정, 1967년 보충 개정협정 및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유지된 헤이그 동맹을 말한다.¹⁰⁾
- 25) “총회”란 제2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총회 또는 그 총회를 대체하는 단체를 말한다.¹¹⁾
- 26) “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 27) “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말한다.
- 28) “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xxix) instrument of ratification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instruments of acceptance or approval.

Article 2

Applicability of Other Protection Accorded by Laws of Contracting Parties and by Certain International Treaties

- (1) [Laws of Contracting Parties and Certain International Treaties]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greater protection which may be accorded by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nor shall they affect in any way the protection accorded to works of art and works of applied art by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and conventions, or the protection accorded to industrial design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nexed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2)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Par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Paris Convention which concern industrial designs.

CHAPTER I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ticle 3

Entitlement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ny person that is a national of a State that is a Contracting Party or of a State member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s a Contracting Party, or that has a domicile, a habitual residence 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29) “비준서”란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조 체약당사자의 법과 특정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보호의 적용가능성

(1)¹²⁾ [체약당사자의 법과 ¹³⁾특정 국제조약¹⁴⁾] 이 개정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제저작권 조약과 협약에 의하여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에 부여된 보호¹⁵⁾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에 부속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부여된 보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 협약의 준수 의무] 각 체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에 관련한 파리 협약의 규정을 준수한다.¹⁶⁾

제1장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제3조 국제출원의 자격¹⁷⁾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 거주지¹⁸⁾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인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Article 4

Procedure for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 [Direct or Indirect Filing]

- (a)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be filed,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either directly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rough the Office of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Contracting Party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that international applications may not be filed through its Office.

(2) [Transmittal Fee in Case of Indirect Filing] The Office of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pay a transmittal fee to it, for its own benefit, in respect of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through it.

Article 5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 [Mandatory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in the prescribed language or one of the prescribed languages and shall contain or be accompanied by

- (i) a request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is Act;
- (ii) the prescribed data concerning the applicant;
- (iii) the prescribed number of copies of a reproduction or, at the choice of the applicant, of several different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presented in the prescribed manner; however, where the industrial design is two-dimensional and a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instead of containing reproductions, be accompanied by the prescribed number of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

제4조¹⁹⁾ 국제출원의 절차

1. [직접 또는 간접 출원]

가.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출원인의 계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²⁰⁾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선언으로 자신의 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제출될 수 없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²¹⁾

2. [간접출원의 경우의 송달료]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그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에게 그 관청을 위한 송달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²²⁾

제5조 국제출원의 내용²³⁾

1. [국제출원의 필수내용]²⁴⁾ 국제출원은 규정된 언어 또는 규정된 언어들 중 하나로 작성되고 다음을 포함하거나 첨부한다.

1) 이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신청

2) 출원인에 관한 규정된 자료

3) 규정된 방식으로 제출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된 수의 도면 사본, 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규정된 수의 여러 개의 다른 도면 사본. 그러나 산업디자인이 2차원이고 제5항에 따라 공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출원에 도면을 포함하는 대신 규정된 수의 산업디자인 견본이 첨부될 수 있다.

- (iv) an indication of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as prescribed;
- (v) an indication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vi) the prescribed fees;
- (vii) any other prescribed particulars.

(2) [Additional Mandatory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Any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an Examining Office and whose law, at the time it becomes party to this Act, requires that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protection to an industrial design contain any of the elements specified in subparagraph (b) in order for that application to be accorded a filing date under that law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ose elements.
- (b) The elements that may be notifi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are the following:
 - (i) indica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that application;
 - (ii)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that application;
 - (iii) a claim.
- (c)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the designation of a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a notification under subparagraph (a), it shall also contain, in the prescribed manner, any element that was the subject of that notification.

- 4)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이 사용되는데 관련된 물품 또는 복수의 물품의 규정된 바에 따른 표시²⁵⁾
- 5) 지정 계약당사자²⁶⁾의 표시
- 6) 규정된 수수료²⁷⁾
- 7) 그 밖의 모든 규정된 세부사항²⁸⁾

2. [국제출원의 추가적인 필수내용]

가.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이고,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당시에 자국 법상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받기 위한 출원이 그 법에 따라 제출 일을 부여받기 위하여 나호에 명시된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요소를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나. 가호에 따라 통지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출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신원에 관한 표시
- 2) 출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도면 또는 특색에 대한 간단한 설명
- 3) 청구범위

다. 국제출원이 가호에 따른 통지를 한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은 또한 규정된 방식으로 그 통지의 대상이 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 (3) [Other Possibl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or be accompanied by such other elements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 (4) [Several Industrial Designs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include two or more industrial designs.
- (5) [Request for Deferred Publica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a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Article 6

Priority

- (1) [Claiming of Priority]
 - (a)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a declaration claiming, under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the priority of one or more earlier applications filed in or for any country party to that Convention or any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b) The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may be made after the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such case, the Regulations shall prescribe the latest time by which such declaration may be made.
- (2) [International Application Serving as a Basis for Claiming Priorit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as from its filing date and whatever may be its subsequent fate, be equivalent to a regular fil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3. [그 밖의 국제출원에 포함 가능한 내용] 국제출원은 규칙에 명시된 그 밖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²⁹⁾
4. [동일한 국제출원에 속한 여러 개의 산업디자인]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은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³⁰⁾
5. [공개 연기 신청] 국제출원은 공개의 연기 신청을 포함할 수 있다.³¹⁾

제6조 우선권

1. [우선권의 주장]³²⁾

가. 국제출원은 파리 협약의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에 제출되거나 이들에 대하여 제출된 하나 이상의 선출원³³⁾에 대하여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³⁴⁾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규칙은 국제출원 이후에도 가호에 언급된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규칙은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늦은 기한을 규정한다.³⁵⁾

2. [우선권주장을 위한 근거로서의 국제출원] 국제출원은 그 제출일부터 그리고 이후의 결과와 관계없이 파리 협약 제4조의 의미 내에서 정규출원과 동등하다.³⁶⁾

Article 7

Designation Fees

- (1) [Prescribed Designation Fee] The prescribed fees shall include, subject to paragraph (2), a designation fee for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 (2) [Individual Designation Fee] Any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an Examining Office and any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that, in connection with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which it is designat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renewal of any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sulting from such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prescribed designation fe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replaced by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whose amount shall be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and can be changed in further declarations. The said amount may be fixed by the said Contracting Party for the initial term of protection and for each term of renewal or for the maximum period of protection allowed by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However, it may not be higher than the equivalent of the amount which the Office of that Contracting Party would be entitled to receive from an applicant for a grant of protection for an equivalent period to the same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that amount being diminished by the savings resulting from the international procedure.
- (3) [Transfer of Designation Fees] The designation fe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transfer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the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which those fees were paid.

Article 8

Correction of Irregularities

- (1) [Exa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the International Bureau finds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oes not, at the time of its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it shall invite the applicant to make the required corrections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제7조 지정수수료³⁷⁾

1. [규정된 지정수수료]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정된 수수료는 각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한 지정수수료를 포함한다.
2. [개별 지정수수료]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인 계약당사자 및 정부간 기구인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선언으로 지정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국제출원으로 인한 국제등록의 갱신과 관련하여 제1항에 언급된 규정된 지정수수료를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한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³⁸⁾ 개별 지정수수료의 금액은 선언에 표시되며 추후 선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상기 금액은 최초 보호기간과 각 갱신기간, 또는 관련된 계약당사자가 허용하는 최대 보호기간에 대하여 상기 계약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그 금액은, 동일한 수의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보호 부여를 위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관청이 출원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금액의 상당치를 초과할 수 없고, 국제출원절차로 인해 간소화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한다.⁴⁰⁾
3. [지정수수료의 송금] 국제사무국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지정수수료를 그러한 수수료가 납부된 것과 관련된 계약당사자에게 송금한다.⁴¹⁾

제8조 하자의 보정⁴²⁾

1. [국제출원의 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때에 그 국제출원인이 개정협정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요청한다.⁴³⁾

(2) [Irregularities Not Corrected]

- (a) If the applicant does not comply with the invitation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subject to subparagraph (b), be considered abandoned.
- (b) In the case of an irregularity which relates to Article 5(2) or to a special requirement notified to the Director General by a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f the applicant does not comply with the invitation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deemed not to contain the design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9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1)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Directly]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directly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filing date shall, subject to paragraph (3), be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2)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Indirectly]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the filing date shall be determined as prescribed.
- (3)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Certain Irregularities]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n irregularity which is prescribed as an irregularity entailing a postponement of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filing date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correction of such irregularity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2. [보정되지 않은 하자]

가. 출원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나호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그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⁴⁴⁾

나. 제5조제2항과 관련되거나 규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특별요건과 관련된 하자의 경우, 출원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출원은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⁴⁵⁾

제9조
국제출원의 제출일⁴⁶⁾

1. [직접 제출된 국제출원]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되는 경우, 제출일은 제3항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이다.
2. [간접 제출된 국제출원]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제출되는 경우, 제출일은 규정된 대로 결정된다.
3. [특정 하자가 있는 국제출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 국제출원에 국제출원의 제출일의 지연을 수반하는 하자로 규정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일은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하자의 보정을 접수하는 날이다.

Article 10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ublication and Confidential Copie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gister each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mmediately upon receipt by i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where corrections are invited under Article 8, immediately upon receipt of the required corrections. The registration shall be effected whether or not publication is deferred under Article 11.
- (2)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a) Subject to subparagraph (b),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b)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n irregularity which relates to Article 5(2),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correction of such irregularity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hichever is the later.
- (3) [Publication]
 - (a)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Such publication shall be deemed in all Contracting Parties to be sufficient publicity, and no other publicity may be required of the holder.
 - (b)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send a copy of th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each designated Office.

제10조

국제등록, 국제등록일, 공개 및 국제등록의 비밀사본

1. [국제등록]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접수한 즉시, 또는 제8조에 따른 보정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정을 접수한 즉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을 등록한다. 등록은 제11조에 따라 공개가 연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⁴⁷⁾

2. [국제등록일]⁴⁸⁾

가.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의 제출일이다.⁴⁹⁾

나.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 국제출원에 제5조제2항과 관련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등록일은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하자의 보정을 접수하는 날 또는 국제출원의 제출일 중 나중 날이다.⁵⁰⁾

3. [공개]

가.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개된다. 그러한 공개는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고 권리자에게 그 밖의 공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⁵¹⁾

나.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공개 사본을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⁵²⁾

(4)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Before Publication] Subject to paragraph (5) and Article 11(4)(b),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keep in confidence each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til publication.

(5) [Confidential Copies]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mmediately after registration has been effected, send a copy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long with any relevant statement, document or specimen accompany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each Office that has notified the International Bureau that it wishes to receive such a copy and has been designa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 The Office shall, unti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keep in confidence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which a copy has been sent to i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may use the said copy only for the purpose of the exa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of ap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filed in or for the Contracting Party for which the Office is competent. In particular, it may not divulge the contents of any su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any person outside the Office other than the holder of that international registration, except for the purposes of an administrative or legal proceeding involving a conflict over entitlement to fil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n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based. In the case of such an administrative or legal proceeding,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only be disclosed in confidence to the parties involved in the proceeding who shall be bound to respect the confidentiality of the disclosure.

4. [공개 전 비밀유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은 각 국제출원 및 각 국제등록을 공개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한다.⁵³⁾

5. [비밀사본]

가. 국제사무국은 등록의 효력이 발생된 후 즉시, 국제등록의 사본을 국제출원에 첨부되는 관련 기술서, 서류 또는 견본과 함께, 그러한 사본을 접수하기를 원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출원에서 지정된 각 관청에 송부한다.⁵⁴⁾

나. 관청은 국제사무국에서 국제등록을 공개할 때까지 국제사무국이 보낸 각 국제등록의 사본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제등록의 심사 목적과 그 관청이 관할하는 계약당사자에서 제출되거나 그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심사 목적으로만 해당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관청은 그러한 국제등록 내용을 국제등록의 권리자 이외 관청 외부의 어떠한 인에게도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그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의 적격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경우, 국제등록의 내용은 공개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그 소송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비밀리에만 공개될 수 있다.

Article 11

Deferment of Publication

(1) [Provisions of Laws of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Deferment of Publication]

- (a)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the deferment of the public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for a period which is less than the prescribed period,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llowable period of deferment.
- (b)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the deferment of the public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the Contracting Party shall,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at fact.

(2) [Deferment of Publication]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the publication shall take place,

- (i) where n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at the expiry of the prescribed period or,
- (ii) where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a), at the expiry of the period notified in such declaration or,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su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t the expiry of the shortest period notified in their declarations.

(3) [Treatment of Requests for Deferment Where Deferment Is Not Possible Under Applicable Law] Where deferment of publication has been requested and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b) that deferment of publication is not possible under its law,

제11조 공개의 연기⁵⁵⁾

1. [공개의 연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 규정]⁵⁶⁾

가. 계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의 공개의 연기를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허용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연기 기간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나. 계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의 공개의 연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그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⁵⁷⁾

2. [공개의 연기]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 신청을 포함하는 경우, 공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이루어진다.

1) 국제출원에 지정된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⁵⁸⁾ 또는

2) 국제출원에 지정된 계약당사자 중 제1항가호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그러한 선언으로 통지된 기간이 만료된 때⁵⁹⁾ 또는 그러한 지정 계약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선언으로 통지된 최단 기간이 만료된 때⁶⁰⁾

3. [적용 가능한 법⁶¹⁾에 따라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의 처리]⁶²⁾ 공개의 연기가 신청되었고, 국제출원에 지정된 계약당사자 중 누구든지 자국 법에 따라 공개의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제1항나호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 (i) subject to item (ii),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ify the applicant accordingly; if,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applicant does not, by notice in writing to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draw the designation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disregard the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 (ii) where, instead of containing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accompanied by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disregard the designation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accordingly.
- (4) [Request for Earlier Publication or for Special Access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a)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deferment applicable under paragraph (2), the holder may request publication of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which case the period of deferment in respect of such industrial design or design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expired on the date of receipt of such reques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b) The holder may also,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deferment applicable under paragraph (2), request the International Bureau to provide a third party specified by the holder with an extract from, or to allow such a party access to,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5) [Renunciation and Limitation]
 - (a) If,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deferment applicable under paragraph (2), the holder renounces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ll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he industrial design or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not be published.

- 1) 2)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은 그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서면 통지로 상기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공개의 연기 신청을 무시한다.⁶³⁾
- 2) 국제출원에 산업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는 대신 산업디자인의 견본이 첨부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무시하고 이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⁶⁴⁾

4.⁶⁵⁾ [조기 공개의 신청 또는 국제등록에 대한 특별열람의 신청]

가.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⁶⁶⁾동안 언제라도 권리자는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1개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기 기간은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신청을 접수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⁶⁷⁾

나. 권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그 권리자가 명시한 제3자에게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초록을 제공하거나, 그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⁶⁸⁾

5. [포기 및 감축]^{69),70)}

가.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권리자가 모든 지정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 (b) If,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deferment applicable under paragraph (2), the holder limits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o one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other industrial design or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not be published.
- (6) [Publication and Furnishing of Reproductions]
- (a) At the expiration of any period of deferment applicabl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publis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f such fees are not paid as prescribed,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canceled and publication shall not take place.
 - (b)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accompanied by one or more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iii), the holder shall submit the prescribed number of copies of a reproduction of each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that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To the extent that the holder does not do s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canceled and publication shall not take place.

Article 12

Refusal

- (1) [Right to Refuse] The Office of any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may, where the conditions for the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are not met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fuse the effects, in part or in whol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no Office may refuse the effects, in part or in whole, of any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 the ground that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form or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at ar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Regulations or are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ose requirements have not been satisfied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나.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권리자가 모든 지정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하나 또는 일부의 산업 디자인으로 국제등록을 감축하는 경우,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나머지 하나의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6. [공개⁷¹⁾ 및 도면의 제공]⁷²⁾

- 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이 만료된 때, 국제사무국은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국제등록을 공개한다.⁷³⁾ 그러한 수수료가 규정된 대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되고 공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나. 제5조제1항제3목에 따라 국제출원에 1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의 견본을 첨부한 경우, 권리자는 그 출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에 대한 규정된 수의 도면 사본을 규정된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⁷⁴⁾ 권리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등록은 취소되고 공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거절

1. [거절 권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지정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보호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해당 계약당사자 영역에서의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효력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과 관련되는 요건이나 그러한 요건에 부가된 또는 그러한 요건과 다른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과 관련되는 요건이 해당 계약당사자의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청이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⁷⁵⁾

(2) [Notification of Refusal]

- (a) The refusal of the effects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in a notification of refusal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 (b) Any notification of refusal shall state all the grounds on which the refusal is based.

(3) [Transmission of Notification of Refusal; Remedies]

-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without delay, transmit a copy of the notification of refusal to the holder.
 - (b) The holder shall enjoy the same remedies as if any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ad been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Office that communicated the refusal. Such remedies shall at least consist of the possibility of a re-examination or a review of the refusal or an appeal against the refusal.
- (4) [Withdrawal of Refusal] Any refusal may be withdrawn, in part or in whole, at any time by the Office that communicated it.

Article 13

Special Requirements Concerning Unity of Design

- (1) [Notification of Special Requirements] Any Contracting Party whose law, at the time it becomes party to this Act, requires that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same application conform to a requirement of unity of design, unity of production or unity of use, or belong to the same set or composition of items, or that only one independent and distinct design may be claimed in a single application,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accordingly. However, no such declara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an applicant to include two or more industrial designs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even if the application designates the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the declaration.

2. [거절 통지]

가. 국제등록의 효력에 대한 거절은 거절 통지로서 규정된 기간⁷⁶⁾ 내에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⁷⁷⁾

나. 거절 통지에는 거절의 근거가 되는 모든 이유를 기재한다.⁷⁸⁾

3. [거절 통지의 송부, 구제수단]

가. 국제사무국은 거절 통지 사본을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나.⁷⁹⁾ 권리자는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이 거절을 통보한 관청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 보호의 부여를 위한 출원의 대상이 된 것처럼 동일한 구제수단을 향유한다. 그러한 구제수단은 적어도 재심사 또는 거절의 재검토 또는 거절에 대응한 불복청구의 가능성을 포함한다.⁸⁰⁾

4.⁸¹⁾ [거절 철회] 어떠한 거절도 이를 통보한 관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⁸²⁾

제13조 디자인의 단일성에 관한 특별 요건⁸³⁾

1. [특별 요건의 통지] 이 법의 당사자가 될 당시 법에서 동일한 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단일성, 생산의 단일성 또는 사용의 단일성 요건에 부합하거나 한 별 물품이나 합성물의 구성요소에 속할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디자인만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당사자는 사무국장에게 이에 따라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⁸⁴⁾ 그러나, 그러한 선언은, 출원이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하더라도, 제5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Effect of Declaration] Any such declaration shall enable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it to refuse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12(1) pend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notified by that Contracting Party.
- (3) [Further Fees Payable on Division of Registration] Where, following a notification of refus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divided before the Office concerned in order to overcome a ground of refusal stated in the notification, that Office shall be entitled to charge a fee in respect of each additional international application that would have been necessary in order to avoid that ground of refusal.

Article 14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1) [Effect as Application Under Applicable La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from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ave at least the same effect in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s a regularly-filed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 (2) [Effect as Grant of Protection Under Applicable Law]
- (a) In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e Office of which has not communicated a refus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grant of protection for the industrial design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at the latest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allowed for it to communicate a refusal or, where a Contracting Party has made a corresponding declaration under the Regulations, at the latest at the time specified in that declaration.

2. [선언의 효력] 그러한 선언은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의 관청으로 하여금 그 계약당사자가 통지한 요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등록의 분할에 관하여 지불하여야 할 추가 수수료] 제2항에 따른 거절 통지 이후, 그 통지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에서 국제등록이 분할⁸⁵⁾되는 경우, 그 관청은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각각의 추가적인 국제출원에 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⁸⁶⁾

제14조 국제등록의 효력

1.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출원으로서의 효력]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각각의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그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출된 출원과 적어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⁸⁷⁾
2.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보호 부여로서의 효력]
 - 가. 관청이 제12조에 따라 거절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던 각각의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은, 늦어도 거절을 통보하기 위하여 허용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또는 계약당사자가 규칙에 따라 상응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늦어도⁸⁸⁾ 그 선언에 명시된 때에, 그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보호 부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⁸⁹⁾

- (b) Where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has communicated a refusal and has subsequently withdrawn, in part or in whole, that refusal,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to the extent that the refusal is withdrawn, have the same effect in that Contracting Party as a grant of protection for the industrial design under the law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at the latest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fusal was withdrawn.
 - (c) The effect given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design or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at registration as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 Bureau by the designated Office or, where applicable, as amended in the procedure before that Office.
- (3) [Declaration Concerning Effect of Designation of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a) Any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an Examining Office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that, where it is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the design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have no effect.
 - (b) Where a Contracting Party having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indicated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both as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and as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disregard the design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15

Invalidation

- (1) [Requirement of Opportunity of Defense] In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of the effects, in part or in whol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not be pronounced without the holder having, in good time, been afforded the opportunity of defending his rights.

나. 지정 계약당사자의 관청이 거절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거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한 경우, 국제등록은 거절이 철회되는 범위 내에서 늦어도 거절이 철회된 날부터 그 계약당사자에서 상기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보호 부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⁹⁰⁾

다. 이 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주어진 효력은, 지정 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하였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그 관청에서의 절차에서 보정된 그 등록의 대상이 되는 1개의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에 적용된다.⁹¹⁾

3.⁹²⁾ [출원인의 계약당사자의 지정 효력에 관한 선언]

가.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인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자신이 출원인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국제등록상 그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으로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나. 가호에 언급된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가 출원인의 계약당사자와 지정 계약당사자로서 국제출원에 모두 표시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무시한다.

제15조 무효

1. [항변 기회 요건] 지정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는,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 그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는 결정될 수 없다.

- (2) [Notification of Invalidation]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ave been invalidated shall, where it is aware of the invalidation, notify i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rticle 16

Recording of Change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1) [Recording of Changes and Other Matter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as prescribed, recor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i) any change in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and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new owner is entitled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Article 3,
 - (ii) any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holder,
 - (iii)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or holder and any other relevant fact concerning such representative,
 - (iv) any renunciation, by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v) any limitation, by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o one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vi) any in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of the effects,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2. [무효의 통지] 그 영역에서 국제등록의 효력이 무효화된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무효를 알게 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지한다.⁹³⁾

제16조 국제등록에 관한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의 기록

1.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의 기록] 국제사무국은 규정된 대로 다음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⁹⁴⁾
- 1)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그리고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⁹⁵⁾ 다만, 새로운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권리자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 3)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의 선임과 그러한 대리인에 관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실
 - 4)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권리자에 의한 국제등록의 포기⁹⁶⁾
 - 5)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권리자에 의한 국제등록을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중 하나 또는 일부로의 국제등록의 감축⁹⁷⁾
 - 6)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지정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의 무효

- (vii) any other relevant fact, identified in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rights in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2) [Effect of Recording in International Register] Any recording referred to in items (i), (ii), (iv), (v), (vi) and (vii) of paragraph (1)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if it had been made in the Register of the Office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except that a Contracting Party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that a recording referred to in item (i) of paragraph (1) shall not have that effect in that Contracting Party until the Office of that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the statements or documents specified in that declaration.
- (3) [Fees] Any recording made under paragraph (1) may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a fee.
- (4) [Public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ublish a notice concerning any recording made under paragraph (1). It shall send a copy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to the Office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Article 17

Initial Term and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Duration of Protection

- (1) [Initial Term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effected for an initial term of five years counted from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2)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renewed for additional terms of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procedure and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 (3) [Duration of Protection 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7)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의 권리에 관하여 규칙에 적시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실⁹⁸⁾
2. [국제등록부의 기록에 대한 효력] 제1항제1목, 제2목, 제4목, 제5목, 제6목 및 제7목에 언급된 모든 기록은 각각의 해당 계약당사자 관청의 등록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⁹⁹⁾ 다만, 계약당사자가 제1항제1목에 언급된 기록이 계약당사자 관청이 그 선언에 명시된 기술서 또는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는 그 계약당사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고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수료]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기록은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¹⁰⁰⁾
4. [공개] 국제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기록을 공개한다. 국제사무국은 각각의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공개 사본을 송부한다.

제17조 국제등록의 최초 보호기간과 갱신, 그리고 보호기간

1. [국제등록의 최초 보호기간]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의 최초 보호기간 동안 유효하다.
2. [국제등록의 갱신] 국제등록은 규정된 절차에¹⁰¹⁾ 따라, 그리고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3. [지정 계약당사자에서의 보호기간]¹⁰²⁾

- (a) Provided that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renewed, and subject to subparagraph (b), the duration of protection shall, in each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be 15 years counted from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b) Where the law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provides for a duration of protection of more than 15 years for an industrial design for which protection has been granted under that law, the duration of protection shall, provided that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renewed, be the same as that provided for by the law of that Contracting Party.
- (c)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maximum duration of protection provided for by its law.
- (4) [Possibility of Limited Renewal]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effected for any or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and for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5) [Recording and Publication of Renewal]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renewals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publish a notice to that effect. It shall send a copy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to the Office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Article 18

Information Concerning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1) [Access to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supply to any person applying therefor, upon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extracts from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 respect of any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
- (2) [Exemption from Legalization] Extracts from the International Register suppli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exempt from any requirement of legalization in each Contracting Party.

가. 국제등록이 갱신된 경우, 그리고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부터 기산하여 15년이다.¹⁰³⁾

나. 지정 계약당사자의 법이 보호가 부여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그 법에 따라 15년을 초과하는 보호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국제등록이 갱신되는 한, 보호기간은 그 계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¹⁰⁴⁾

다.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법에 의하여 규정된 보호의 최장 기간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¹⁰⁵⁾

4. [감축된 갱신의 가능성] 국제등록의 갱신은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수 있다.¹⁰⁶⁾

5. [갱신의 기록 및 공개]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갱신사항을 기록하고 그 효력에 대하여 공개한다. 국제사무국은 각각의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공개 사본을 송부한다.

제18조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1. [정보에의 접근] 국제사무국은 모든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하여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신청한 인에게 국제등록부의 초록 또는 국제등록부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¹⁰⁷⁾

2. [인증 면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국제등록부의 초록은 각 계약당사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CHAPTER II

ADMINISTRATIVE PROVISIONS

Article 19

Common Office of Several States

- (1) [Notification of Common Office] If several States intending to become party to this Act have effected, or if several States party to this Act agree to effect, the unification of their domestic legislation on industrial designs, they may notify the Director General
- (i) that a common Office shall be substituted for the national Office of each of them, and
 - (ii) that the whole of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which the unified legislation applies shall be deemed to be a single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s 1, 3 to 18 and 31 of this Act.
- (2) [Time at Which Notification Is to Be Made]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made,
- (i) in the case of States intending to become party to this Act,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7(2);
 - (ii) in the case of States party to this Act, at any tim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ir domestic legislation has been effected.
- (3) [Date of Entry into Effect of the Notification]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take effect,
- (i) in the case of States intending to become party to this Act, at the time such States become bound by this Act;
 - (ii) in the case of States party to this A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thereof by the Director General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

제2장 행정적 규정

제19조¹⁰⁸⁾ 다수 국가의 공통관청

1. [공통관청의 통지]¹⁰⁹⁾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몇몇 국가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내법령을 통합하였거나,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몇몇 국가가 이를 통합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사무국장에게 다음을 통지할 수 있다.
 - 1) 공통관청이 그들 각각의 국가관청을 대신한다는 것, 그리고
 - 2) 이 개정협정의 제1조,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제3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된 법령이 적용되는 각 국의 영역의 전부가 단일의 계약당사자로 간주된다는 것
2.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기]¹¹⁰⁾ 제1항에 언급된 통지는 다음의 경우 이루어진다.
 - 1)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국가의 경우,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를 기탁한 때
 - 2)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의 경우, 그들 국내법령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 언제든지
3. [통지의 발효일]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통지는 다음의 경우 발효한다.
 - 1)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국가의 경우, 그러한 국가가 이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때
 - 2)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의 경우, 사무국장이 그 밖의 계약당사자에게 이에 대해 통보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이나 그 통지서에 표시된 나중 날.

Article 20

Membership of the Hague Unio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members of the same Union as the States party to the 1934 Act or the 1960 Act.

Article 21

Assembly

(1) [Composition]

- (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members of the same Assembly as the States bound by Article 2 of the Complementary Act of 1967.
- (b) Each member of the Assembly shall be represented in the Assembly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and each delegate may represent only one Contracting Party.
- (c) Members of the Union that are not members of the Assembly shall be admitted to the meetings of the Assembly as observers.

(2) [Tasks]

- (a) The Assembly shall
 - (i) deal with all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Un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 (ii) exercise such rights and perform such tasks as are specifically conferred upon it or assigned to it under this Act or the Complementary Act of 1967;

제20조 헤이그 동맹의 회원

체약당사자는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국가 당사자와 동일한 동맹의 회원이 된다.¹¹¹⁾

제21조¹¹²⁾ 총회

1. [구성]

가. 체약당사자는 1967년 보충 개정협정 제2조에 기속되는 국가와 동일한 총회의 회원이다.

나. 총회의 각 회원은 총회에서 한 명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각 대표는 하나의 체약당사자만을 대표할 수 있다.

다. 총회의 회원이 아닌 동맹의 회원은 옵서버로서 총회의 회의에 입회가 허용된다.

2. [임무]

가. 총회는

- 1)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개정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 2) 이 개정협정 또는 1967년 보충 개정협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거나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 (iii) give directions to the Director General concerning the preparations for conferences of revision and decide the convocation of any such conference;
 - (iv) amend the Regulations;
 - (v) review and approve the reports and activities of the Director General concerning the Union, and give the Director General all necessary instructions concerning matter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Union;
 - (vi) determine the program and adopt the biennial budget of the Union, and approve its final accounts;
 - (vii) adopt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Union;
 - (viii) establish such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s it deems appropriat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Union;
 - (ix) subject to paragraph (1)(c), determine which Stat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admitted to its meetings as observers;
 - (x) take any other appropriate action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Union and perform any other functions as are appropriate under this Act.
- (b) With respect to matters which are also of interest to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the Assembly shall make its decisions after having heard the advice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 (3) [Quorum]
- (a) One-half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and have the right to vote on a given matter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purposes of the vote on that matter.

- 3) 사무국장에게 개정 회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그러한 회의의 소집을 결정한다.
 - 4) 규칙을 개정한다.
 - 5) 동맹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서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 6) 동맹의 사업을 결정하고 격년의 예산을 채택하며 동맹의 최종회계를 승인한다.
 - 7) 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 8)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위원회와 작업반을 설립한다.
 - 9) 제1항다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옵서버로서 회의에 입회가 허용되는 국가, 국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결정한다.
 - 10) 동맹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 개정협정에 따라 적절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 나. 기구에서 관장하는 그 밖의 동맹과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린다.

3. [정족수]

- 가. 주어진 사항에 관한 투표를 목적으로 한 정족수는 국가이면서 그 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 총회 회원의 과반수이다.

- (b)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if, in any session, the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have the right to vote on a given matter and are represented is less than one-half but equal to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and have the right to vote on that matter, the Assembly may make decisions but, with the exception of decisions concerning its own procedure, all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only if the conditions set forth hereinafter are fulfille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ommunicate the said decisions to the members of the Assembly which are States, have the right to vote on the said matter and were not represented and shall invite them to express in writing their vote or abstentio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If, at the expiration of this period, the number of such members having thus expressed their vote or abstention attains the number of the members which was lacking for attaining the quorum in the session itself, such decisions shall take effect provided that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majority still obtains.

(4) [Taking Decisions in the Assembly]

- (a) The Assembly shall endeavor to take its decisions by consensus.
- (b) Where a decision cannot be arrived at by consensus, the matter at issue shall be decided by voting. In such a case,
 - (i) each Contracting Party that is a State shall have one vote and shall vote only in its own name, and
 - (ii) any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vote, in place of its Member Stat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which are party to this Act, and no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if any one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to vote, and vice versa.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서, 국가이면서 주어진 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고 대표를 참석시킨 총회 회원의 수가, 국가이면서 그 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회원의 2분의 1미만이지만 3분의 1이상인 경우, 총회는 의결을 할 수 있으나, 자체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모든 결정은 다음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국가이면서 상기 사항에 관한 투표권이 있으며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총회의 회원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투표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하도록 권유한다, 그 기간의 만료 시, 그에 따라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한 그 회원의 수가, 그 회기의 정족수에 도달하는 데 부족하였던 회원의 수에 도달하는 경우, 필요한 과반수가 동시에 충족된다면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4. [총회에서의 의결]

가. 총회는 총의로 의결되도록 노력한다.

나. 총의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안건은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한 경우,

- 1) 국가인 각 계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명으로만 투표한다.
- 2) 정부간 기구인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에 상응하는 투표수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의 회원국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러한 정부간 기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 (c) On matters concerning only States that are bound by Article 2 of the Complementary Act of 1967,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not bound by the said Artic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whereas, on matters concerning only Contracting Parties, only the latter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5) [Majorities]

- (a) Subject to Articles 24(2) and 26(2), the decisions of the Assembly shall require two-thirds of the votes cast.
- (b) Absten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votes.

(6) [Sessions]

- (a) The Assembly shall meet once in every second calendar year in 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nd, in the abs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Organization.
- (b) The Assembly shall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either at the request of one-fourth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or on the Director Generals own initiative.
- (c) The agenda of each session shall be prepared by the Director General.

(7) [Rules of Procedure] The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Article 22

International Bureau

(1) [Administrative Tasks]

- (a)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related duties, as well as all other administrative tasks concerning the Union, shall be perform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다. 1967년 보충 개정협정 제2조에 기속되는 국가에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상기 조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계약당사자는 투표권이 없는 반면, 계약당사자에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오직 후자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5. [표결]

가.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2를 요구한다.

나.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회기]

가.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매 2년마다 한 번 정회기기에,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나. 총회는 총회 회원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사무국장의 발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기에 회합한다.

다. 각 회기의 의제는 사무국장이 준비한다.

(7) [절차 규칙] 총회는 자체 의사절차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22조¹¹³⁾ 국제사무국

1. [행정 업무]

가.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및 이와 관련된 의무, 그리고 동맹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b)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epare the meetings and provide the secretariat of the Assembly and of such committees of experts and working groups as may be established by the Assembly.
- (2) [Director General]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on and shall represent the Union.
- (3) [Meetings Other than Sessions of the Assembly] The Director General shall convene any committee and working group established by the Assembly and all other meetings dealing with matters of concern to the Union.
- (4) [Role of the International Bureau in the Assembly and Other Meetings]
 - (a) The Director General and persons designated by the Director General shall participate,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all meetings of the Assembly,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Assembly, and any other meetings convened by the Director General under the aegis of the Union.
 - (b) The Director General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ex officio secretary of the Assembly, and of the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meeting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5) [Conferences]
 -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e Assembly, make the preparations for any revision conferences.
 - (b)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consult wit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said preparations.
 - (c) The Director General and persons designated by the Director General shall take part, without the right to vote, in the discussions at revision conferences.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회의를 준비하고 총회 및 총회에서 설립되는 전문가위원회 및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동맹의 최고책임자가 되고 동맹을 대표한다.

3. [총회의 회기 이외의 회의] 사무국장은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과 동맹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그 밖의 모든 회의를 소집한다.

4.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서의 국제사무국의 역할]

가.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지명한 인은 투표권 없이 총회의 모든 회의,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및 작업반, 그리고 동맹의 후원으로 사무국장이 소집한 그 밖의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한 직원은 총회의 당연직 간사, 그리고 위원회, 작업반 및 가호에 언급된 그 밖의 회의의 당연직 간사이다.

5. [회의]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회의를 준비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상기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국제·국내 국가의 비정부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이 지명한 인은 개정회의의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여한다.

- (6) [Other Task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carry out any other tasks assigned to it in relation to this Act.

Article 23

Finances

(1) [Budget]

- (a) The Union shall have a budget.
- (b) The budget of the Union shall include the income and expenses proper to the Union and its contribution to the budget of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 (c) Expenses not attributable exclusively to the Union but also to one or more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expenses common to the Unions. The share of the Union in such common expenses shall be in proportion to the interest the Union has in them.

- (2) [Coordination with Budgets of Other Unions] The budget of the Union shall be established with due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coordination with the budgets of the other Unions administered by the Organization.

- (3) [Sources of Financing of the Budget] The budget of the Union shall be financ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 (i) fees relating to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ii) charges due for other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relation to the Union;
- (iii) sale of, or royalties on, the pub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Bureau concerning the Union;

6. [그 밖의 임무] 국제사무국은 이 개정협정과 관련하여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¹¹⁴⁾ 재정

(1) [예산]

가. 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나. 동맹의 예산은 동맹에 적절한 수입과 경비, 그리고 기구가 관리하는 동맹의 공통경비 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한다.

다. 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그 밖의 동맹에 귀속되는 경비는 동맹의 공통경비로 간주된다. 그러한 공통경비에서 동맹의 분담은 동맹이 공통경비에서 향유하는 이익에 비례한다.

2. [그 밖의 동맹의 예산과의 조정]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 예산과의 조정 요건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정해진다.

3. [예산의 재원] 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 1) 국제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 2) 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
- 3) 동맹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 판매 또는 그 인세

(iv) gifts, bequests and subventions;

(v) rents, interests and other miscellaneous income.

(4) [Fixing of Fees and Charges; Level of the Budget]

(a) The amounts of the fees referred to in paragraph (3)(i) shall be fixed by the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Charges referred to in paragraph 3(ii)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and shall be provisionally applied subject to approval by the Assembly at its next session.

(b) The amounts of the fees referred to in paragraph (3)(i) shall be so fixed that the revenues of the Union from fees and other sources shall be at least sufficient to cover all the expenses of the International Bureau concerning the Union.

(c) If the budget is not adopted before the beginning of a new financial period, it shall be at the same level as the budget of the previous year, as provid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5) [Working Capital Fund] The Union shall have a working capital fund which shall be constituted by the excess receipts and, if such excess does not suffice, by a single payment made by each member of the Union. If the fund becomes insufficient, the Assembly shall decide to increase it. The proportion and the terms of payment shall be fixed by the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6) [Advances by Host State]

(a) In the headquarters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State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Organization has its headquarters, it shall be provided that, whenever the working capital fund is insufficient, such State shall grant advances. The amount of those advances and the conditions on which they are granted shall be the subject of separate agreements, in each case, between such State and the Organization.

4) 증여, 유증 및 보조금

5) 임대료, 이자 및 그 밖의 잡수입

4. [수수료와 요금의 결정, 예산의 수준]

가. 제3항제1목에 언급된 수수료의 금액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정해진다. 제3항2목에 언급된 요금은 사무국장에 의하여 책정되고, 다음 회기에 총회에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나. 제3항제1목에 언급된 수수료의 금액은 수수료 및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얻는 동맹의 수익이 적어도 동맹과 관련한 국제사무국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데 충분하도록 결정된다.

다. 예산이 새로운 재정회기 시작 전에 채택되지 아니하면, 예산은 재정규칙에서 정한대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5. [운영기금] 동맹은 잉여 수령액으로, 그리고 그러한 잉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동맹의 각 회원이 내는 1회의 지불금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금을 둔다. 기금이 불충분하게 되면 총회는 증액을 결정한다. 지불의 비율과 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책정된다.

6 [소재국에 의한 선금]

가. 기구가 본부를 두고 있는 영역의 국가와 체결한 본부협정상, 운영기금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국가가 선금을 부여한다고 규정된다. 그러한 선금의 금액과 부여받는 조건은 각각의 경우에 그러한 국가와 기구 간의 개별협정의 대상이 된다.

- (b) The Stat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the Organization shall each have the right to denounce the obligation to grant advances, by written notification.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years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has been notified.
- (7) [Auditing of Accounts] The auditing of the accounts shall be effected by one or more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Union or by external auditors, as provided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They shall be designated, with their agreement, by the Assembly.

Article 24

Regulations

- (1) [Subject Matter] The Regulations shall govern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They shall, in particular, include provisions concerning
 - (i) matters which this Act expressly provides are to be prescribed;
 - (ii) further details concerning, or any details usefu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 (iii) any administrative requirements, matters or procedures.
- (2) [Amendmen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 (a) The Regulations may specify that certain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may be amended only by unanimity or only by a four-fifths majority.
 - (b) In order for the requirement of unanimity or a four-fifths majority no longer to apply in the future to the amendment of a provision of the Regulations, unanimity shall be required.

나. 가호에 언급된 국가와 기구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선금을 부여할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각각 가진다. 폐기는 그것이 통지된 연도의 마지막 날 후 3년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7.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에 규정된 대로 동맹의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이나 외부 감사관에 의하여 실행된다. 감사관은 그들의 동의로 총회에서 임명된다.

제24조 규칙

1. [규칙의 내용]¹¹⁵⁾ 규칙은 이 개정협정의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다.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1) 이 개정협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
- 2) 이 개정협정의 규정에 관한 또는 이를 이행하는데 유용한 모든 세부사항
- 3) 모든 행정적 요건, 사항 또는 절차

2. [규칙의 특정 규정의 수정]

가. 규칙에서 규칙의 특정 규정은 만장일치 또는 5분의4의 다수결로만 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나. 규칙의 규정을 장래에 개정하는 데 있어 만장일치 또는 5분의4의 다수결의 요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 (c) In order for the requirement of unanimity or a four-fifths majority to apply in the future to the amendment of a provision of the Regulations, a four-fifths majority shall be required.
- (3) [Conflict Between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ose of the Regulations, the former shall prevail.

CHAPTER III

REVISION AND AMENDMENT

Article 25

Revision of This Act

- (1) [Revision Conferences] This Act may be revised by a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 (2) [Revision or Amendment of Certain Articles] Articles 21, 22, 23 and 26 may be amended either by a revision conference or by the Assembl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Article 26

Amendment of Certain Articles by the Assembly

- (1) [Proposals for Amendment]
 - (a) Proposals for the amendment by the Assembly of Articles 21, 22, 23 and this Article may be initiated by any Contracting Party or by the Director General.
 - (b) Such proposal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 General to the Contracting Parties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다. 규칙의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 만장일치 또는 5분의4의 다수결의 요건을 장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5분의4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3. [이 개정협정과 규칙 간의 충돌] 이 개정협정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3장 개정

제25조 이 개정협정의 개정

1. [개정 회의] 이 개정협정은 계약당사자 회의에서 개정될 수 있다.¹¹⁶⁾
2. [특정 조항의 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는 개정회의에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제26조 총회에서의 특정 조항의 개정

1. [개정 제안]

가. 계약당사자 누구나 또는 사무국장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이 조에 대한 총회에서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은 그러한 제안을 적어도 총회에 의하여 검토하기 6개월 전에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2) [Majorities] Adoption of any amendment to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require a three-fourths majority, except that adoption of any amendment to Article 21 or to the present paragraph shall require a four-fifths majority.
- (3) [Entry into Force]
- (a) Except where subparagraph (b) applies, any amendment to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written notifications of acceptanc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have been received by the Director General from three-fourths of those Contracting Parties which, at the time the amendment was adopted, were members of the Assembly and had the right to vote on that amendment.
- (b) Any amendment to Article 21(3) or (4) or to this subparagraph shall not enter into force if, within six months of its adoption by the Assembly, any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Director General that it does not accept such amendment.
- (c) Any amendment which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bind all the Stat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tracting Parties at the time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or which become Contracting Parties at a subsequent date.

CHAPTER IV FINAL PROVISIONS

Article 27 Becoming Party to This Act

- (1) [Eligibility] Subject to paragraphs (2) and (3) and Article 28,
- (i) any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may sign and become party to this Act;

2. [다수결] 제1항에 언급된 조에 대한 개정의 채택은 4분의3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다만, 제21조 또는 현재의 항에 대한 개정의 채택을 위해서는 5분의 4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3. [발효]

가. 나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언급된 조의 모든 개정은 그 개정이 채택되었을 때 총회의 회원이었고, 그 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가졌던 계약당사자의 4분의3으로부터 계약당사자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면 수락통지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날 후 1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나.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이 호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총회에서 채택된 후 6개월 이내에 계약당사자의 어느 하나라도 그러한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하면 발효하지 아니한다.

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는 모든 개정은 그 개정이 발효하는 때 계약당사자이거나 그 이후에 계약당사자가 되는 모든 국가 및 정부간 기구를 기속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27조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

1. [적격성]¹¹⁷⁾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2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기구의 회원국은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¹¹⁸⁾

- (ii)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maintains an Office in which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may be obtained with effect in the territory in which the constituting treaty of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pplies may sign and become party to this Act, provided that at least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and provided that such Office is not the subject of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19.
- (2)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deposit
 - (i)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if it has signed this Act, or
 - (ii) an instrument of accession if it has not signed this Act.
- (3) [Effective Date of Deposit]
 - (a) Subject to subparagraphs (b) to (d), the effective date of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at instrument is deposited.
 - (b) The effective date of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f any State in respect of which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may be obtained only through the Office maintained by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f which that State is a member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 of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s deposited if that date is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 of the said State has been deposited.
 - (c) The effective date of 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containing or accompanied by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9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last of the instruments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group of States having made the said notification is deposited.

- 2) 정부간 기구의 구성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산업 디자인의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관청을 유지하는 정부간 기구는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 중 최소한 하나가 기구의 회원이고, 그러한 관청이 제19조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¹¹⁹⁾

2. [비준 또는 가입] 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누구나 다음을 기탁할 수 있다.

- 1)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였다면 그 비준서¹²⁰⁾ 또는
- 2)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입서

3. [기탁에 대한 발효일]

가. 나호부터 라호까지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대한 발효일은 그 증서가 기탁된 날이다.¹²¹⁾

나. 그 국가가 회원인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유지되는 관청을 통하여만 산업 디자인의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한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대한 발효일은 그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기탁된 날이 상기 국가의 증서가 기탁된 날보다 늦으면 그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기탁된 날이다.¹²²⁾

다. 제19조에 언급된 통지를 포함하거나 그 통지가 첨부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대한 발효일은 해당 통지를 한 국가 그룹 회원국의 마지막 증서가 기탁된 날이다.¹²³⁾

- (d)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f a State may contain or be accompanied by a declaration making it a condition to its being considered as deposited that the instrument of one other State or on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 the instruments of two other States, or the instruments of one other State and on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pecified by name and eligible to become party to this Act, is or are also deposited. The instrument containing or accompanied by such a declara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deposited on the day on which the condition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is fulfilled. However, when an instrument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itself contains, or is itself accompanied by, a declaration of the said kind, that instrument shall be considered as deposited on the day on which the condition specified in the latter declaration is fulfilled.
- (e) Any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d) may be withdrawn, in its entirety or in part, at any time. Any such withdrawal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n which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is received by the Director General.

Article 28

Effective Dat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 (1) [Instrument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only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at are deposited by States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7(1) and that have an effective date according to Article 27(3)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2)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six State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provided that,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annual statistics collect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t least three of those States fulfill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라.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가명이 명시되고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다른 하나의 국가 또는 하나의 정부간 기구의 증서, 또는 다른 2개의 국가의 증서, 또는 다른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또한 기탁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 선언이 첨부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 선언이 첨부된 증서는 그 선언에 표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언에 명시된 증서 그 자체가 상기 종류의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 선언이 첨부된 경우, 그 증서는 후자의 선언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된다.¹²⁴⁾

마. 라호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언제든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국장이 그 철회 통지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제28조 비준 및 가입의 발효일

1. [고려될 증서]¹²⁵⁾ 이 조의 목적상, 제27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기탁되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발효일이 있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만이 고려된다.
2. [이 개정협정의 발효]¹²⁶⁾ 이 개정협정은 6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만,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수집된 가장 최근의 연차 통계에 따라 여섯 개 국가 중 적어도 3개 국가가 다음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¹²⁷⁾,

- (i) at least 3,000 ap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have been filed in or for the State concerned, or
 - (ii) at least 1,000 ap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have been filed in or for the State concerned by residents of States other than that State.
- (3) [Entry into Force of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 (a) Any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ree months or more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shall become bound by this A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 (b) Any other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come bound by this A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at instrument.

Article 29

Prohibition of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to this Act are permitted.

Article 30

Declaration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 (1) [Time at Which Declarations May Be Made] Any declaration under Articles 4(1)(b), 5(2)(a), 7(2), 11(1), 13(1), 14(3), 16(2) or 17(3)(c) may be made

- 1) 해당 국가에 제출되었거나, 해당 국가에 대하여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¹²⁸⁾이 적어도 3,000건인 경우 또는
 - 2) 그 국가 이외의 국가의 거주자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제출되었거나 해당 국가에 대하여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적어도 1,000건인 경우
3. [비준 및 가입의 발효]¹²⁹⁾
- 가. 이 개정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누구나 이 개정협정의 발효일에 이 개정협정에 기속된다.¹³⁰⁾
- 나.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증서에 표시된 더 나중 날에 이 개정협정에 기속된다.¹³¹⁾

제29조 유보 금지

이 개정협정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계약당사자에 의한 선언¹³²⁾

1.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제4조제1항나호, 제5조제2항가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다호에 따른 선언은 다음과 같은 때에 할 수 있다.¹³³⁾

- (i)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7(2), in which case i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n which the State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having made the declaration becomes bound by this Act, or
 - (ii) after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7(2), in which case it shall become effectiv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but shall apply only in respect of any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ose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he same as, or is later than, the effective date of the declaration.
- (2) [Declarations by States Having a Common Offic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y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hat has been made by a State which has, with another State or other States, notified the Director General under Article 19(1) of the substitution of a common Office for their national Offices shall become effective only if that other State or those other States makes or make a corresponding declaration or corresponding declarations.
- (3) [Withdrawal of Declarations] Any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 In the case of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7(2), the withdrawal shall not affe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prior to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said withdrawal.

- 1)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를 기탁할 때 이 경우, 그 선언은 선언을 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가 이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날에 발효한다. 또는,

2)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를 기탁한 후 이 경우, 그 선언은 사무국장이 그것을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선언에 표시된 나중 날에 발효하나, 국제등록일이 그 선언의 발효일과 같거나 이보다 나중인 국제등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2. [공통관청을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한 선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국가 또는 그 밖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들의 국내 관청을 공통관청으로 대체한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은 그 다른 국가 또는 그 밖의 여러 국가들이 상응하는 1개 또는 복수의 선언을 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¹³⁴⁾
3. [선언의 철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통지에 표시된 나중 날에 발효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의 경우, 철회는 해당 철회가 발효하기 전에 제출된 국제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¹³⁵⁾

Article 31

Applicability of the 1934 and 1960 Acts

- (1) [Relations Between States Party to Both This Act and the 1934 or 1960 Acts] This Act alone shall be applicable as regards the mutual relations of States party to both this Act and the 1934 Act or the 1960 Act. However, such Stat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pply the 1934 Act or the 1960 Act, as the case may be, to industrial design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Bureau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is Act becomes applicable as regards their mutual relations.
- (2) [Relations Between States Party to Both This Act and the 1934 or 1960 Acts and States Party to the 1934 or 1960 Acts Without Being Party to This Act]
 - (a) Any State that is party to both this Act and the 1934 Act shall continue to apply the 1934 Act in its relations with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1934 Act without being party to the 1960 Act or this Act.
 - (b) Any State that is party to both this Act and the 1960 Act shall continue to apply the 1960 Act in its relations with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1960 Act without being party to this Act.

Article 32

Denunciation of This Act

- (1) [Notification] Any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is Act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 (2) [Effective Dat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 It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ct to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pending and any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force in respect of the denouncing Contracting Party at the time of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denunciation.

제31조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의 적용 가능성¹³⁶⁾

1.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 간의 관계]¹³⁷⁾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하여는 이 개정협정만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는 이 개정협정이 그들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날 이전에는 국제사무국에 기탁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그들의 상호관계에, 경우에 따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을 적용한다.¹³⁸⁾
2.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간의 관계]¹³⁹⁾
 - 가.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는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1934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1934년 개정협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¹⁴⁰⁾
 - 나. 이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는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1960년 개정협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¹⁴¹⁾

제32조

이 개정협정의 폐기

1. [통지]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개정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발효일] 폐기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또는 그 통지에 표시된 나중 날에 발효한다. 폐기는 그 폐기가 발효할 때 그 폐기하는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출원 중인 국제출원과 유효한 모든 국제등록에 대한 이 개정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¹⁴²⁾

Article 33

Languages of This Act; Signature

(1) [Original Texts; Official Texts]

- (a) This Act shall be signed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 (b) Official tex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nterested Governments, in such other languages as the Assembly may designate.

(2) [Time Limit for Signature] This Act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for one year after its adoption.

Article 34

Depositary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ct.

제33조 이 개정협정의 언어; 서명

1. [원본, 공식문서]¹⁴³⁾

가. 이 개정협정은 각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 원본에 서명된다.

나. 공식문서는 사무국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협의 후 총회가 지정하는 그 밖의 언어로 공식문서를 작성한다.

2. [서명 기한] 이 개정협정은 기구의 본부에서 이 개정협정이 채택된 후 1년 동안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기탁처

사무국장은 이 개정협정의 기탁처가 된다.¹⁴⁴⁾

**AGREED STATEMENTS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REGARDING THE GENEVA ACT AND THE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 When adopting Article 12(4), Article 14(2)(b) and Rule 18(4), the Diplomatic Conference understood that a withdrawal of refusal by an Office that has communicated a notification of refusal may take the form of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Office concerned has decided to accept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the industrial designs,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e notification of refusal related. It was also understood that an Office may, within the period allowed for communicating a notification of refusal, se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has decided to accept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even where it has not communicated such a notification of refusal.

2. When adopting Article 10, the Diplomatic Conference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precludes access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by the applicant or the holder or a person having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or the holder.

제네바 개정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 규칙에 관한(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동의한 성명서

1. 법 제12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나호 및 규칙18제4항을 채택하면서 외교회의는 거절통지를 통보하였던 관청의 거절 철회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또는 산업디자인 중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의 효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기술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또한 외교회의는 관청은, 거절통지의 통보가 허용되는 기간 이내에, 거절통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등록의 효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기술서를 송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¹⁴⁵⁾
2. 개정협정 제10조를 채택하면서 외교회의는 이 조항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였다.

- 1) 이 개정협정 초안은 1991년 4월, 1992년 4월, 1993년 4월, 1994년 1월/2월, 1995년 6월, 1996년 11월 및 1997년 11월 등 7차에 걸쳐 개최된 헤이그협정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작성되었다. 이 개정협정은 1999년 6월/7월(6.16-7.6)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주로 심사주의 국가의 제안으로 동 초안을 대폭 수정하여 1999년 7월 2일 채택되었다. 비록 규칙의 어떤 조항은 6차 전문가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었기는 하지만, 규칙 초안은 7차 전문가회의에서 처음으로 고찰되었다. 규칙 초안은 미국 등 심사주의 국가의 제안으로 일부 조항이 수정·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외교회의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 2) 제1조는 일정한 수의 약어를 설명하고, 이 개정협정 전체에 걸쳐 사용된 몇몇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 3) 헤이그 협정의 성명을 앞으로 디자인의 국제등록 (더 이상 국제기탁이라 하지 않는다)에 관한 헤이그 협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개정협정 (및 규칙)의 조문 전체에 걸쳐서 “출원” 및 “등록”이라는 단어가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서 채택되었던 “기탁”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새로운 용어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현 법률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좀 더 밀접하게 상응되고,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 4)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의 정의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의 의정서 (이하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라고 칭한다)의 공동규칙 제1규칙(xxiv)에서 내린 정의를 사용한 것이다. 국제등록부에는 서류형태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형태 중 어느 것이든 가장 적절한 매체로 국제등록에 관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국내 등록부를 둘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주목하라.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국내등록부를 두고 있는 경우, 권리자는 국내등록부에 자신의 국제등록을 등록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또는 국제사무국이 이미 공개한 자료에 대한 국내 공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제10조(3), 제14조, 제16조(2) 참조).
- 5) 이 개정협정은 각 국가 및 모든 형태의 정부간 기구에 모두 개방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는 제27조(1)(ii)에서 주어진 기준을 충족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 6) “계약당사자”라는 용어는 계약 국가 및 계약 정부간 기구 모두를 포괄하기 위하여 이 개정협정 조문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
- 7)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하여, 제3조는 출원인은 적어도 1개의 계약당사국과 (국적, 주소지, 거주지가 있거나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를 두고 있는 등의) 연계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출원인의 국제출원 권리가 1개 이상의 계약당사국으로부터 파생된 경우, 출원인은 그러한 계약당사국 중에서 어느 국가를 출원인의 계약당사국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자신이 선택한 계약당사국을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출원서에는 오직 1개의 출원인 의 계약당사국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인의 계약당사국”의 개념은 간접출원(관청을 통한 출원)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제4조, 제13규칙, 제27규칙 참조)
- 8) “관청”이란 용어는 국내관청, 베네룩스 디자인청과 같은 공통관청을 포함한 지역관청 모두를 포괄한다. “디자인의 보호”라는 표현은 등록에 의하여, 그리고 디자인특허 부여에 의하여 부여

된 보호 모두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개정협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저작권 또는 상표권으로 인한 디자인의 보호는 일컫지 않는다. 디자인에 부여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보호법 또는 보호 조약)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각주를 참조하라.

- 9) “심사관청”은 직권으로 (신규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독창성(originality) 또는 비기능성(non-functionality)과 같은 다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실체적인 출원심사를 수행하는 관청을 일컫는다. 심사관청의 다양한 등록요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이 개정협정은 그러한 관청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이 개정협정의 제5조(2), 제13조에 실려져 있다 (또한 제7조(2) 및 제18규칙(1)(b) 참조).
- 10) 이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는 이 개정협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와 동일한 동맹의 회원국이 된다(또한 (xxv) 참조).
- 11) 헤이그 동맹의 총회는 1967년 스톡홀름 보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때 6개국(이집트, Holy See, 인도네시아, 모로코, 스페인 및 튀니지)를 제외한 헤이그 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1967년 보충법의 당사자이었다. 현재로 WIPO 내에서 제도 개혁안이 제안되어 있다. 이는 장래에 각 특별 동맹(헤이그 동맹, 마드리드 동맹, 베른 동맹, 리스본 동맹 등)의 개별 총회를 대신하여 단일의 총회가 그런 모든 특별 동맹을 통합하여 설립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회”는 “제21조(1)(a)에서 언급된 총회”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 12) 이 조항은 1960년 개정협정의 제18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13) 각 계약당사자가(개별적으로) 디자인에 부여하는 보호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중앙 집중적으로 각 해당 계약당사자에서(일괄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든 이 개정협정은, 계약당사자 법에 따라 디자인에 부여될 수 있는 별도 보호의 향유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때, 그런 별도 보호로 인하여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향유가 축소되거나 방해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 개정협정에서의 “Law”라는 용어는, 법원 판례를 비롯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의 관청이 공포한 모든 규칙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의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공포한 모든 구속력 있는 법규를 일컫는다. “계약당사자 법”이란 용어는 상표, 불공정 경쟁 또는 저작권에 관한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을 포함한다. 만약 계약당사자 법에 따라 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 때문에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향유가 방해 또는 축소된다면, 이 개정협정이 우세하다.
- 14) 특정 국제 조약에 관한 것이다
- 15) 이 문구는 “국제 저작권 조약 및 협약에 의한 미술저작물 및 응용미술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다루고 있다. 국제등록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이 위의 조약 및 협약에서 정한 보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디자인이 국제등록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은(저작권 조약 및 협약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6) 각 계약당사자가 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약의 조항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항들은 제2조 (파리 동맹의 회원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제3조 (특정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파리 동맹의 회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 제4조 A에서 E까지(우선권), 제5조 B와 D (디자인의 불실시 및 디자인의 표시), 제5조 bis(1) (권리 유지를 위한 수수료(등록료) 납부의 유예 기간), 제5조 quinquies (디자인의 보호), 제11조 (특정 국제전시회에 전시된 디자인의 가 보호), 그리고 제12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 특별사무소 설립) 이다.

- 17) 제3조는 국제출원의 자격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자격을 갖기 위하여 출원인은 다음 조건 중 적어도 1가지는 충족하여야 한다.
- (i) 계약당사자인 국가의 국민, 또는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 국민, 또는
 - (ii) 계약당사자인 국가의 영역 또는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또는
 - (iii) 계약당사자인 국가의 영역 또는,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을 것, 또는
 - (iv) 계약당사자인 국가의 영역 또는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진정하고 실질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을 것.
- 이와 같은 요건은 자연인과 법인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 18)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서 가져온 표현(“거주지: habitual residence”)을 담고 있다. 국내법에 따른 “주소지: domicile”의 개념에 부여된 해석이 너무 협의적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
- 19) 제4조는 국제출원 방법에 관한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 20)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직접 하든가, 또는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는 제1조(xiv)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다.
- 21) 출원인이 직접출원 또는 간접출원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원칙이기는 하지만, (1)(b)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간접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계약당사자는 간접 경로를 강제할 수는 없다.
- 22) 각 해당 계약당사자가 송달료 금액 및 납부 기일을 결정하고, 지침서 또는 헤이그 협정의 이 개정협정에 관하여 발간되는 안내서 또는 문서에 국제사무국이 송달료 금액 및 납부 기일을 게재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이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13규칙(2)은 규정하고 있다.
- 23) 제5조는 국제출원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24) 모든 국제출원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25) 물품 및 물품들의 확인은 (국제분류 물품 목록의)용어로 명시된 대로 한다 (제7규칙(3)(iv) 참조).
- 26) 1960년 개정협정의 제7조(2)에는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는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협정의 초안에서는 반대로 출원인은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를 항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기지정가능). 그러나 자국민이 자기지정을 할 경우 영문출원 물량의 증가로 심사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자기지정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제창과 한국, 미국 등의 지지로 심사주의 국가의 계약당사자는 선택적으로 자기지정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음.(제14조(3) 참조)
- 27) 규칙에 정한 수수료 구조의 세부사항은 제12규칙(1)에 주어져 있다. 제7조에서의 수수료는 지정수수료를 포함한다.
- 28) 모든 국제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규칙에 규정되어야 하는 특별사항은 국제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도면 또는 견본의 수 (제7규칙(3)(v)) 그리고 수수료 금액 또는 수수료 납부에 관한 지시(제7규칙(3)(vii))에 관한 것이다.
- 29) 제7규칙(4)에 명시된 부가적인 요소를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국제출원에 그러한 요소를

첨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출원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의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 출원인이 그러한 요소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국제출원이 제5조(3)에서 언급된 선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해당 요건이 필요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였다면, 국제사무국이 아니라 거절한 지정관청이 이를 조정할 것이다.

- 30) 이 개정협정은 국제출원이 2개 또는 그 이상(최대 개수를 정하지 않고)의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능성은 제7규칙(6)에 포함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면”)만으로 한정된다. 이때 제7규칙(6)에 의거 국제출원에 관한 모든 디자인은 국제 로카르노 분류의 동일 류에 속해 있어야 한다.
- 31) 국제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들의 공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연기신청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의문사항과 연기 기간에 대한 의문사항은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 32) 파리조약의 제4조에서 정한 디자인에 관한 우선권주장 기간은 첫 출원일(제4조C(2))로부터 6개월(제4조C(1))이다.
- 33) “filed in or for any country”라는 표현은 정부간 기구의 관청 또는 여러 국가의 공통관청에 한 출원과 헤이그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국제출원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34) 우선권 주장은 파리조약의 당사자에 출원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에 기초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RIPS 협정 제2조(1)에 비추어 볼 때, 파리조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WTO의 회원국에 출원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에 기초를 둘 수 있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이 아닌 계약당사자는 파리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제출된 출원에 기초를 둔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
- 35) 이 (b)는 우선권 주장 선언을 국제출원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경우,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에 관하여 규칙에 규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추후 우선권주장’ (즉, 국제출원이 있고 난 이후의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리협약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4조D(1) 참조). 현재 규칙은 추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동 선언을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우선권 주장 선언은 출원 시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특허법조약(PLT)의 틀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토론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장래에 출원인에게 더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기 위하여 (1)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 36) 국제등록이 파리조약 제4조의 의미에서의 “정규 출원”과 동등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14조에 따르면, 국제등록은 사실상 각 지정된 당사자에서 정기적으로 출원된 국내출원 또는 지역출원과 적어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국제등록은 또한 그 자체로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37) 제7조는 국제출원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지정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수수료는 규칙에 정한 지정수수료((1))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2))일 수 있다.
- 38) (2)에 의하여 개별 지정수수료가 규칙에 정한 표준 지정수수료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이하 “전문가 회의”라고 칭한다)의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시피 (H/CE/VII/6 문서의 77항 참조), 심사관청(제1조(xvii) 및 그에

상응하는 주해 9) 참조)을 두고 있는 계약당사자만이 그러한(규칙에 정한 표준 지정수수료를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청이 규칙에 정한 표준 지정수수료를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심사관청을 두고 있는 각 계약당사자는(수수료표에 나와 있는) 표준 지정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별 지정수수료(각 해당 계약당사자가 정한 금액)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 39) 5년간의 최초 등록기간 및 각 5년마다의 갱신기간, 또는 해당 계약당사자가 인정한 최대 보호기간에 대한 개별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당사자의 최대 보호기간을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개별 지정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갱신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별 지정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또한 출원인에게 출원 시에 국제등록의 최초 기간간의 수수료 납부 또는 최대보호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계약당사자는 개별 지정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소, 기한의 연장 또는 서류 심사에 대한 수수료와 같은) 국내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 40) 이 개정협정은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에 대한 2가지의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첫째, 개별 지정 수수료 금액은 동일 기간의 보호를 위해 계약당사자의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둘째,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은 국제절차로 인하여(예를 들면,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의 공식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는 국제사무국이 등록된 디자인을 공개한다는 사실로 인해) 절약되는 금액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경험에 비추어 이용자들이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의 수수료 책정에 대해 만족하였다면 수수료 책정 시스템은 그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것과 상응한 것으로 한다. (금액이 수수료표에 정해진 표준 지정수수료이건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이건) 그 지정수수료 금액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또는 지역) 절차의 일부로서 출원료가, 그리고 보호가 부여된 경우에, 보호에 대한 수수료(등록료)가 계약당사자 법에 따라 책정된다면, 개별 수수료는 보호 부여를 위해 국내(또는 지역) 절차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가 거절된 경우, 보호 부여에 상응하는 개별 지정수수료(등록료)는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개별 수수료의 환불금액은 국제사무국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당사자 관청의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그 계약당사자에 입금(보호가 부여된 경우)하거나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환불해 줄 수 있다(보호가 거절된 경우).
- 41) 지정수수료(수수료표에 정해져 있는 표준 지정수수료 및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송금을 다루고 있다. 이 개정협정은 송금의 횟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 문제는 규칙 제29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송금은 계약당사자가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계약당사자 내의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할 것이다.
- 42) 제8조는 국제사무국으로 하여금 국제출원이 이 개정협정 및 규칙의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하자있는 출원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국제출원이 제5조(3)에서 언급한 선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요소를 요구하는 계약당사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이 아니라 요구된 요소가 누락되었다는 근거로 거절한 해당 지정관청에 제출한다.
- 43) 국제출원이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해진 기간(제14규칙(1)에 의하면 이 기간은 3개월이다)내에 그 국제출원을 보정하도록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44) 그러한 국제출원이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보정되지 않았다면, (b)를 조건으로 하여(각주 참조),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무국이 우편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특정한 경우의 지연은 면책해 주도록 하는 규칙 제5를 참조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그 이후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재출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45) (2)(b)는 (2)(a)에서 정한 규칙의 예외를 구성하고 있다. 즉, 제5조(2)(채약당사자가 통지한 부가적인 요소) 또는 규칙에 의거 채약당사자가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특별 요건(예를 들면, 창작자의 신원 확인 또는 제8규칙(2)에서 언급된 양도의 선언에 관한 특별 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국제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채약당사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채약당사자 지정에 관해 출원에 하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 46)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적으로 또는 제4조(1)에 따라 채약당사자에 간접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출원일을 교부받는다. 이 출원일은 국제등록일을 결정한다(단, 국제출원이 국제등록일의 연기가 되는 하자(제14규칙(2) 참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국제등록일은 이 개정협정의 다양한 목적(예를 들면, 최장보호기간의 기산일 결정(제17조))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일자이다.
- 47) (1)은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후 즉시 국제등록이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모든 적용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 국제출원만이 등록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등록은 직접출원일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가 송달된 이후 즉시, 간접출원일 경우에는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이를 연락(송달)한 이후 즉시 이루어진다. 국제출원이 제5조(5)에 따라 공개의 연기 신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 48) (2)는 국제등록일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규칙을 상설하고 있다.
- 49)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일로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2)(a) 참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때, 그 국제출원이 이 개정협정 및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출원에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b)에 언급된 하자(출원일이 연기되는 하자)중의 하나에 포함되지 않고 그 출원이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보정이 된 경우; 이때,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2)(a) 참조).
- 50) 국제출원이 제5조(2)에 따라 채약당사자가 통지한 부가적인 요소에 관한 하자만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한 하자의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그러나 제9조(3)에 의하여 출원일이 연기되는 하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제등록일은 국제사무국이 보정서를 수령한 날 또는 연기된 국제출원일 중 더 나중 날이 된다.(물론 이때,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보정에 한한다).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고, 그 하자가 제5조(2)에 따라 채약당사자가 통지한 부가적인 요소와 관련이 없다면(그 하자가 출원일이 연기되는 하자라면) 그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하자가 제5조(2)에 따라 채약당사자가 통지한 부가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면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 국가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 51) (3)은 국제사무국이 모든 국제등록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개는 모든 국내 또는 지역 공개를 대신하며, 권리자는 다른 공개를 전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공개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7규칙(2)에서 규정되어 있다.
- 52)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공개 사본을 각 지정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원칙이 (3)(b)에 규정되어 있다.
- 53)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을 공개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4)에 규정되어 있다. 비밀유지의 원칙은 또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첨부되는 모든 서류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비밀유지 적용은 제11조(4)(b)(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권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는 도면의 사본) 및 제10조(5)(공개가 연기된 국제등록의 사본을 원한다고 통지한 지정된 심사관청에 보내는 국제등록의 비밀사본)에도 해당된다.
- 54) 이 개정협정 초안에는 이 규정이 없었으나 '99. 6/7월 외교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미국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해제제도가 있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디자인의 비밀 여부를 심사한다.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서를 신속히 송달받을 필요가 있고 기타 심사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한 빨리 국제출원서를 송달받고자 희망하고 있어 이 규정이 반영되었다.
- 55) 제11조는 공개 연기의 조건(제5조(5)에 포함된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공개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계약당사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 및 지역 제도에 의하여 공개 연기가 처리되고 있는 방법을 감안하고 있다.
- 56) 공개 연기에 관한 다양한 현재 제도에 대하여 (1)은 3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내 또는 지역 법률에서 연기 기간을 규칙에 정한 기간(예를 들면, 제16규칙에서의 30개월)과 동등하게 또는 더 길게 규정하는 경우, 둘째, 규칙에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공개 연기를 허락하는 경우, 셋째, 공개의 연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각 계약당사자가 규칙에 정한 기간보다 짧은 연기 기간을 인정한다((a))든가 또는 공개의 연기를 인정하지 않는다((b))는 것을 선언으로 사무국장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각 계약당사자는 규칙에 정한 공개 연기 기간을 허락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57) (2)와 (3)은 각주 58에서 언급된 다양한 제도를 고려하여 공개일을 4가지 가설로 명시하고 있다. 4가지 가설은 각주 61, 62, 63, 64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58)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고 있고, (1)의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규칙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30개월 후)공개 된다.
- 59)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고 있고, (1)(a)의 선언을 한 1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였고, 그 계약당사자 법에서의 연기 기간이 규칙에 정한 기간보다 짧다면, 그러한 선언에서 명시된 기간의 만료된 때 공개 된다.
- 60)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고 있고, (1)(a)의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를 1개국 이상 지정하였고, 그 계약당사자 법에서의 연기 기간이 규칙에 정한 기간보다 짧다면, 선언에서 통지된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이 만료된 때 공개 된다.
- 61) 'applicable law' 는 계약당사자의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국가뿐만 아니라 정부 간 기구도 될 수 있으므로 'applicable law'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준거법', '적용법', '국내법'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나라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번역한다.

- 62)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고 있고, (1)(b)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였다면, 그 국제출원은 그 출원이 디자인의 도면을 첨부했는지 또는 견본을 첨부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도면을 첨부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당사자(공개연기제도가 없는 국가)을 취하지 않으면 공개 연기신청은 무시되며 제17규칙(1)에 따라 공개된다.- 견본을 첨부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무시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그러한 경우 공개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앞의 각주 61, 62, 63의 경우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서 출원인이 국내법에서 공개연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제출원 시 도면 대신 견본을 첨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이중 하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제출원서에 적절한 안내문을 부기할 수도 있다.
- 63) 각주 64의 ‘도면을 첨부한 경우’이다.
- 64) 각주 64의 ‘견본을 첨부한 경우’이다.
- 65) (4) 및 (5)은 공개연기 기간 동안에 국제등록에 관하여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특정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함축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4가지의 조치(각주 69, 70, 71, 72 참조)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66) 공개 연기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시작하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시작한다. (제16규칙(1) 참조).
- 67) 첫째, 권리자가 조기 공개, 즉 (2)에서 언급된 연기 기간의 만료일 전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 공개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수령된 날에 연기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68) 둘째, 권리자는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 국제등록의 초록을 제공하거나 국제등록에 관련된 제3자의 접근(열람)을 허락해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구할 수 있다. 권리자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국제등록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초록 또는 그러한 접근(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69) 권리자가 이용 가능한 세 번째 조치는 모든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국제등록을 포기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축의 경우, 감축의 영향을 받는 디자인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70) 권리자가 이용 가능한 네 번째 조치(이 조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규칙에 정한 기간(30개월)보다 짧은 연기 기간을 통지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국제등록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제등록의 공개 연기 기간은, 적절한 경우, 나머지 지정된 계약당사자중 누군가가 통지한 최단기의 연기 기간 동안, 또는 3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71) 연기 기간이 끝날 때, 국제등록은 공개된다.
- 72) 연기 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전에 공개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또는 그 날짜 이전에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국제출원은 취소되며 공개되지 않는다. (제16규칙(3))
- 73) 공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칙에 정한 수수료가 납부되어 있어야 한다.
- 74) 제5조(1)(iii)에 따른 도면 대신에 디자인의 견본이 국제출원과 함께 제출된 경우, 규칙에 정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75) 지정된 계약당사자 관청은 자신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각 계약당사자가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에서 정한 국제출원의 서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이 국제 절차에서 이미 구비된 것으로 국제사무국이 간주했다면, 그러한 요건(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에서 정해진 국제출원의 서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근거로 그 계약당사자에서 보호가 거절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부가적으로, 일단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고, 국제등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국제사무국이 확인하였다면,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가적이거나 또는 다른 해당 계약당사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출원의 서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그 어떠한 관청도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조항의 표현은 특허협력조약(PCT)의 제27조(1)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의 공식심사를 집중시킨다는 원칙은 현재 약 100여 개의 계약당사자가 회원으로 있는 PCT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등록은 디자인의 등록보다 훨씬 더 많은 공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개정협정의 틀 안에서, 관청은 규칙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도면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제9규칙 및 그에 관한 각주 참조). 게다가, 계약당사자 관청은 규칙에서 정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국제등록의 번역을 부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지정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한 근거로 지정된 계약당사자에서 보호를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관청은 요구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수수료 납부의 확인은 국제사무국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사무국만이 국제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계약당사자는 수수료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개정협정 제도에서는 계약당사자는 단지 보호 부여에 대한 특정 조건에 대하여 거절할 권리만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원인에게 그러한 조건에 대하여 조언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출원 단계에서 출원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제5조(3)의 국제출원의 선택적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지침서에 각 계약당사자의 그러한 각각의 조건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 76) 6개월이 기본 기간이며, 심사관청을 두고 있거나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허용하는 계약당사자에 있어서는 12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 (제18규칙(1) 및 그 각주 참조)
- 77) 헤이그 협정의 1960년 개정협정(제8조(1))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대한 제도(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제5조(1)(2))에서와 같이,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관청이 그 기한 내에 거절의 최종 결정 (즉, 더 이상 직권으로 재심사, 재검토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a)에 따르기 위하여는, 단순히 지정된 계약당사자 관청은 해당 디자인의 보호를 거절하는데 믿을 만한 근거를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규칙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단순 거절 또는 첫 번째 처분("first action")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로 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를 둘 수 있다. - 지정된 계약당사자 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한 심사의 결과로서의 거절 - 제3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이 개정협정에 대한 기본 제안의 용어에서, 이의신청이 국제등록에 반대하여 제기되었다는 단순 사실은 (이의신청에 기초한) "보호의 거절"로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해지는 궁극적인 결정을 조급히 내려서는 안 된다. 부가적으로, 만약 국제출원에 대한 관청의 직권 심사의 결과가 호의적으

로 나온 이후 국내 공개에 기초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동 이의 신청제도로 거절 기한을 맞출 수 없다면, 성공적으로 제기한 제3자의 이의신청은 제12조에 의한 거절이 아니라 제15조에 의한 무효의 결과를 얻게 된다.

- 78) 이 조항의 목표는 권리자로 하여금 국제등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근거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절 통지서에 거절의 기초가 된 모든 이유가 진술되어야 한다고 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후차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이유(거절에 대한 권리자의 의견제출 결과로서, 또는 권리자가 부가적인 정보를 연락한 결과로서, 거절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유, 또는 권리자가 제기한 항고절차 동안 발생한 이유)를 관청이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후차적 절차 동안 다른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청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가 아닌 출원인과 직접 연락한다. 예를 들면, 거절의 이유로 디자인의 단일성의 부재(1디자인1출원 위반 : 제13조)를 든 거절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의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당사자 관청이 후차적으로 다른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개되지 않은 선국 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과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어 거절이 된 경우, 관청은 선등록의 사본을 비밀로 유지(제10조(5)(b))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관청은 거절의 이유를 상세히 진술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관청은 거절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선국제등록과의 유사성'을 거절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개가 이루어지면, 후국제등록의 권리자는 정확한 거절이유를 통지를 받는다. 선국제등록이 공개되어 후국제등록의 권리자가 거절의 정확한 이유에 대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거절불복에 대한 항고 기한은 중단된다.
- 79) 일본은 '99. 6/7월 외교회의에서 '거절통지를 한 관청을 규율하는 국내법이 출원인에게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 국제출원인은 모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3)(b)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국제사무국의 주장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 80) 직권 재심사(거절통지후의 심사)의 틀에서 관청은 권리자로 하여금 거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권리자가 거절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문제의 관청은 물론 현지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 81) 일본은 '99. 6/7월 외교회의에서 거절의 취하통지 뿐만 아니라 국제등록의 효력인정통지(등록사정)도 가능함을 명문화 하도록 제안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동 내용은 성명서로 채택되었다.
- 82) 거절 통지서를 띄운 관청은 어느 때라도 거절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된 거절이 반드시 최종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거절의 취소는 그 효력에 대한 분명한 통지서의 형태 또는 국제등록이 해당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는 연락의 형태를 필수 있다. 외교회의에서는 일본의 주장에 의하여 관청은 거절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또는 거절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기한이내에 국제등록의 효력을 인정하는 효력기술서(등록사정서)형식의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제네바 개정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 규칙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동의된 성명서 참조)
- 83) 수많은 잠재적 계약당사자(예를 들면, 미국, 일본 및 영국)의 법은 발명의 단일성 또는 디자인의 단일성의 원칙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디자인이 동일 발명 또는 동일 창작의 개념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몇몇 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분할하여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공동체 규칙(Community Regulation) 초안은 이와 유사한 요건, 그러나 물품의 조립 또는 물품의 합성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13조는 출원인이 동일한 국제출원에 1개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심사주의

계약당사자(잠재적 계약당사자)의 등록요건을 고려하고 있다.

- 84) 이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가 될 때의 국내법이 발명의 단일성, 디자인의 단일성, 물품의 단일성 또는 사용의 단일성을 요구하고 있거나, 또는 디자인은 물품의 동일 세트 또는 동일구성에 속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오직 1개의 독립적이고 별개인 발명만이 1 출원서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요구하는 경우, (1)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는 사무국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 85) 이 규정에 따르지 못하여 거절이 통지된 경우, 거절한 관청은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해당 계약당사자에 대하여만 자신의 등록을 분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행정지침은 분할의 경우 사용되는 번호부여 방법을 결정한다.
- 86) 발명의 단일성, 디자인의 단일성, 물품의 단일성 또는 사용의 단일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국제출원된 디자인이 물품의 동일세트 또는 동일구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 있고 나서 국제등록이 지정된 그 관청에서 분할된 경우, (3)은 지정된 관청에 납부할 수 있는 부가적인 수수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관청은 국제등록 권리자로 하여금 (최초 국제등록에 부가하여) 분할 된 수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개정협정이나 규칙에서는 그러한 부가적인 수수료 납부에 대한 조건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원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각 해당 계약당사자가 그 조건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부가적인 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그 계약당사자는 부가수수료 금액의 공개를 위하여 국제사무국에 그러한 금액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잠재적 출원인들은 그들이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87) 국제등록은 각 지정된 계약당사자 법에서의 정규 출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각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이러한 효력은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러한 효력은 국제등록일에 발효되기 시작한다. 제14조(1)의 중요성 중 한 가지는 공개된 국내출원에 잠재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모든 계약당사자는 자국을 지정하고 공개된 국제등록에도 같은 종류의 보호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 88) “늦어도”라는 용어는 계약당사자 법에 의하여, 국제등록일 보다 더 빠른 날짜에 국제등록이 보호 부여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각 계약당사자가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등록에 포함된 디자인의 일부 만에 의하여 복수디자인 국제등록이 거절된 경우, 국내법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는 거절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은 디자인에만 한정된다.
- 89) 만약 제12조에 의한 아무런 거절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국제등록은 각 계약당사자 법에서의 보호 부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규칙을 (2)(a)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효력의 발효시점에 관하여, 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은 국제등록은 늦어도 제18규칙(1)에 의한 거절기간이 만료된 때 각 계약당사자에서 발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만약 계약당사자가 제18규칙(1)(c)에 언급된 선언(효력은 늦어도 제14조(2)(a)에서 언급된 날 이후, 그러나 그 후 6개월 이내에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진술을 허락한다)을 하였다면 (2)(a)에서 언급된 국제등록의 효력은 그 계약당사자에서 연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호 부여의 효력은 그러한 선언에서 명시된 시기에 시작된다. 제18규칙(1)(a) 및 (b)에서 인정된 거절통지에 대한 최대한의 기간이 심사관청을 두지 않은 계약당사자에서는 6개월, 심사관청을 둔 계약당사자에서는 12개월(“심사관청”의 용어는 제1조(xvii)에 정의되어 있다)이기 때문에, 제18규칙(1)(c)를 포함하여 제14조(2)(a) 및 제18규칙(1)을 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계약당사자에서의 보호 효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심사관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각 계약당사자에서 국제사무국이 해당 관청에 국제등록의 공개 사본을 보낸 날로부터 늦어도 12개월(6개월+6개월) 이후부터 보호 효력 발생 - 심사관청을 두고 있으며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각 계약당사자에서 국제사무국이 해당 관청에 국제등록의 공개 사본을 보낸 날로부터 늦어도 18개월(12개월+6개월) 이후부터 보호효력 발생

- 90) 거절 통지가 결과적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 법에 의한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의 효력은 늦어도 취소일에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늦어도”라는 용어는 적용법(국내법)에서 국제등록일보다 소급적으로 더 빠른 날짜에 보호의 효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각 계약당사자가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 통지가 취소된 범위 내에서”의 표현은 통지의 대상이 되었던 디자인의 오직 일부에 대하여만 거절이 취소된 경우, 적용법(국내법)에서의 보호는 거절이 취소되지 않은 디자인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91) 국제등록에 부여된 효력은 지정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수령한 디자인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거절이 있고 나서) 지정관청의 절차에서 수정된 디자인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만약 관청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디자인의 도면이 수정되었다면, 수정된 도면에 효력이 부여된다.
- 92) 일본은 문화적, 언어적 배경으로 영문 출원서의 심사에 어려움이 있고 영문심사에 따른 심사처리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출원 시 자국민은 자국을 지정할 수 없는 자기지정금지제도(각국의 선택여부는 자유)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99. 6/7월 외교회의에서 이를 정식 제안 하였다. 한국, 미국 등의 지지에 의하여 이 조항이 반영되었다.
- 93) 자신의 영역에서 국제등록의 효력이 무효로 된 계약당사자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러한 무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규칙(1)은 무효가 더 이상 재검토 또는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만 국제사무국에 무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이 그 무효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무효를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 94) 규칙은 (1)에 언급된 (변경사항의)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요구된 조건(제21 규칙)을 규정한다.
- 95) 만약 새로운 소유자가 국제출원 자격이 없다면 국제사무국은 소유사항 변경을 기록하지 않는다.
- 96) 포기는 항상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디자인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정된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97) 감축은 포기와는 다르다. 포기는 반드시 모든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반면, 감축은 일부 또는 모든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복수디자인 국제등록에 포함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그러나 결코 모든 디자인에 관한 것은 아니다).
- 98) 이 조항은 실시계약 또는 담보설정의 존재에 관한 기타 관련 사실의 기록에 관한 규정이다. 규칙은 그러한 사실의 기록을 허락하도록 하는 제안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래에 이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99) 국제등록부예의 기록은 국내 또는 지역 등록부에 한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권리자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국제등록부의 기록을 국내 또는 지역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권능은 국제등록부의 내용을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시 국내 및 지역 관청이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관청은 국제등록부의 내용을, 관련이 되는 경우, 국내 또는 지역 등록부로 바로 복사할 수 있게 된다. 국제등록부에 기록(예를 들면, 실시 허여 또는 담보 설정)

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서 해당 법이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국내 또는 지역 등록부에 기록하는 비용을 권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100) 예외적으로 특정 기록은 무료가 될 것이다. 납부 대상이 되는 변경의 기록 및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금액은 수수료표에서 결정된다.
- 101) 제23규칙 내지 제25규칙.
- 102) 계약당사자가 보호기간을 단일의 15년(또는 더 이상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등록료를 초기 개별지정수수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17조(1)과 (3)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 보호는 국제등록의 갱신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전체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유지된다. 행정지침은 국제등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사용자들이 해당 계약당사자에서, 국내 수준에서 보호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개를 국제등록부에 포함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 103) 이 조항의 초안은 “국제등록이 갱신된다면, 각 계약당사자에서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만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잠재적 계약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 잠재적 계약당사자의 법은 보호기간의 시발점을 결정하는 것이 보호의 부여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시기와 보호부여 시기 사이에 임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회의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현행과 같이 수정되었다. 전문가 회의에서 동의했듯이, 보호기간은 헤이그협정의 1960년 개정협정에서처럼 10년이 아니라 국제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정해졌다.
- 104) 계약당사자 법이 디자인에 대한 최장 보호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최장 보호기간이 국제등록에 적용된다. 구 헤이그협정 당사자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기간은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15년이다. 권리자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대리인은 세 번째(갱신기간)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지정된 계약당사자 법에 의하여 15년 이상 보호가 연장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105) 계약당사자는 국내법이 디자인에 부여하는 최장 보호기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그렇게 하여 수령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권리자들이 계약당사자에 요구한 갱신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것이다. 해당 계약당사자는 국내법에서 이러한 기간이 변경되면 모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106) 권리자들이 지정된 계약당사자중 일부만 또는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 중 일부 만에 대하여 감축된 갱신을 할 수 있다. 갱신 절차는 제23, 24규칙 참조.
- 107) 국제사무국은 공개된 국제등록에 대한 정보 또는 그러한 등록에 대해 국제등록부에 등록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채택된 절차는 행정지침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공개가 연기된 국제등록에 대한 정보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제11조(4)(b)에서 언급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공개 연기된 국제등록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제출원에 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출원에 대한 그 어떠한 사본도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 108) 이 조항은 헤이그협정 60년 개정협정의 제30조, 마드리드 협정의 제9조의4, 마드리드 의정서의 제9조의4에 대응되는 조항으로, 통일 법으로 다수 국가의 각 개별 국가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통관청을 두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는 베네룩스3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있다. 베네룩스 디자인청은 이들 각국에서 발표되

는 디자인보호를 위하여 통일법에 의해 출원된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다.

- 109) (1)에 의하여, 통합법과 공통관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그 공통관청이 각 국가들의 국내관청을 대신하며, 그 국가들의 영역 전체는 이 개정협정 제1조, 제3조 내지 제18조 및 제31조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계약당사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18조까지는 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의한 실체적 조항이다. 제31조는 이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와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규정이다.
- 110) (2)은 (1)에서 언급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 국내법을 이미 통일화한 국가들의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시기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들이 국내법을 통일화할 때 이미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 통일화가 효력을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통지를 할 수 있다.
- 111) 제20조는 계약당사자는 동맹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동맹은 제1조(xxiv)에서, 헤이그 협정의 1925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차후의 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헤이그 동맹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는, 이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와 동일한 동맹에 속하게 된다. 이 개정협정 초안을 작성할 때,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1934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가 6개국(이집트, 바티칸시티, 인도네시아, 모로코, 스페인, 튀니지)가 있었고,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는 23개국(벨기에, 베닌, 불가리아, 코트디부아르, 북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몽골리아, 네덜란드, 몰도바공화국, 루마니아, 세네갈, 슬로베니아, 수리남, 스위스, 마케도니아 공화국, 유고슬라비아)이 있었다. 이 개정협정 계약당사자와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와의 관계는 제31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 112) 이 조항은 마드리드 협정 제10조, 마드리드 의정서 제10조와 대응된다. 이 개정협정 초안에서는 유보되어 있었으나 '99. 6/7월 외교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 113) 이 개정협정 초안에는 국제사무국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99. 6/7월 외교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하였고 일부 수정을 거쳐 반영되었다. 이 조항은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제11조에 대응된다.
- 114) 이 개정협정 초안에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99. 6/7월 외교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하였고 이것이 반영되었다. 이 조항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제12조에 대응된다.
- 115) (1)은 규칙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규칙은 이 개정협정에 의한 국제등록만을 다룬다고 (1)에서 의도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934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및 이 개정협정에 의한 국제등록을 다루기 위하여 공통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동규칙이 채택된 특별한 경우와는 대조를 이룬다. 공동규칙은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모두에 의한 상표등록을 규율한다. 현재의 경우에는, 헤이그 협정의 다수의 법에 대한 공통규칙은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개정협정으로 인하여 헤이그 협정의 이전의 협정은 진부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인식이 충분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 116) 제25조는 조약은 계약당사자 회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는 기본규율을 확인하고 있다. 헤이그협정 보충법 제2조(2)(a)(ii)에 따라 총회는 그러한 회의준비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에 지시사항을 내릴 수 있다. 보충법 제5조는 (특히 제2조에서 4조까지를 포함한) 법이 총회에 의하여 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 117)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인 국가 및 정부간 기구가 파리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개정협정에 가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 118) 계약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는 단지 1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WIPO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파리조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이 조건은 상표법 조약(TLT)의 최근 선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파리조약에 의하여 구속받지는 않더라도, 디자인에 관한 파리조약의 조항을 따르도록 요구된다 (제2조(2) 참조).
- 119)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간 기구가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첫째, 정부간 기구는 그 구성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안에서 효력이 있는 디자인 보호를 부여하는 관청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 중 적어도 한 국가가 WIPO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간 기구가 계약당사자가 되기 위한 적격성을 갖추려면, 정부간 기구가 운영하는 관청이 제19조(동 조항에 의거 단일의 계약당사자로 간주되는 몇몇 국가들의 공통 관청에 관한 조항)에 의한 통지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베네룩스 디자인청은 만약, 예상하고 있다시피, 제19조에 의한 통지대상이 된다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세 번째 조건은 마드리드 의정서의 제14조(1)(b)(ii)에 포함된 조건과 동일하다.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OAPI)는 (ii)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유럽 공동체 또한 제안된 공동체 디자인청이 존립하기 시작하면 이에 해당된다.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 기구(ARIPO)의 틀 안에서 1982년 하라레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디자인등록제도의 특질에 비추어 보면, ARIPO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은 자세한 검토를 요한다.
- 120) 제1조(xxix)에서 “비준서”라는 표현은 가입승인 또는 가입인정의 증서를 물론 포함한다.
- 121) (a)는 비준서 또는 승인서 기탁의 발효일은 그러한 증서가 기탁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한 다양한 적용 방법은 (b), (c) 및 (d)에 포함되어 있다.
- 122) (b)는 그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청을 통하여만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예를 들면, OAPI의 15개국에 적용된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국내 관청 또는 베네룩스 디자인청을 통하여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은 국내 관청을 통해 디자인을 등록하는 ARIPO의 회원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b)에서 언급된 국가가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였다면, 그 증서의 발효일은 기탁한 날이 아니라 그 국가가 속한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기탁된 날로 한다. OAPI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이는 즉 (1)(i)에 의거 OAPI 회원국 중 1개국, 몇개국 또는 모든 국가의 “개인적” 비준 또는 가입승인은, 정부간 기구의 자체 권능으로 OAPI가 그 증서를 기탁하였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OAPI 자체가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구속받기 위하여 OAPI의 회원국중 1개국 또는 모든 국가가 이 개정협정의 가입승인을 할 필요는 없다. OAPI가 이 개정협정에 의해 구속받게 되었을 때만 OAPI의 회원국이 이 개정협정의 구속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OAPI를 지정함과 함께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을 지정한다는 지 또는 OAPI를 독립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1)에 의하여 이 개정협정에 가입승인을 한 그 회원국이 아니라 OAPI를 단독으로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당사자로서 회원국들의 능력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예를 들면 총회에서의 투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3) (c)는 제19조에 의거 선언을 한 국가들의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그 선언은 공통관청이 각 국가들의 국내관청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 그 국가들이 단일의 계약당사자로 간주되는 효력이 있다.) 그러한 국가(실제적으로 베네룩스 국가)에 있어서, 비준서 또는 승인서의 발효일은 그 국가 그룹의 회원국의 마지막 증서가 기탁된 날로 한다..
- 124) (d)에 의하여 잠재적 계약당사자는 다른 1개 또는 2개의 잠재적 계약당사자가 이 개정협정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면, 자국도 이 개정협정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조건부 비준 또는 가입승인을 가능하게 한다. 즉 명시적으로 지정된 1개 또는 2개의 다른 잠재적 계약당사자가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했을 때만 비준 또는 가입승인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 기탁은 다른 잠재적 계약당사자의 증서 기탁을 조건으로 한다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비준서 또는 승인서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날 (즉 관련된 다른 계약당사자가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비준서 또는 승인서(“제1 증서”)의 기탁이 같은 종류의 두 번째 증서 (“제2 증서”)의 기탁을 조건으로 하고, 이 때 두 번째 증서의 기탁 자체가 세 번째 증서(“제3 증서”)의 기탁을 조건으로 할 때, 제2 증서는 (3)(d)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제3 증서의 기탁일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제1 증서는 제3 증서가 기탁될 때까지는 기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125) 제28조는 이 개정협정의 초기 발효일을 이 개정협정의 발효 이후에 기탁된 비준 또는 가입승인의 발효일로 결정하고 있다. 요구된 조건(제27조(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가 기탁한 비준서 또는 승인서, 그리고, 발효일을 결정하는 제27조(3)의 요건에 맞는 비준서 또는 승인서만이 이 개정협정의 발효에, 그리고 그 이후의 비준 및 가입승인의 발효에 고려될 수 있음을 (1)은 확인하고 있다. 발효일을 결정하는 제27조(3)의 요건에 따른다는 것은, 증서의 기탁에 첨부되는 모든 조건이 정말로 충족되었으며 그 증서를 기탁한 국가 및 정부간 기구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국제등록의 효력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126) (2)는 이 개정협정의 효력 발생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국가가 기탁한 증서만이 고려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2)는,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 효력 발생 이후에 이 개정협정에서 정한 국제등록 절차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채택된 발효요건은 특허협력조약 (PCT)의 제 63조(1)의 조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발효요건은 이 개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승인서가 요구되는 6개국 중에서 적어도 3개국이 정해진 2개의 조건 중 적어도 1개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대안적인) 2개의 조건은 해당 국가에 또는 해당 국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출원에 관련된 건수 (적어도 3,000건; (i)), 그리고 비거주인의 출원에 의한 건수 (적어도 1,000건; (ii))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는 국제사무국이 수집한 가장 최근의 연간 통계이다.
- 127) 1996년에 발간된 통계 및 1997년의 잠정적인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i) 및 (ii)에서 설정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그리고 미국. 부가적으로 이태리와 스위스는 (ii)에서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였다.

- 128) “application.....filed in or for the State”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그 (국내관청이 존재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에 출원된 출원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지정된 국제출원 및 해당 국가의 영역에서 효력이 있는 지역관청에 출원된 출원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129) (3)은 비준 및 가입승인의 발효일을 결정하고 있고 있으며 이 개정협정 효력발생의 3개월 또는 3개월 이전((a))에 또는 그 이후((b))에 기탁된 증서를 구별하고 있다.
- 130) 이 개정협정 효력발생의 3개월 또는 3개월 이전에 증서를 기탁한 모든 계약당사자는 그 효력 발생일에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구속받게 된다고 (a)는 규정하고 있다.
- 131) (b)는 다른 모든 계약당사자(이 개정협정의 발효일에 계약당사자에 속하지 않는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당사자가 증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또는 그 계약당사자가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구속받고자 하는 날짜(증서에 기재된 날짜)가 그 보다 늦은 경우, 그 늦은 날에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구속받게 된다.
- 132) 제30조는 이 개정협정 조항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언의 방식 및 그러한 선언의 효력 발생일을 다루고 있다.
- 133) 제30조(1)에서 언급된 선언은 이 개정협정에 대한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증서의 기탁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선언이 증서의 기탁 시에 이루어진 경우((i)), 그 효력은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가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날에 발생한다. 그 선언이 증서의 기탁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ii)), 사무국장이 그 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또는 그 선언에서 언급된 더 늦은 날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등록일 이 선언의 효력 발생일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늦은 국제등록에만 적용된다..
- 134) 제19조(1)에 의하여 사무국장에게 디자인에 관한 국내법의 단일화 상황 및 각 국내관청을 공통관청이 대신한다는 것을 통지한 국가들의 선언에 (2)가 적용된다. 이 개정협정이 그러한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1)에 의거 통지를 한 다른 국가들이 또한 그에 상응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그러한 국가 중 1개국이 한 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135) (1)에서 언급된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보낸 통지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또는 그 통지서에 언급된 더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3)은 규정하고 있다. (3)의 세 번째 문장의 목적은 제7조(2) (규칙에 정한 지정수수료를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에 의한 통지를 취소하는 경우, 선언의 취소 발효일 이전에 출원된 국제출원은 개별 지정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 136) 제31조는 동맹의 회원국에 관한 다양한 범주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있다. 본 조는 1960년 개정협정의 제31조를 본보기로 하였다. 이 개정협정 제31조는 이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조약에 기초를 둔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 137) (1)은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양쪽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해진 원칙은 이 개정협정만이 단독으로 그러한 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양쪽 모두에 의해 구속을 받는 나라로부터 파생되며,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양쪽 모두에 대한 당사자인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개정협정의 조항만이 적용 가능하다. 이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현재 당사자가 이 개정협정을 비준하거나 그에 대한 가입승인을 하면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은 사용되지 않게 될 운명에 처해진다.

- 138) (1)의 두 번째 문장은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간의 관계에 이 개정협정을 적용하게 되는 날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에, 1934년 개정협정 또는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하듯이) 1960년 개정협정을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 139) (2)는 한편으로는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양쪽 모두에 대한 당사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정협정에 대하여는 동시에 당사자가 아니면서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 140) 1934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지만 동시에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 개정협정 및 1934년 개정협정 양쪽 모두의 당사자는 계속하여 1934년 개정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41)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지만 동시에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 양쪽 모두의 당사자는 계속하여 1960년 개정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42) 제32조는 통례 조항이다. 이 개정협정에 대한 가입승인을 위해 그 활동이 조직화된 계약당사자가 이 개정협정의 폐기 통고를 한 경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폐기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1년의 최단기간이 (2)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이 개정협정에 대해 폐기 통고한 계약당사자에 있어서, 폐기통고의 발효시기에 이미 출원 중인 국제출원과 발효된 국제등록에 이 개정협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을 (2)는 확실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였고 폐기통고의 발효 시에 이미 출원 중이거나 유효한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에 관하여 제17조(3)(a)에서 언급된 보호의 최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개정협정에 대한 폐기통고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속하여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 143) 이 개정협정은 국제연합의 6개 공식 언어로 작성된 단일의 원본에 서명되어야 하며, 그러한 모든 조문은 동등하게 원본임을 제33조는 특히 규정하고 있다.
- 144) 제34조는 사무국장이 이 개정협정의 수탁자임을 서술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의 제77조 및 77조에 조약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성질이 정의되어 있으며 그러한 의무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한 의무는 특히 이 개정협정의 원본을 보관하며,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된 사본을 발부하며, 기탁된 비준서 또는 승인서를 수령하는 것이다.
- 145) 디자인권의 발생에 있어 관청의 부작위에 의한 디자인권의 발생은 일본 법제에 맞지 않으며 심사관의 등록사정 처분에 의하여만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국제등록에 대한 거절통지 후 또는 거절통지 기간만료 이전에 심사관이 등록사정을 통지할 수 있도록 제네바 개정협정이 허용하여야 한다고 일본은 주장하였고 외교회의는 이를 수용하여 동 성명서를 동의하였다.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
시행규칙 · 행정지침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시행규칙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as in force on January 1, 2025)

TABLE OF CONTENT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 Rule 1: Abbreviated Expressions
- Rule 2: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 Rule 3: Representa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 Rule 4: Calculation of Time Limits
- Rule 5: Excuse of Delay in Meeting Time Limits
- Rule 6: Languages

CHAPTER 2: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Rule 7: Requirement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Rule 8: Special Requirements Concerning the Applicant and the Creator
- Rule 9: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 Rule 10: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 Where Deferment of Publication Is Requested
- Rule 11: Identity of Creator; Description; Claim
- Rule 12: Fe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Rule 13: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Through an Office
- Rule 14: Examin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Rule 15: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시행규칙

(2025년 1월 1일 발효)

목 차

제1장 : 일반 규정

- 규칙 1 : 축약 표현
- 규칙 2 :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보
- 규칙 3 :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
- 규칙 4 : 기한의 계산
- 규칙 5 : 기한 지연의 면제
- 규칙 6 : 언어

제2장 : 국제출원과 국제등록

- 규칙 7 : 국제출원에 관한 요건
- 규칙 8 : 출원인과 창작자에 관한 특별 요건
- 규칙 9 : 산업디자인의 도면
- 규칙 10 : 공개 연기가 신청되는 산업디자인의 견본
- 규칙 11 : 창작자의 신원, 디자인의 설명, 청구범위
- 규칙 12 :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 규칙 13 : 관청을 통하여 출원된 국제출원
- 규칙 14 :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 규칙 15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부예의 등록

- Rule 16: Deferment of Publication
- Rule 17: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HAPTER 3: REFUSALS AND INVALIDATIONS

- Rule 18: Notification of Refusal
- Rule 18bis: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 Rule 19: Irregular Refusals
- Rule 20: Invalidation 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CHAPTER 4: CHANGES AND CORRECTIONS

- Rule 21: Recording of a Change
- Rule 21bis: Declaration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
- Rule 22: Corrections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CHAPTER 5: RENEWALS

- Rule 23: Unofficial Notice of Expiry
- Rule 24: Details Concerning Renewal
- Rule 25: Recording of the Renewal; Certificate

CHAPTER 6: PUBLICATION

- Rule 26: Publication

CHAPTER 7: FEES

- Rule 27: Amounts and Payment of Fees
- Rule 28: Currency of Payments
- Rule 29: Crediting of Fees to the Accou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 규칙 16 : 공개의 연기
- 규칙 17 : 국제등록의 공개

제3장 : 거절과 무효

- 규칙 18 : 거절 통지
- 규칙 18의2 : 보호부여 기술서
- 규칙 19 : 하자있는 거절
- 규칙 20 : 지정 계약당사자에서의 무효

제4장 : 변경과 경정

- 규칙 21 : 변경의 기록
- 규칙 21의2 : 명의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 규칙 22 : 국제등록부의 경정

제5장 : 갱신

- 규칙 23 : 만료의 비공식 통지
- 규칙 24 :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 규칙 25 : 갱신의 기록, 증명서

제6장 : 공개

- 규칙 26 : 공개

제7장 : 수수료

- 규칙 27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 규칙 28 : 납부 통화
- 규칙 29 : 해당 계약당사자의 계좌로의 수수료 입금

CHAPTER 8: MISCELLANEOUS

Rule 30:	Deleted
Rule 31:	Deleted
Rule 32:	Extracts, Copies and Information Concerning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Rule 33:	Amendment of Certain Rules
Rule 34:	Administrative Instructions
Rule 35:	Declaration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Rule 36:	Deleted
Rule 37:	Transitional Provisions

제8장 : 기타

규칙 30 : 삭제

규칙 31 : 삭제

규칙 32 :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초본, 사본, 및 정보

규칙 33 : 특정 규칙의 개정

규칙 34 : 행정지침

규칙 35 : 계약당사자에 의한 선언

규칙 36 : 삭제

규칙 37 : 경과규정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Rule 1

Abbreviated Expressions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 (i) “Act” means the Act signed at Geneva on July 2, 1999, of the Hague Agreement;
- (ii) “1960 Act” means the Act signed at The Hague on November 28, 1960, of the Hague Agreement;
- (iibis) “Article”, unless otherwise expressed, means an Article of the Act;
- (iii) an expression which is used in these Regulations and i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Ac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at Act;
- (iv) “Administrative Instructions” means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referred to in Rule 34;
- (v) “communication” means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any request, declaration, invitation, notification or information relating to or accompany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at is addressed to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applicant or the holder by means permitted by these Regulations or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vi) “official form” means a form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an electronic interface made availabl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or any form or electronic interface having the same contents and format;
- (vi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means the Classification established under 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제1장 일반 규정

규칙 1 축약 표현

1. [정의] 이 시행규칙의 목적상,

- 1) “개정협정”이란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 2) “1960년 개정협정”이란 1960년 11월 28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2의2)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조항”은 개정협정의 조항을 말한다.

- 3)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되고 개정협정 제1조에 언급된 표현은 그 개정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4) “행정지침”이란 규칙 제34조에 언급된 행정지침을 말한다.

- 5) “통보”란 이 시행규칙 또는 행정지침에 의하여 허용된 수단으로 계약 당사자의 관청, 국제사무국,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전달되는 국제출원이나 신청, 선언, 권유, 통지 또는 국제출원이나 국제등록에 관련되거나 첨부되는 정보를 말한다.

- 6) “공식서식”이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 기구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사무국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된 전자적 인터페이스, 또는 동일한 내용과 및 형식을 가지는 전자적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 7) “국제분류”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분류를 말한다.

- (viii) “prescribed fee” means the applicable fee set out in the Schedule of Fees;
- (ix) “Bulletin” means the periodical bulletin i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effects the publications provided for in the Act or these Regulations, whatever the medium used.

Rule 2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Communications address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effected as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Rule 3

Representa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1) [Representative; Number Representatives]

- (a) The applicant or the holder may have a representative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 (b)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in respect of a given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ere the appointment indicates several representatives, only the one indicated first shall be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and be recorded as such.
- (c) Where a partnership or firm composed of attorneys or patent or trademark agents has been indicated as representativ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it shall be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2) [Appointment of the Representative]

- 8) “규정된 수수료”란 수수료표에 규정된 적용 수수료를 말한다;
- 9) “공보”란 이용된 매체에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이 개정협정 또는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개 효과를 부여하는 정기적 공보를 말한다;

규칙 2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보

국제사무국에 전달된 통보는 행정지침에 명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규칙 3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

1. [대리인, 대리인 수]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을 가질 수 있다.

나. 한 명의 대리인만이 일정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관하여 선임될 수 있다. 선임이 여러 대리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표시된 한 명만이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기록된다.

다.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구성된 조합 또는 회사가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조합 또는 회사가 한 명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대리인의 선임]

- (a)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may be mad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naming of the representativ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t the time of filing shall constitute an appointment by the applicant of such representative.
 - (b)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may also be made in a separate communication which may relate to one or more spec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s or international registrations of the same applicant or holder. The said communication shall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the holder.
 - (c) The communication to appoint a representative shall contain the name and addres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Where the International Bureau considers that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is irregular, it shall notify accordingly the applicant or holder and the purported representative.
- (3)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Effective Date of Appointment]
- (a) Where the International Bureau finds that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t shall record the fact that the applicant or holder has a representative, as well as the name, address and email of the representative,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 such a case, the effective date of the appointment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separate communication in which the representative is appointed.
 - (b)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ify the recording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both the applicant or holder and the representative.

가. 대리인의 선임은 국제출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출원시 출원서에의 대리인 성명의 기재는 출원인에 의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대리인의 선임은 동일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하나 이상의 명시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과 관련될 수 있는 별개의 통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통보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의하여 서명된다.

다.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통보는 행정지침에 따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의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나 권리자 및 대리인이라고 지칭되는 인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3. [대리인 선임의 기록 및 통지, 선임의 효력발생일]

가.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의 선임이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과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그러한 경우 그 선임의 효력발생일은 대리인이 선임되는 국제출원 또는 별도 통보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다.

나. 국제사무국은 가호에 언급된 기록을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한다.

(4) [Effect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 (a) The signature of a representative recorded under paragraph (3)(a) shall replace the signature of the applicant or holder.
- (b) Except where these Regulations expressly require that a communication be addressed to both the applicant or holder and the representative,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address to the representative recorded under paragraph (3)(a) any communication which, in the absence of a representative, would have to be sent to the applicant or holder; any communication so addressed to the said representative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if it had been addressed to the applicant or holder.
- (c)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by the representative recorded under paragraph (3)(a)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if it had been addressed to the said Bureau by the applicant or holder.

(5) [Cancellation of Recording; Effective Date of Cancellation]

- (a) Any recording under paragraph (3)(a) shall be canceled where cancellation is requested in a communication signed by the applicant, holder or representative. The recording shall be canceled ex officio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here a new representative is appointed or where a change in ownership is recorded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by the new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b) The cancellation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s the corresponding communication.
- (c)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ify the cancellation and its effective date to the representative whose recording has been canceled and to the applicant or holder.

4. [대리인 선임의 효과]

가. 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의 서명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을 대신한다.

나. 이러한 규정에서 통보를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전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송부되어야 할 통보를 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상기 대리인에게 그렇게 전달된 통보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전달된 모든 통보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사무국에 전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기록의 취소, 취소의 효력발생일]

가. 제3항가호에 따른 기록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통보로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에 취소된다.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변경이 기록되고 국제등록의 새로운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록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된다.

나. 취소는 국제사무국이 그에 상응하는 통보를 접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국제사무국은 기록이 취소된 대리인과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취소 사실과 취소의 효력발생일을 통지한다.

Rule 4

Calculation of Time Limits

- (1) [Periods Expressed in Years] Any period expressed in years shall expire, in the relevant subsequent year, in the month having the same name and on the day having the same number as the month and the day of the event from which the period starts to run, except that, where the event occurred on February 29 and in the relevant subsequent year February ends on the 28th, the period shall expire on February 28.
- (2) [Periods Expressed in Months] Any period expressed in months shall expire, in the relevant subsequent month, on the day which has the same number as the day of the event from which the period starts to run, except that, where the relevant subsequent month has no day with the same number,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e last day of that month.
- (3) [Periods Expressed in Days] The calculation of any period expressed in days shall start with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the relevant event occurred and shall expire accordingly.
- (4) [Expiry on a Day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or an Office Is Not Open to the Public] If a period expires on a day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concerned is not open to the public, the period shall,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o (3), expire on the first subsequent day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concerned is open to the public.

규칙 4 기한의 계산

1. [년(年)으로 표시된 기간] 년(年)으로 표시된 기간은, 관련 차기 연도에서 기산점이 되는 사건의 월 및 일과 동일한 월 및 일에 만료한다. 다만, 사건이 2월 29일에 발생하고 관련 차기 연도의 2월이 28일로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은 2월 28일에 만료한다.
2. [월(月)로 표시된 기간] 월로 표현된 기간은 관련 차기 월에서, 기산점이 되는 사건일과 동일한 일에 만료한다. 다만, 관련 차기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
3. [일(日)로 표시된 기간] 일로 표시된 기간의 계산은 관련 사건 발생일에서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그에 따라 만료한다.
4. [국제사무국 또는 관청 휴무일에의 만료]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의 휴무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기한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이 업무를 재개하는 첫째 날에 만료한다.

Rule 5

Excuse of Delay in Meeting Time Limits

- (1) [Excuse of Delay in Meeting Time Limits due to Force Majeure Reasons] Failure by an interested party to meet a time limit specified in the Regulation to perform an ac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excused if the interested party submits evidence show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Bureau, that such failure was due to war, revolution, civil disorder, strike, natural calamity, epidemic, irregularities in postal, delivery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interested party of other force majeure reason.
- (2) [Waiver of Evidence; Statement in Lieu of Evidence]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waive the requirement under paragraph (1)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such a case, the interested party must submit a statement that the failure to meet the time limit was due to the reason for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waived the requirement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 (3) [Limitation on Excuse] Failure to meet a time limit shall be excused under this Rule only if the evid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tat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is received by, and the corresponding action is performed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and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concerned.

Rule 6

Languages

- (1)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 (2) [Recording and Publication] The recording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the publication in the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of any data to be both recorded and published under these Regulations in respect of that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recording and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indicate the language in whic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규칙 5 기한 지연의 면제

1.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지연의 면제] 이해당사자가 국제사무국에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해당사자가 해당 미준수가 전쟁, 혁명, 소요, 파업,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우편, 배송, 전자방식 송부의 사고 등 이해당사자의 통제 밖 상황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국제사무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면제 가능하다.
2. [증거의 면제; 증거에 갈음하는 진술서] 국제사무국은 증거 제출에 관한 가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한의 미준수가 국제사무국이 증거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을 면제한 이유에 기인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면제의 제한] 이 규칙에 따른 기한 미준수에 대한 면제는 가호에 언급된 증거 또는 나호에 언급된 진술서가 접수되고, 그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국제사무국에 해당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규칙 6 언어

1. [국제출원] 국제출원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2. [기록 및 공개] 국제등록과 그 국제등록에 관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록되고 공개되는 모든 자료의 국제등록부에의 기록과 공보에의 공개는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국제등록의 기록과 공개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된 국제출원의 언어가 표시된다.

- (3) [Communications] Any communication concern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 (i)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where such communication is address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by the applicant or holder, or by an Office;
 - (ii) in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here the communication is address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an Office, unless that Office has notified the International Bureau that any such communications are to be in English, or in French or in Spanish;
 - (iii) in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here the communication is address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the applicant or holder unless that applicant or holder has expressed the wish that all such communications be in English, or be in French or be in Spanish.
- (4) [Translation] The translations needed for the recordings and publica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applicant may annex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 proposed translation of any text matter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the proposed translation is not conside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be correct, it shall be correct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fter having invited the applicant to make, within one month from the invitation, observations on the proposed corrections.

3. [통보]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관한 통보는 다음 언어로 작성된다.

- 1) 그러한 통보가 출원인이나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관청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 2) 그 통보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관청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관청이 그러한 통보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제출원의 언어
- 3) 통보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그러한 모든 통보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로 작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제출원의 언어

4. [번역] 국제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및 공개에 필요한 번역을 한다.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그 국제출원서에 포함된 본문 내용에 대하여 번역안을 첨부할 수 있다. 제출된 번역안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유한 후에 그 번역안을 수정한다.

CHAPTER 2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Rule 7

Requirement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1) [Form and Signatu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on the official form.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signed by the applicant.
- (2) [Fees] The prescribed fe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paid as provided for in Rules 27 and 28.
- (3) [Mandatory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contain or indicate
 - (i) the name of the applicant,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ii) the addres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email address of the applicant;
 - (iii) th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in respect of which the applicant fulfills the conditions to be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iv)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with an indication whether the product or products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are products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the product or products shall preferably be identified by using terms appearing in the list of good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제2장 국제출원과 국제등록

규칙 7 국제출원에 관한 요건

1. [서식 및 서명] 국제출원은 공식 서식으로 제출된다. 국제출원은 출원인에 의하여 서명된다.
2. [수수료] 국제출원에 적용되는 규정된 수수료는 규칙 제27조 및 규칙 제28조에 규정된 대로 납부된다.
3. [국제출원서의 필수 내용]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 1) 행정지침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 2) 행정지침에 따른 출원인의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3) 출원인이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조건을 충족하는 1개 또는 복수의 계약당사자 및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 4) 산업 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의 사용과 관련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의 사용과 관련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은 되도록 국제분류의 물품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재된다.

- (v) the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hich may not exceed 100, and the number of reproductions or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s accompany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Rule 9 or 10;
- (vi)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vii) the amount of the fees being paid and the method of payment, or instructions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to an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or giving the instructions.

(4) [Additional Mandatory Contents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Where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has notified the Director Gener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a), that its law requires one or more of the el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5(2)(b),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contain such element or elements, as prescribed in Rule 11.
- (b) Where Rule 8 applie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as applicable, contain the ind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or (3) thereof and be accompanied by any relevant statement, document, oath or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at Rule.

(5) [Optional Contents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An element referred to in item (i) or (ii) of Article 5(2)(b) may,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be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even where that element is not required in consequence of a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a).

- 5) 10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국제출원에 포함된 산업디자인의 수와 규칙 제9조 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첨부되는 산업디자인의 도면 또는 견본의 수.
- 6) 지정 계약당사자
- 7) 납부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 또는 수수료 요구액을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인출하라는 지시, 그리고 납부자 또는 지시자의 확인 표시

4. [국제출원의 추가적인 필수 내용]

- 가.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계약당사자는 자국 법이 제5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5조제2항가호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 그 국제출원은 규칙 제11조에 규정된 바대로 그러한 1개 또는 복수의 요소를 포함한다.
- 나. 규칙 제8조가 적용되는 경우, 국제출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언급된 표시를 포함하고, 그 규칙에 언급된 관련 기술서, 서류, 서약이나 선언서를 첨부 한다.

5. [국제출원의 선택적 내용]

- 가. 제5조제2항나호의 제1목 또는 제2목에서 언급된 요소는 제5조제2항가호에 따른 통지의 결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출원에 포함될 수 있다.

- (b) Where the applicant has a representativ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state the name and addres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email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 (c) Where the applicant wishes, under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priority of an earlier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contain a declaration claiming the priority of that earlier filing, together with an indication of the name of the Office where such filing was made and of the date and, where available, the number of that filing and, where the priority claim relates to less than all the industrial design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indication of those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e priority claim relates or does not relate.
- (d)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take advantage of Article 11 of the Paris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contain a declaration that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incorporated have been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together with the place where the exhibition was held and the date on which the product or products were first exhibited there and, where less than all the industrial design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e concerned, the indication of those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e declaration relates or does not relate.
- (e) Where the applicant wishes that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be deferre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contain a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 (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also contain any declaration, statement or other relevant indica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that identifies information known by the applicant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concerned.

나. 출원인이 대리인을 두는 경우, 국제출원은 행정지침에 따른 대리인의 성명, 주소와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술한다.

다. 출원인이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선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경우, 국제출원은 그러한 출원을 한 관청의 이름과 날짜, 적절한 경우 출원번호의 표시 그리고 우선권 주장이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이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산업디자인의 표시와 함께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한다.

라. 출원인이 파리 협약 제11조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경우, 국제출원은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산업디자인이 화체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이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전람회에서 전시되었다는 선언을 포함한다. 이 때 전람회가 개최된 장소와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날짜, 그리고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선언이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표시도 함께 포함한다.

마.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공개가 연기되기를 바라는 경우, 국제출원에 공개 연기 신청을 포함한다.

바. 국제출원은 행정지침에 명시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언, 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표시도 포함할 수 있다.

사.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해당 산업디자인의 보호적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출원인에 의하여 알려진 정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

- (6) [No Additional Matter] I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ny matter other than that required or permitted by the Act, these Regulations or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delete it ex officio. I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any document other than those required or permitted,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dispose of the said document.
- (7) [All Products to Be in Same Class] All the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s to which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relates,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s are to be used, shall belong to the same clas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Rule 8

Special Requirements Concerning the Applicant and the Creator

- (1) [Notification of Special Requirements Concerning the Applicant and the Creator]
- (a) (i)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at an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an industrial design be filed in the name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that Contracting Party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at fact.
- (ii) Where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e furnishing of an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that Contracting Party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at fact.
- (b)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shall specify the form and mandatory contents of any statement or document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i) shall specify the form and mandatory contents of the oath or declaration required.
- (2) [Identity of the Creator and Assignment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Wher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the designation of a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a)(i),

6. [추가사항 기재 금지] 국제출원이 개정협정, 이러한 규정 또는 행정지침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것 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국제출원에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것 외의 사항을 첨부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문서를 파기할 수 있다.
7. [모든 물품이 동일한 류에 속할 것] 국제출원과 관련한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것에 관련한 모든 물품은 국제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한다.

규칙 8 출원인과 창작자에 관한 특별 요건

1. [출원인과 창작자에 대한 특별요건의 통지]

가. 1) 계약당사자의 법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그 산업 디자인의 창작자 성명으로 출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의 법에서 창작자의 서약이나 선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나. 가호제1목에서 언급된 선언은 제2항의 목적상 요구되는 기술 또는 서류의 서식 및 필수 내용을 명시한다. 가호제2목에서 언급된 선언은 서약과 선언에서 요구되는 서식 및 필수 내용을 명시한다.

2. [창작자의 신원 및 국제출원의 양도] 국제출원이 제1항가호제1목에서 언급된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 (i) it shall also contain indica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together with a statemen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that the latter believes that he or she is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the person so identified as the creator shall be deemed to be the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irrespective of the person named as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Rule 7(3)(i);
 - (ii) where the person identified as the creator is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named as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Rule 7(3)(i),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or documen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to the effect that it has been assigned by the person identified as the creator to the person named as the applicant. The latter person shall be recorded as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3) [Identity of the Creator and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Wher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the designation of a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a)(ii), it shall also contain indica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Rule 9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 (1) [Form and Number of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 (a)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shall, at the option of the applicant, be in the form of photographs or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itself or of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The same product may be shown from different angles; views from different angles shall be included in different photographs or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 1) 창작자가, 제1항나호에 따라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을 그 디자인의 창작자로 믿고 있다는 진술과 함께 산업디자인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표시를 포함한다; 그렇게 창작자로 확인된 사람은 규칙 제7조제3항제1목에 따라 출원인으로 명명된 자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의 지정 목적상 출원인으로 간주된다,
 - 2) 창작자로 확인된 사람이 규칙 제7조제3항제1목에 따라 출원인으로 명명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창작자로 확인된 사람이 출원인으로 명명된 자에게 국제출원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제1항나호에 따라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진술 또는 문서가 첨부된다. 후자는 국제등록의 권리자로 기록된다.
3. [창작자의 신원과 창작자의 서약이나 선언]
- 국제출원이 제1항나호제2목에서 언급된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신원에 관한 표시도 포함한다.

규칙 9 산업디자인의 도면

1. [산업디자인 도면의 형식 및 수]

- 가. 산업디자인의 도면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산업디자인 그 자체 또는 그 산업디자인을 구성하는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의 사진이나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 형식이어야 한다. 동일한 물품은 다른 각도에서 보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의 도면은 각각의 사진 또는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에 표시된다.

- (b) Any reproduction shall be submitted in the number of copies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2) [Requirements Concerning Reproductions]

- (a) Reproductions shall be of a quality permitting all the details of the industrial design to be clearly distinguished and permitting publication.
- (b) Matter which is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be indicated as provided for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3) [Views Required]

-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ny Contracting Party which requires certain specified views of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shall, in a declaration, so notify the Director General, specifying the views that are required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required.
- (b) No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more than one view where the industrial design or product is two-dimensional, or more than six views where the product is three-dimensional.

(4) [Refusal on Grounds Relating to the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A Contracting Party may not refuse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 the ground that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form of the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that are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ose notified by that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a) have not been satisfied under its law. A Contracting Party may however refuse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 the ground that the reproduction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e not sufficient to disclose fully the industrial design.

나. 모든 도면은 행정지침에 규정된 수만큼의 사본이 제출된다.

2. [도면에 관한 요건]

가. 도면은 산업디자인의 모든 세부사항이 분명히 구별되도록 하고 공개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행정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도면에는 나타나 있으나 보호받고 싶지 않은 부분이 표시될 수 있다.

3. [요구되는 도면]

가. 나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것과 관련되는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의 특정 도면을 요구하는 모든 계약 당사자는, 요구되는 도면과 그 도면이 요구되는 상황을 명시하여 사무총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나.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산업디자인 또는 물품이 2차원적인 경우에는 1개를 초과한 도면을, 물품이 3차원적인 경우에는 6개를 초과한 도면을 요구할 수 없다.

4. [산업디자인의 도면에 관한 이유에서의 거절] 계약당사자는 제3항가호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가 통지한 요건에 추가되거나 이와는 다른 산업디자인의 도면 형식에 관한 요건이 그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국제등록에 포함된 도면이 그 산업디자인을 완전히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다.

Rule 10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 Where Deferment of Publication
Is Requested

- (1) [Number of Specimens] Wher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in respect of a two-dimensional industrial design and, instead of being accompanied by the reproductions referred to in Rule 9, is accompanied by specimens of the industrial design, the following number of specimens shall accompan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i) one specimen for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 (ii) one specimen for each designated Office that has notified the International Bureau under Article 10(5) that it wishes to receive copies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2) [Specimens] All the specimens shall be contained in a single package. The specimens may be folded. The maximum dimensions and weight of the package shall be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Rule 11
Identity of Creator; Description; Claim

- (1) [Identity of Creator]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indica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creator of the industrial design, his name or her name and address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2) [Description]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 description, the latter shall concern those features that appear in the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and may not concern technical features of the ope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or its possible utilization. If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an additional fee, as set out in the Schedule of Fees, shall be payable.

규칙 10 공개연기가 신청되는 산업디자인의 견본

1. [견본의 수] 국제출원이 2차원적인 산업디자인에 관한 공개연기 신청을 포함하고, 규칙 제9조에 언급된 도면이 첨부되는 대신에 산업디자인의 견본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의 견본이 국제출원에 첨부된다:

- 1) 국제사무국용 견본 1개, 및
- 2) 국제등록 사본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각 지정관청용 견본 1개.

2. [견본]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포함된다. 견본은 접힐 수 있다. 포장의 최대 크기와 무게는 행정지침에 명시된다.

규칙 11 창작자의 신원, 디자인의 설명, 청구범위

1. [창작자의 신원] 국제출원이 산업디자인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그/그녀의 성명 및 주소는 행정지침에 따라 기재된다.

2. [설명] 국제출원이 디자인의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설명은 산업디자인 도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에 관한 것이고, 산업디자인의 작용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나 그 가능한 활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의 설명이 100개의 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표에 규정된 대로 추가 수수료가 납부된다.

- (3) [Claim] A declaration under Article 5(2)(a) that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a claim in order for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protection to an industrial design to be accorded a filing date under that law shall specify the exact wording of the required claim.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 claim, the wording of that claim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said declaration.

Rule 12

Fe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 [Prescribed Fees]

- (a)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following fees:
- (i) a basic fee;
 - (ii) a standard designation fee in respect of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at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the level of which will depend on a declaration made under subparagraph (c);
 - (iii)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in respect of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 (iv) a publication fee.
- (b) The level of the standard designation fe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i) shall be as follows:

3. [청구범위] 계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부여를 위한 출원이 그 법에 따라 제출일을 부여받기 위하여 청구범위(claim)를 요구한다는 제5조제2항가호에 따른 선언은 그 요구되는 청구범위의 표현을 정확히 명시한다. 국제출원에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그 청구범위의 표현은 위에서 언급된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재된다.

규칙 1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1. [규정된 수수료]

가. 국제출원은 다음의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 1) 기본수수료;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각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그 수준은 다호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에 좌우될 것이다.
- 3)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각 지정 계약당사자에 관한 개별 지정수수료;
- 4) 공개수수료

나. 가호제2목에 언급된 표준 지정수수료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 (i) for Contracting Parties whose office does not carry out any examination on substantive grounds: one
 - (ii) for Contracting Parties whose office carries out examination on substantive grounds, other than as to novelty: two
 - (iii) for Contracting Parties whose office carries out examination on substantive grounds, including examination as to novelty either ex officio or following opposition by third parties: three
- (c) (i) Any Contracting Party whose legislation entitles it to the application of level two or three under subparagraph (b)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accordingly. A Contracting Party may also, in its declaration, specify that it opts for the application of level two, even if its legislation entitles it to the application of level three.
- (ii) Any declaration made under item (i)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its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It may also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in which case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e month after its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 In the absence of such a declaration, or where a declaration has been withdrawn, level one will be deemed to be the level applicable to the standard designation fee in respect of that Contracting Party.
- (2) [When Fees to Be Paid] The f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subject to paragraph (3), payable at the time of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except that,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 request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the publication fee may be paid later, in accordance with Rule 16(3)(a).

1) 자국 관청이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는:
.....제1수준

2) 자국 관청이 신규성에 관한 것 이외의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는:제2수준

3) 자국 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라 신규성에 관한 심사를 포함하여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는:
.....제3수준

다. 1) 자국 법령이 나호에 따른 제2수준 또는 제3수준의 출원에 대한 권리를 주는 계약당사자는 선언으로 사무총장에게 이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자국의 법령이 제3수준의 출원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경우라도 계약당사자는 제2수준의 출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선언으로 명시할 수 있다.

2) 제1목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선언에 표시된 더 나중 날에 발효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철회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 후 1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통지에서 표시된 더 나중 날에 발효한다. 그러한 선언이 없거나 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에 관하여는 제1수준이 표준 지정수수료가 적용되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수수료 납부 시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언급된 수수료는 국제출원을 출원하는 때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 신청을 포함하는 경우, 공개 수수료는 규칙 제16조제3항가호에 따라 그 이후에 납부될 수 있다.

(3) [Individual Designation Fee Payable in Two Parts]

- (a)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may also specify that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to be paid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to be paid at a later date which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b) Where subparagraph (a) applies, the reference in paragraph (1)(iii) to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first par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 (c) The second par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may be paid either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or through the International Bureau, at the option of the holder. Where it is paid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the Office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accordingly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any such not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Where it is paid through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the payment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notify the Office concerned accordingly.
- (d) Where the second par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s not paid within the applicable period, the Office concerned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request the International Bureau to cancel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with respect to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oceed accordingly and so notify the holder.

3. [두 부분으로 납부할 수 있는 개별 지정수수료]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언은 해당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납부될 개별 지정수수료가 두 부분으로,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때에 납부될 첫 번째 부분과 해당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정하여진 그 이후 일자에 납부될 두 번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명시할 수 있다.

나. 가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1항제3목에서 개별 지정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개별 지정수수료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다.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은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관청에 직접적으로 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납부될 수 있다.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이 해당 관청에 직접 납부되는 경우에는 그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이에 따라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그러한 모든 통지를 기록한다.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그 납부를 기록하고 해당 관청에 이에 따라 통지한다.

라.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이 적용기간 이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해당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서 국제등록을 취소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요청한다. 국제사무국은 이에 따라 진행하고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Rule 13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Through an Office

- (1) [Date of Receipt by Office and Transmittal to the International Bureau] Wher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that Off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ate on which it received the application. At the same time as it transmit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Office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date on which it received the application. The Off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fact that it has transmitte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 (2) [Transmittal Fee] An Office that requires a transmittal fee, as provided for in Article 4(2),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amount of such fee, which should not exceed the administrative costs of receiving and transmitt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its due date.
- (3) [Filing Dat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Indirectly] Subject to Rule 14(2), the filing date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through an Office shall be
 - (i)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at Office, provided that it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in one month of that date;
 - (ii) in any other case,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4) [Filing Date Wher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Requires a Security Clearance]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Contracting Party whose law, at the time that it becomes party to the Act, requires security clearance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that the period of one month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be replaced by a period of six months.

규칙 13 관청을 통하여 출원된 국제출원

1. [관청의 접수일 및 국제사무국에 송달]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계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출원되는 경우, 그 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날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그 관청은 국제출원을 국제사무국에 송달하는 것과 동시에 출원서를 접수한 날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그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송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 [송달료]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송달료를 요구하는 관청은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제출원의 접수와 송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간접적으로 제출된 국제출원의 제출일]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의 제출일은
 - 1) 국제출원이 그 관청에 접수된 날, 다만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접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
4. [출원인의 계약당사자가 비밀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의 제출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당시에 자국 법이 비밀해제를 요구하는 계약당사자는 제3항에서 언급된 1개월의 기간이 6개월의 기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Rule 14

Examin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1) [Time Limit for Correcting Irregularities]

- (a) If the International Bureau finds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oes not, at the time of its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fulfill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t shall invite the applicant to make the required correction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nvitation sen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where the amount of the fees received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less than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basic fee for one design,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first invite the applicant to make the payment of at leas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basic fee for one desig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nvitation sen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2) [Irregularities Entailing a Postponement of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n irregularity which is prescribed as an irregularity entailing a postponement of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filing date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correction of such irregularity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irregularities which are prescribed as entailing a postponement of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e the following:

- (a)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not in one of the prescribed languages;
- (b) any of the following elements is missing from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i)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that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sought;
 - (ii)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규칙 14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1. [하자의 보정 기한]

가.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될 때에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제사무국이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이 권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출원인에게 권고한다.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 접수 시 납부한 수수료가 1개 디자인에 대한 기본 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우선적으로 최소한 1개 디자인에 대한 기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제사무국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2. [국제출원의 제출일에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되는 날에 국제출원의 제출일에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로 규정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일은 그러한 하자의 보정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되는 날이다. 국제출원의 제출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하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출원이 규정된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다음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국제출원에서 누락된 경우:

1)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표시;

2) 출원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 (iii) indications sufficient to enable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if any, to be contacted;
 - (iv) a reproduction, 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iii), a specimen, of each industrial design that is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v) the designation of at least one Contracting Party.
- (3)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sidered Abandoned; Reimbursement of Fees] Where an irregularity, other than an irregularity referred to in Article 8(2)(b), is not remedied within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paragraph (1)(a) or (b),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bandoned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fund any fees paid in respect of that application, after deduction of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basic fee.

Rule 15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1)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Where the International Bureau finds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forms to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t shall register the industrial desig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send a certificate to the holder.
- (2)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contain
- (i) all the data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except any priority claim under Rule 7(5)(c) where the date of the earlier filing is more than six months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ii) any reprodu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 3) 출원인과 또는 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과 연락되도록 하는 충분한 표시;
 - 4)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의 도면이나 제5조제1항 제3목에 따른 견본
 - 5)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약당사자 지정.
3. [포기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수수료의 반환] 제8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하자 이외의 하자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기한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보고 국제사무국은 그 출원에 관하여 납부된 모든 수수료를 기본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규칙 15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부에의 등록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부에의 등록]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증명서를 송부한다.
2. [등록의 내용] 국제등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자료, 다만, 선출원 일자가 국제출원의 제출일보다 6개월 전인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5항다호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제외한다.
 - 2) 산업디자인의 도면

- (iii)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v)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v) the relevant clas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a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Rule 16

Deferment of Publication

(1) [Maximum Period of Deferment]

- (a) The prescribed period for deferment of publication shall be 30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from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concerned.

(2) [Period for Withdrawal of Designation Where Deferment Is Not Possible Under Applicable Law]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3)(i) for the applicant to withdraw the design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ose law does not allow the deferment of publication shall be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sen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3) [Period for Paying Publication Fee]

- (a) The publication fee referred to in Rule 12(1)(a)(iv) shall be paid; not later than three weeks before the period of deferment applicable under Article 11(2) expires or not later than three weeks before the period of deferment is considered to have expi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4)(a).

- 3) 국제등록일
- 4) 국제등록번호
- 5) 국제사무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국제분류의 관련 류

규칙 16 공개의 연기

1. [최장 연기기간]

가. 규정된 공개의 연기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다.

2. [관련 법률에 따라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지정의 철회 기간] 출원인이 법률에 따라 공개의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제11조제3항제1목에 언급된 기간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송부된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다.

3. [공개 수수료 납부 기간]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 3주까지 또는 제11조제4항가호에 따라 연기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기 전 3주까지, 규칙 제12조제1항가호제4목에 언급된 공개 수수료를 납부한다.

- (b)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of deferment of public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y sending an unofficial notice, remind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ere applicable, of the date by which the publication fe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be paid.
- (4) [Period for Submitting Reproductions and Registration of Reproductions]
- (a) Where specimens have been submitted instead of reproduc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10, those reproductions shall be submitted; not later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paying the publication fee set under paragraph (3)(a).
 - (b)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y reproduction submitted under subparagraph (a),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under Rule 9(1) and (2) are complied with.
- (5) [Requirements Not Complied With] If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3) and (4) are not complied wit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canceled and shall not be published.

Rule 17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1) [Timing of Publicati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published
- (i) where the applicant so requests, immediately after the registration,
 - (ii) subject to subparagraph (iibis), where deferment of publication has been requested and the request has not been disregarded, immediatel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of deferment expired,

- 나. 가호에 언급된 공개의 연기기간 만료 3개월 전,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비공식 통지를 송부하여, 적절한 경우, 가호에 언급된 공개 수수료가 납부되는 날짜를 상기시킨다.

4. [도면의 제출 기간과 도면의 등록]

- 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도면 대신에 견본이 제출된 경우 그 도면은, 제3항 가호에 규정된 공개 수수료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나. 국제사무국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가호에 따라 제출된 도면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 5. [요건 불비]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되고 공개되지 아니한다.

규칙 17 국제등록의 공개

- 1. [공개 시기] 국제등록은 다음 시기에 공개된다:

- 1) 출원인이 공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 즉시,
- 2) 하단 2의2에 따라, 공개의 연기가 신청되었고 그 신청이 무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기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 즉시,

- (iibis) where the holder so requests, immediately after the receipt of such reques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iii) in any other cas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 (2) [Contents of Publication] Th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Bulletin shall contain
- (i) the data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ii) the reproduction or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
 - (iii) where publication has been deferred, an indication of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of deferment expired or is considered to have expired.

CHAPTER 3

REFUSALS AND INVALIDATIONS

Rule 18

Notification of Refusal

- (1) [Period for Notification of Refusal]
- (a) The prescribed period for the notification of refusal of the effects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shall be six months from th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s provided for by Rule 26(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시행규칙 153

2의2)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국제사무국이 해당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3)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2. [공개の内容] 공보에 의한 국제등록의 공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자료;

2) 산업디자인의 1개 또는 복수의 도면;

3) 공개가 연기된 경우, 연기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의 표시.

제3장 거절과 무효

규칙 18 거절 통지

1. [거절 통지 기간]

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하는 통지에 대하여 규정된 기간은 규칙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대로 국제등록의 공개로부터 6개월이다.

-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y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an Examining Office, or whose law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opposition to the grant of protection, may, in a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 General that, the period of six months referred to in that subparagraph shall be replaced by a period of 12 months.
 - (c)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may also state that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produce the effect referred to in Article 14(2)(a) at the latest
 - (i) at a tim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which may be later than the date referred to in that Article but which shall not be more than six months after the said date or
 - (ii) at a time at which protection is grant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a decision regarding the grant of protection was unintentionally not communicated within the period applicable under subparagraph (a) or (b); in such a case,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accordingly and endeavor to communicate such decision to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promptly thereafter.
- (2) [Notification of Refusal]
- (a) The notification of any refusal shall relate to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dated and shall be signed by the Office making the notification.
 - (b) The notification shall contain or indicate
 - (i) the Office making the notification,
 - (i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이거나 자국 법에서 보호의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규정하는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그 계약당사자가 가호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12개월의 기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 나호에 언급된 선언은 늦어도 다음의 시기에는 국제등록이 제14조제2항 가호에 언급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표명할 수도 있다.

- 1) 그 선언에 명시된 시기, 다만 그 시기는 그 조에 언급된 날보다 늦을 수는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 2) 보호의 부여에 관한 결정이 의도하지 아니하게 가호 또는 나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 시기. 그러한 경우에 관련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에 따라 통지하고 그 이후 신속하게 해당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2. [거절 통지]

가. 거절 통지는 한 건의 국제등록에 관련되고, 통지하는 관청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나.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 1) 통지하는 관청,
- 2) 국제등록번호,

- (iii) all the grounds on which the refusal is based together with a reference to the corresponding essential provisions of the law,
 - (iv) where the grounds on which the refusal is based refer to similarity with an industrial design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an earlier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the filing date and number, the priority date (if any), the registration date and number (if available), a copy of a reproduction of the earlier industrial design (if that reproduction is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said industrial design, as provided for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v) where the refusal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ose to which it relates or does not relate,
 - (vi) whether the refusal may be subject to review or appeal and, if so, the time limi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for any request for review of, or appeal against, the refusal and the authority to which such request for review or appeal shall lie, with the indication, where applicable, that the request for review or the appeal has to be fil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a representative whose address i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has pronounced the refusal, and
 - (vii) the date on which the refusal was pronounced.
- (3) [Notification of Divis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ere, following a notification of refus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2),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divided before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in order to overcome a ground of refusal stated in that notification, that Office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such data concerning the division as shall be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3) 거절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유와 이에 상응하는 주요 법 규정
 - 4) 거절의 기초가 되는 이유가 선행하는 국내 또는 국제 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과의 유사성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침에 규정된 대로 제출일 및 출원번호, 우선일(존재하는 경우), 등록일 및 등록번호(가능한 경우), 선행하는 산업디자인 도면의 사본(도면이 공중에 열람 가능한 경우) 및 해당 산업디자인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 5) 거절이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절에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 6) 거절이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대상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거절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위한 상당한 기한, 적절한 경우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는 거절을 선언한 관청의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접수되어야 한다는 표시와 함께 그러한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제출할 기관, 및
 - 7) 거절이 선언된 날짜
3. [국제등록의 분할의 통지]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절통지 이후 그 통지에 언급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등록이 지정 계약당사자 관청에서 분할되는 경우, 그 관청은 행정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분할에 관한 자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4)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Refusal]

(a) The notification of any withdrawal of refusal shall relate to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dated and shall be signed by the Office making the notification.

(b) The notification shall contain or indicate

(i) the Office making the notification,

(i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ii) where the withdrawal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e refusal applied, those to which it relates or does not relate,

(iv)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roduced the effect as a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applicable law, and

(v) the date on which the refusal was withdrawn.

(c)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was amended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the notification shall also contain or indicate all amendments.

(5) [Recording]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any notific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c)(ii), (2) or (4)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together with, in the case of a notification of refusal, an indication of the date on which the notification of refusal was sen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6) [Transmittal of Copies of Notification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transmit copies of notifications received under paragraph (1)(c)(ii), (2) or (4) to the holder.

4. [거절 철회의 통지]

가. 거절 철회의 통지는 한 건의 국제등록에 관련되고, 통지하는 관청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나. 거절 철회의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 1) 통지하는 관청,
- 2) 국제등록번호,
- 3) 철회가 거절의 대상이 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 4) 국제등록이 적용된 법률에 따라 보호부여의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 및
- 5) 거절이 철회된 날짜.

다. 국제등록이 관청의 절차에서 보정된 경우, 통지서에는 모든 보정내용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5. [기록] 국제사무국은 제1항다호제2목,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통지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거절통지인 경우, 그 거절통지가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날짜에 대한 표시를 함께 기록한다.

6. [통지 사본의 송달] 국제사무국은 제1항다호제2목,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된 통지의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달한다.

Rule 18bis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1)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Where No Notification of Refusal Has Been Communicated]

(a) An Office which has not communicated a notification of refusal may, within the period applicable under Rule 18(1)(a) or (b), sen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protection is granted to the industrial designs,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as the case may be,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t being understood that, where Rule 12(3) applies, the grant of protection wi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second par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b) The statement shall indicate

(i) the Office making the statement,

(i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ii) where the statement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ose to which it relates,

(iv)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roduced or shall produce the effect as a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applicable law, and

(v) the date of the statement.

(c)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was amended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the statement shall also contain or indicate all amendments.

규칙 18의2 보호부여 기술서

1. [거절통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보호부여 기술서]

가.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관청은, 규칙 제18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 또는 적절한 경우 산업디자인의 부분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규칙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의 부여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것이다.

나. 이 기술서는 다음을 표시한다:

- 1) 기술서를 발행한 관청,
- 2) 국제등록번호,
- 3)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국제등록이 적용된 법률에 따라 보호부여의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 및
- 5) 기술서의 날짜.

다. 국제등록이 관청의 절차에서 보정된 경우, 보호부여기술서에는 모든 보정내용을 포함되거나 표시한다.

- (d)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where Rule 18(1)(c)(i) or (ii) applies, as the case may be, or where protection is granted to the industrial designs following amendments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the said Office must sen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stat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e) The applicabl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be the period allowed pursuant to Rule 18(1)(c)(i) or (ii), as the case may be, to produce the effect as a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applicable law, with respect to a designation of a Contracting Party having made a declaration under either of the aforementioned Rules.

(2)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Refusal]

- (a) An Office which has communicated a notification of refusal and which has decided to either partially or totally withdraw such refusal, may, instead of notifying a withdrawal of refusal in accordance with Rule 18(4)(a), sen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protection is granted to the industrial designs,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as the case may be,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t being understood that, where Rule 12(3) applies, the grant of protection wi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second par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 (b) The statement shall indicate
 - (i) the Office making the notification,
 - (i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ii) where the statement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ose to which it relates or does not relate,

라. 가호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규칙 제18조제1항다호제1목, 또는 제2목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관청의 절차에서 보정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가호에서 언급된 기술서를 송부 한다.

마. 가호에서 언급된 적용기간은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규칙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언한 계약당사자의 지정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하여 보호부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규칙 제18조제1항다호제1목, 또는 제2목에서 허용되는 기간이다.

2. [거절통보 이후 보호부여 기술서]

가. 거절통지를 통보하였고 그러한 거절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을 결정한 관청은, 규칙 제18조제4항가호에 따른 거절의 철회를 통지하는 대신에, 해당 계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 또는 그 일부에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국제사무국에 기술서를 송부할 수 있다. 규칙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의 부여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것이다.

나. 이 기술서는 다음을 표시한다:

- 1) 통지하는 관청,
- 2) 국제등록번호,
- 3) 기술서가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는 산업디자인,

- (iv)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roduced the effect as a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applicable law, and
 - (v) the date of the statement.
- (c)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was amended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the statement shall also contain or indicate all amendments.
- (3) [Recording, Information to the Holder and Transmittal of Copie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any statement received under this Rule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form the holder accordingly and, where the statement was communicated, or can be reproduced, in the form of a specific document, transmit a copy of that document to the holder.

Rule 19

Irregular Refusals

- (1) [Notification Not Regarded as Such]
- (a) A notification of refusal shall not be regarded as such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shall not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i) if it does not indicate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unless other indications contained in the notification permit the said registration to be identified,
 - (ii) if it does not indicate any grounds for refusal, or
 - (iii) if it is sen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applicable under Rule 18(1).

4) 법률에 따라 국제등록이 보호부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및

5) 기술서의 날짜.

다. 국제등록이 관청의 절차에서 보정된 경우, 기술서에 보정내용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3. [기록, 권리자에 대한 정보 및 사본의 송달] 국제사무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모든 기술서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권리자에게 이에 따라 알리며, 기술서가 권리자에게 특정한 문서의 형식으로 통보되었거나 재발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사본을 송달한다.

규칙 19 하자있는 거절

1.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통지]

가. 다음의 거절통지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거절통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1) 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밖의 표시로는 거절에 관한 국제등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거절이유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3)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경우.

- (b) Where subparagraph (a) applie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unless it cannot identify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transmit a copy of the notification to the holder, shall inform, at the same time, the holder and the Office that sent the notification that the notification of refusal is not regarded as such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has not been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shall indicate the reasons therefor.

(2) [Irregular Notification] If the notification of refusal

- (i) is not signed on behalf of the Office which communicated the refusal, o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under Rule 2,
- (ii) does not comply, where applicable, with the requirements of Rule 18(2)(b)(iv),
- (iii) does not indicate, where applicable, the authority to which a request for review or an appeal lies and the applicable time limi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for lodging such a request or appeal (Rule 18(2)(b)(vi)),
- (iv) does not indicate the date on which the refusal was pronounced (Rule 18(2)(b)(vii)),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evertheless record the refusal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transmit a copy of the notification to the holder. If so requested by the holde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nvite the Office which communicated the refusal to rectify its notification without delay.

나. 가호가 적용되는 경우, 거절통지에 의하여 관련 국제등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에게 통지의 사본을 송달하고, 권리자 및 통지를 송부한 관청에 그 거절통지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거절통지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그 이유를 표시한다.

2. [하자 있는 통지] 거절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 거절통보를 한 관청을 대표하여 서명되지 않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2) 적용 가능한 경우, 규칙 제18조제2항나호제4목에 의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3) 적용 가능한 경우,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관할당국 및 그러한 요청이나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적용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18조제2항나호제6목),
- 4) 거절이 선언된 날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규칙 제18조제2항나호제7목),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거절을 기록하고 거절 통지의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달한다. 권리자가 요구하면, 국제사무국은 거절통보를 한 관청에게 그 거절통지를 지체 없이 보정하도록 권유한다.

Rule 20

Invalidation 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1) [Contents of the Notification of Invalidation] Where the effects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e invalidated in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and the invalidation is no longer subject to any review or appeal,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competent authority has pronounced the invalidation shall, where it is aware of the invalidation,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accordingly. The notification shall indicate
- (i) the authority which pronounced the invalidation,
 - (ii) the fact that the invalidation is no longer subject to appeal,
 - (ii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v) where the invalidation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ose to which it relates or does not relate,
 - (v) the date on which the invalidation was pronounced and its effective date.
- (2) [Recording of the Invalid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the invalidatio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together with the data contained in the notification of invalidation.

규칙 20 지정 계약당사자에서의 무효

1. [무효 통지의 내용] 국제등록의 효력이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무효로 되고, 그 무효가 더 이상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무효를 선고한 관할 당국의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무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이에 따라 통지한다. 그 통지는 다음을 표시한다.

- 1) 무효를 선언한 당국,
- 2) 무효가 더 이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3) 국제등록번호,
- 4) 무효가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전부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무효와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 5) 무효 선언일과 효력발생일.

2. [무효의 기록] 국제사무국은 무효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함께 그 무효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CHAPTER 4

CHANGES AND CORRECTIONS

Rule 21

Recording of a Change

(1) [Presentation of the Request]

- (a) A request for the recording shall be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n the relevant official form where the request relates to any of the following:
 - (i)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ll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i) a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holder;
 - (iii) a renunci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iv) a limita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o one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v) a change in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 (b) The request shall be presented by the holder and signed by the holder; however,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may be presented by the new owner, provided that it is
 - (i) signed by the holder, or
 - (ii) signed by the new owner and accompanied by a document providing evidence that the new owner appears to be the successor in title of the holder.

제4장 변경과 경정

규칙 21 변경의 기록

1. [신청의 제출]

가. 기록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식서식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된다.

- 1)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3)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포기;
- 4)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제등록의 대상인 산업디자인을 하나 또는 일부로의 감축
- 5)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나. 권리자가 신청을 제출하고 서명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명의변경에 대한 기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1) 권리자가 서명한 경우, 또는
- 2) 새로운 권리자가 서명하고, 그 새로운 권리자가 권리자의 정당한 승계인으로 보이는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가 첨부된 경우.

(2) [Contents of the Request]

- (a)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shall, in addition to the requested change, contain or indicate
 - (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 (ii) the name of the holder, or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where the change relates to the name 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 (iii) in case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name and addres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email address of the new own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v) in case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in respect of which the new owner fulfills the conditions to be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 (v) in case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at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and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he numbers of the industrial designs and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o which the change in ownership relates, and
 - (vi) the amount of the fees being paid and the method of payment, or instruction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to an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or giving the instructions.

2. [신청의 내용]

가. 변경기록 신청은 신청하는 변경내용과 더불어,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 1) 해당 국제등록번호,
- 2) 변경이 대리인의 성명이나 주소에 관한 것일 경우,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 3)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경우, 행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국제등록의 새로운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4)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1개 또는 복수의 계약당사자,
- 5) 산업디자인 전부 및 계약당사자 전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경우, 명의변경과 관련된 산업디자인의 번호 및 지정 계약당사자, 및
- 6) 납부할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 또는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인출하라는 지시 및 납부자 또는 지시자의 확인 표시

(b)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accompanied by a communication to appoint a representative of the new owner.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under Rule 3(2)(b) and (c) are complied with, the effective date of such appointment shall be the date of the recording of the change in ownership pursuant to paragraph (6)(b). In such case, the recording of the change in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shall contain that appointment.

(3) Deleted

(4) [Irregular Request] If the request does not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ify that fact to the holder and, if the request was made by a person claiming to be the new owner, to that person.

(5) [Time Allowed to Remedy Irregularity] The irregularity may be remedi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he irregularity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e irregularity is not remedied within the said three months, the request shall be considered abandoned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ify accordingly and at the same time the holder and, if the request was presented by a person claiming to be the new owner, that person, and shall refund any fees paid, after deduction of an amount corresponding to one-half of the relevant fees.

(6)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a Change]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in order, promptly record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shall inform the holder. In the case of a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the International Bureau will inform both the new holder and the previous holder.

- 나. 국제출원 명의변경의 기록 신청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통보를 첨부할 수 있다. 규칙 제3조제2항나호 및 다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한 선임의 효력발생일은 제6항나호에 따라 명의변경의 기록일로 한다. 이 경우, 국제등록부의 명의변경기록에는 해당 선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삭제

4. [하자 있는 신청] 신청이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그 자에게 통지한다.

5.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 하자는 국제사무국의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의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에게,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에 따라 동시에 통지하고, 관련 수수료의 2분의1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된 모든 수수료를 반환한다.

6. [변경의 기록 및 통지]

- 가. 국제사무국은, 신청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변경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이 명의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 국제사무국은 새로운 권리자와 종전 권리자 모두에게 알린다.

- (b) The change shall be recorded as of the date of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request complying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Where however the request indicates that the change should be recorded after another change, or after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oceed accordingly.
 - (c) Where a change in ownership is recorded following a request presented by the new owner pursuant to subparagraph (1)(b)(ii) and the previous holder objects to the change in writing to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change shall be considered as if it had not been recorded.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inform both parties accordingly.
- (7) [Recording of Partial Change in Ownership] Assignment or other transf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some only of the industrial designs, or some only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under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which a part has been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any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part shall be canceled under the number of the said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recorded as a separat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separat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ar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which a part has been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together with a capital letter.
- (8) [Recording of Merger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Where the same person becomes the holder of two or mor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resulting from a partial change in ownership, the registrations shall be merged at the request of the said person and paragraphs (1) to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sulting from the merger shall bear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which a part had been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together, where applicable, with a capital letter.

나. 변경은 국제사무국이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청을 접수하는 날짜로 기록된다. 다만, 그 변경이 다른 변경 이후에 또는 국제등록의 갱신 이후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신청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이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1항나호제2목에 따라 새로운 권리자가 제출한 신청으로 명의변경이 기록되고 기존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서면으로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변경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제사무국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7. [일부 명의변경의 기록] 산업디자인의 일부 만에 관한 또는 지정 계약당사자의 일부 만에 관한 국제등록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이전은 일부가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된 국제등록의 번호에 대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다.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된 일부는 상기 국제등록의 번호에서 말소되고, 별도의 국제등록으로 기록된다. 별도의 국제등록은 대문자와 더불어 일부가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된 국제등록의 번호를 갖는다.

8. [국제등록의 병합의 기록] 동일한 인이 명의인의 일부 변경으로 둘 이상의 국제등록의 권리자로 기록된 경우, 그 국제등록은 그러한 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되고,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에 준용된다. 병합으로 인한 국제등록은 적용 가능한 경우 대문자와 더불어 일부가 양도 또는 기타 이전된 국제등록의 번호를 갖는다.

Rule 21bis
Declaration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

- (1) [Declaration and Its Effect]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may declare that a change in ownership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has no effect in the said Contracting Party. The effect of such a declaration shall be that, with respect to the said Contracting Party,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shall remain in the name of the transferor.
- (2) [Contents of the Declaration]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dicate
 - (a) the reasons for which the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
 - (b) the corresponding essential provisions of the law,
 - (c) where the declaration does not relate to all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hange in ownership, those to which it relates, and
 - (d) whether such declaration may be subject to review or appeal and, if so, the time limi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for any request for review of, or appeal against, the declaration and the authority to which such request for review or appeal shall lie, with the indication, where applicable, that the request for review or the appeal has to be fil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a representative whose address i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has pronounced the declaration.
- (3) [Period for Declaration]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sen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said change in ownership or within the applicable refusal peri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whichever expires later.

규칙 21의2 명의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1. [선언과 그 효력] 지정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명의 변경이 해당 계약당사자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의 효과로 해당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관련된 국제등록은 양도자의 명의로 남아 있게 된다.

2. [선언 내용] 제1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다음을 표시한다.

가. 명의변경이 효력을 갖지 않는 이유

나. 상응하는 필수적 법 규정

다. 선언이 명의변경의 대상인 산업디자인 전부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산업디자인, 그리고

라. 그러한 선언이 재심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대상이 된다면 재심사 요청이나 불복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적용 가능한 기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언한 관청의 계약당사자 영역에 그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재심사 청구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표시와 함께 그러한 재심사청구나 불복청구를 제출할 당국

3. [선언 기간] 제1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상기 명의변경의 공개일부터 6개월 내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거절기간 중 더 나중에 만료 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 (4)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the Declaration; Consequential Mod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recor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y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nd shall modify the International Register, whereby that par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the said declaration shall be recorded as a separat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previous holder (transfero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ify accordingly the previous holder (transferor) and the new holder (transferee).
- (5) [Withdrawal of Declaration] Any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may be withdrawn, in part or in whole. The withdrawal of declar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which shall record it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modify the International Register accordingly, and shall notify accordingly the previous holder (transferor) and the new holder (transferee).

Rule 22

Corrections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1) [Correction] Where the International Bureau, acting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the holder, considers that there is an error concerning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t shall modify the Register and inform the holder accordingly.
- (2) [Refusal of Effects of Correction] The Office of any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clare in a notif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that it refuses to recognize the effects of the correction. Rules 18 to 1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4. [선언에 대한 기록과 통지, 이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수정] 국제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행해진 모든 선언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국제등록부를 수정하며, 이에 의하여 상기 선언의 대상인 국제등록의 그 부분은 기존 권리자(양도인)의 명의로 별도의 국제등록으로 기록된다. 국제사무국은 기존권리자(양도인)와 새로운 권리자(양수인)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5. [선언의 철회] 제3항에 따라 행해진 모든 선언은 일부 또는 전부가 철회될 수 있다. 선언의 철회는 국제등록부에 그것을 기록하는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를 이에 따라 수정하며, 기존 권리자(양도인)와 새로운 권리자(양수인)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규칙 22 국제등록부의 경정

1. [경정]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의 국제등록에 관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국제등록부를 수정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경정의 효과에 대한 거절] 모든 지정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 규칙 제18조 및 제19조가 이에 준용된다.

CHAPTER 5 RENEWALS

Rule 23 Unofficial Notice of Expiry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of a five-year term,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send to the holder and the representative, if any, a notice indicating the date of expiry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fact that the said notice is not received shall not constitute an excuse for failure to comply with any time limit under Rule 24.

Rule 24 Details Concerning Renewal

(1) [Fees]

- (a)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renewed upon payment of the following fees:
 - (i) a basic fee;
 - (ii) a standard designation fee in respect of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at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and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newed;
 - (iii)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at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and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newed.
- (b) The amounts of the fees referred to in items (i) and (ii) of subparagraph (a) are set out in the Schedule of Fees.

제5장 갱신

규칙 23 만료의 비공식 통지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와 대리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국제등록의 만료일을 표시한 통지서를 송부한다. 상기 통지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규칙 제24조에 의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제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규칙 24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1. [수수료]

가. 국제등록은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라 갱신된다:

- 1) 기본수수료;
- 2) 국제등록이 갱신될 계약당사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은 각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 3) 국제등록이 갱신될 계약당사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각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한 개별 지정수수료.

나. 가호의 제1목과 제2목에서 언급된 수수료 금액은 수수료 표에 정해져 있다.

- (c) The payment of the fe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be made at the latest on the date on which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due. However, it may sti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due, provided that the surcharge specified in the Schedule of Fees is paid at the same time.
- (d) If any payment made for the purposes of renewal i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earlier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due, i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received three months before that date.

(2) [Further Details]

- (a) Where the holder does not wish to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 in respect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or
 - (ii) in respect of any of the industrial desig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ayment of the required fees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indicating the Contracting Party or the numbers of the industrial design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not to be renewed.

- (b) Where the holder wishes to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maximum period of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in that Contracting Party has expired, payment of the required fees, including the standard designation fee or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as the case may be, for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that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 respect of that Contracting Party.

다. 가호에서 언급된 수수료는 늦어도 국제등록 갱신의 만기일에 납부된다. 그러나 수수료 표에 명시된 가산료를 동시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국제등록 갱신의 만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될 수 있다.

라. 갱신을 위한 납부가 국제등록의 갱신 만기일 전 3개월보다 일찍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 만기일 3개월 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보다 상세한 세부사항]

가. 권리자가 다음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지정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또는
- 2)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시 국제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계약당사자 또는 산업디자인의 번호를 표시한 기술서를 첨부한다.

나. 지정 계약당사자에서 산업디자인 보호의 최장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그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경우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에 대한 개별 지정수수료를 포함한 필요 수수료의 납부는 그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술서가 첨부된다.

- (c) Where the holder wishes to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 refusal i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for that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all the industrial designs concerned, payment of the required fees, including the standard designation fee or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as the case may be, for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pecifying that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 respect of that Contracting Party.
 - (d)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not be renewed in respect of any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which an invalidation has been recorded for all the industrial designs under Rule 20 or in respect of which a renunciation has been recorded under Rule 21.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not be renewed in respect of any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for those industrial designs in respect of which an invalidation in that Contracting Party has been recorded under Rule 20 or in respect of which a limitation has been recorded under Rule 21.
- (3) [Insufficient Fees]
- (a) If the amount of the fees received is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for renewal,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omptly notify at the same time both the holder and the representative, if any, accordingly. The notification shall specify the missing amount.
 - (b) If the amount of the fees received is, on the expiry of the period of six months referred to in paragraph (1)(c),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for renewal,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 record the renewal, shall refund the amount received and shall notify accordingly the holder and the representative, if any.

다. 관련된 산업디자인 전부에 관하여 거절이 그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권리자가 국제등록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경우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를 포함한 필요 수수료의 납부는 그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취지의 기술서가 첨부된다.

라. 국제등록은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산업디자인 전부에 관하여 무효가 기록되거나 규칙 제21조에 의하여 포기가 기록된 지정 계약당사자에 관해서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은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해서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계약당사자에서의 무효가 기록되었거나 규칙 제21조에 의하여 감축이 기록된 디자인에 관하여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3. [미납수수료]

가. 접수한 수수료의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즉시 권리자,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이에 따라 동시에 통지한다. 통지에는 부족한 금액을 명시한다.

나. 접수한 수수료 금액이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갱신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갱신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하며, 권리자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Rule 25
Recording of the Renewal; Certificate

- (1) [Recording and Effective Date of the Renewal] Renewal shall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with the date on which renewal was due, even if the fees required for renewal are paid within the period of grace referred to in Rule 24(1)(c).
- (2) [Certificate]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send a certificate of renewal to the holder.

CHAPTER 6
PUBLICATION

Rule 26
Publication

- (1) [Informa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s]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ublish in the Bulletin relevant data concerning
- (i)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17;
 - (ii) refusals, with an indication as to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review or appeal, but without the grounds for refusal, and other communications recorded under Rules 18(5) and 18bis(3);
 - (iii) invalidations recorded under Rule 20(2);
 - (iv) changes recorded under Rule 21;

규칙 25 갱신의 기록, 증명서

1. [갱신의 기록과 효력발생일]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가 규칙 제24조제1항 다호에서 언급된 유예기간 내에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갱신은 그 만기일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다.
2. [증명서] 국제사무국은 갱신 증명서를 권리자에게 송부한다.

제6장 공개

규칙 26 공개

1.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국제사무국은 다음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보에 공개한다
 - 1) 규칙 제17조에 따른 국제등록;
 - 2)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가능성 여부를 함께 표시하나 거절이유는 표시하지 않는 거절과 규칙 제18조제5항과 규칙 제18의2조제3항에 따라 기록된 그 밖의 통보사항;
 - 3)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록된 무효;
 - 4) 규칙 제21조에 따라 기록된 변경;

- (ivbis) appointments of representatives recorded under Rule 3(3)(a), unless published under items (i) or (iv), and cancellations thereof other than ex officio cancellations under Rule 3(5)(a);
 - (v) corrections effected under Rule 22;
 - (vi) renewals recorded under Rule 25(1);
 - (vii) international registrations which have not been renewed;
 - (viii) cancellations recorded under Rule 12(3)(d);
 - (ix) declarations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 and withdrawals of such declarations recorded under Rule 21bis.
- (2) [Information Concerning Declarations; Other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ublish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any declaration made by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Act, or these Regulations, as well as a list of the days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is not scheduled to open to the public during the current and the following calendar year.
- (3) [Mode of Publishing the Bulletin] The Bulletin shall be published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The publication of each issue of the Bulletin shall be deemed to replace the sending of the Bulletin referred to in Article 10(3)(b), 16(4) and 17(5).

4의2) 제1목과 제4목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한 규칙 제3조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의 선임 및 규칙 제3조제5항가호에 따른 직권취소 이외의 취소

5) 규칙 제22조에 따라 유효한 경정;

6)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록된 갱신;

7) 갱신되지 않은 국제등록.

8) 규칙 제12조제3항라호에 따라 기록된 취소;

9)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과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록된 그러한 선언의 철회

2. [선언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 국제사무국은 현재 연도와 다음 연도 동안의 국제사무국의 휴무 예정일 목록뿐만 아니라 개정협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행한 모든 선언을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3. [공보 발행 방식] 공보는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공보의 각 발행본의 공개는 제10조제3항나호,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5항에 언급된 공보의 송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HAPTER 7

FEES

Rule 27

Amounts and Payment of Fees

- (1) [Amounts of Fees] The amounts of fees due under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other than individual designation fees referred to in Rule 12(1)(a)(iii), shall be specified in the Schedule of Fees which is annexed to these Regulations and forms an integral part thereof.
- (2) [Payment]
 -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nd Rule 12(3)(c), the fees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International Bureau.
 - (b) Whe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the fees payable in connection with that application may be paid through that Office if it accepts to collect and forward such fees and the applicant or the holder so wishes. Any Office which accepts to collect and forward such fees shall notify that fact to the Director General.
- (3) [Modes of Payment] Fees shall be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4) [Indications Accompanying the Payment] At the time of the payment of any fe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n indication must be given,
 - (i) befor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applicant, the industrial design concerned and the purpose of the payment;

제7장 수수료

규칙 27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1. [수수료 금액] 규칙 제12조제1항가호제3목에서 언급한 개별 지정수수료를 제외한 개정협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이 규정에 첨부되고 그 규정이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 표에 규정된다.

2. [납부]

가. 나호와 규칙 제12조제3항다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한다.

나.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 그 관청이 그러한 수수료의 징수 및 송금을 수용하고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그렇게 희망한다면, 그 출원에 관하여 납부할 수수료를 관청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한 수수료의 징수 및 송금을 수용한 관청은 누구나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3. [납부 방법]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행정지침에 따라 납부한다.

4. [납부에 수반되는 표시]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1) 국제등록 전에는, 출원인의 성명, 관련 산업디자인 및 납부 목적;

- (ii) aft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holder,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and the purpose of the payment.

(5) [Date of Payment]

- (a) Subject to Rule 24(1)(d) and subparagraph (b), any fe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n the day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s the required amount.
- (b) Where the required amount is available in an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at Bureau has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holder of the account to debit it, the fe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n the day on which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s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or an instruction to renew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6) [Change in the Amount of the Fees]

- (a) Wher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and the amount of the fees payable in respect of the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changed between, on the one hand, the date on whic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at Office and, on the other hand,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fee that was valid on the first date shall be applicable.
- (b) Where the amount of the fees payable in respect of the renewal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changed between the date of payment and the due date of the renewal, the fee that was valid on the date of payment, or on the date considered to be the date of payment under Rule 24(1)(d), shall be applicable. Where the payment is made after the due date, the fee that was valid on the due date shall be applicable.

2) 국제등록 후에는, 권리자의 성명, 관련 국제등록번호 및 납부 목적

5. [납부일]

가. 규칙 제24조제1항라호 및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이 필요 금액을 접수한 날에 국제사무국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필요금액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충당될 수 있고 국제사무국이 그 계좌의 권리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 변경기록 신청 또는 국제등록의 갱신 지시를 접수하는 날에 국제사무국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수수료 금액의 변경]

가.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출원되었고 국제출원에 관하여 납부할 수수료 금액이, 한편으로 그 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과,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 사이에 변동된 경우에는, 앞선 일자에 유효하였던 수수료가 적용된다.

나. 국제등록의 갱신과 관련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이 납부일과 갱신 예정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에는 납부일 또는 규칙 제24조제1항라호에 따라 납부일로 간주되는 날에 유효하였던 수수료가 적용된다. 갱신 예정일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갱신예정일에 유효하였던 수수료가 적용된다.

- (c) Where the amount of any fee other than the fe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is changed, the amount valid on the date on which the fee was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applicable.

Rule 28

Currency of Payments

- (1) [Obligation to Use Swiss Currency] All payments made under these Regulations to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in Swiss currency irrespective of the fact that, where the fees are paid through an Office, such Office may have collected those fees in another currency.
- (2) [Establishment of the Amount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s in Swiss Currency]
 - (a) Where a Contracting Party makes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that it wants to receive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the amount of the fee indica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expressed in the currency used by its Office.
 - (b) Where the fee i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n a currency other than Swiss currency, the Director General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establish the amount of the fee in Swiss currency on the basis of the official exchange rate of the United Nations.

다.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접수일에 유효한 금액이 적용된다.

규칙 28 납부 통화

1. [스위스 통화를 사용할 의무] 이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모든 금액은, 관청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관청이 다른 통화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수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스위스 통화로 납부된다.

2. [스위스 통화에 의한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의 확정]

가. 계약당사자가 제7조제2항 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별 지정 수수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표시되는 수수료 금액은 그 관청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된다.

나. 가항에서 언급된 선언에서 수수료가 스위스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청과 협의한 후에 국제연합의 공식 환율을 기초로 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한다.

- (c) Where, for more than three consecutive months, the official exchange rate of the United Nations between the Swiss currency and the currency in which the amount of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has been indicated by a Contracting Party is higher or lower by at least 5% than the last exchange rate applied to establish the amount of the fee in Swiss currency, the Office of that Contracting Party may ask the Director General to establish a new amount of the fee in Swiss currency according to the official exchange rate of the United Nations prevailing on the day preceding the day on which the request is made. The Director General shall proceed accordingly. The new amount shall be applicable as from a date which shall be fixed by the Director General, provided that such date is between one and two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said amount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 (d) Where, for more than three consecutive months, the official exchange rate of the United Nations between the Swiss currency and the currency in which the amount of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has been indicated by a Contracting Party is lower by at least 10% than the last exchange rate applied to establish the amount of the fee in Swiss currency, the Director General shall establish a new amount of the fee in Swiss currency according to the current official exchange rate of the United Nations. The new amount shall be applicable as from a date which shall be fixed by the Director General, provided that such date is between one and two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said amount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다. 연속하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위스 통화와 계약당사자가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을 표시한 통화 간의 국제연합 공식 환율이 그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하기 위하여 적용된 최종 환율보다 적어도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관청은 요구하는 날 전일의 국제연합의 공식 환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하여 주도록 사무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새로운 금액은 사무총장이 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날짜는 상기 금액의 기구의 웹사이트 공개일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한다.

라. 연속하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위스 통화와 계약당사자가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을 표시한 통화 간의 국제연합 공식 환율이 그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최종 환율보다 10%이상 낮은 경우, 사무총장은 그 시점의 국제연합의 공식 환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한다. 새로운 금액은 사무총장이 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날짜는 상기 금액의 기구 웹사이트 공개일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한다.

Rule 29
Crediting of Fees to the Accou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Any standard designation fee or individual designation fee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in respect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at Contracting Party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in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the course of which the recording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renewal for which that fee has been paid was effected or, as regards the second par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mmediately upon its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CHAPTER 8
MISCELLANEOUS

Rule 30
Deleted

Rule 31
Deleted

Rule 32
Extracts, Copies and Information Concerning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1) [Modalities] Against payment of a fee whose amount shall be fixed in the Schedule of Fees, any person may obtain from the International Bureau, in respect of any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 extracts from the International Register;

규칙 29

해당 계약당사자의 계좌로의 수수료 입금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에 납부된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는, 수수료가 납부된 국제등록 또는 갱신의 기록이 효력을 발생한 월의 다음 월 이내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에 관하여는 국제사무국이 이를 접수한 즉시, 국제사무국에 있는 계약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8장 기타

규칙 30

[삭제]

규칙 31

[삭제]

규칙 32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초본, 사본 및 정보

1. [양식] 수수료표에서 확정된 수수료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인은 누구나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모든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1) 국제등록부의 초본;

- (ii) certified copies of recordings made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of items in the fil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ii) uncertified copies of recordings made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of items in the fil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iv) written information on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of the fil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v) a photograph of a specimen.
- (2) [Exemption from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any Other Certification] In respect of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i) and (ii), bearing the seal of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signature of the Director General or a person acting on his or her behalf, no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authentication, legalization or any other certification of such document, seal or signature, by any other person or authority. The present paragrap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 referred to in Rule 15(1).

Rule 33

Amendment of Certain Rules

- (1) [Requirement of Unanimity] Amendment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shall require unanim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bound by the Act:
- (i) Rule 13(4);
 - (ii) Rule 18(1).

- 2) 국제등록부상의 기록 또는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인증등본;
 - 3) 국제등록부상의 기록 또는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미인증 사본;
 - 4) 국제등록부 또는 국제등록 서류의 내용에 관한 서면 정보;
 - 5) 견본의 사진.
2.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모든 증명의 면제] 제1항제1목과 제2목에 언급된 문서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의 날인과 사무총장 또는 그/그녀를 대신한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경우,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당국도 그러한 문서의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모든 증명, 그 밖의 모든 사람이나 당국의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 이 항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국제 등록 증명서에 준용된다.

규칙 33 특정 규칙의 개정

1. [만장일치의 요건] 이 시행규칙의 다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 1) 규칙 제13조제4항;
 - 2) 규칙 제18조제1항.

- (2) [Requirement of Four-Fifths Majority] Amendment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nd of paragraph (3) of the present Rule shall require a four-fifths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bound by the Act:
- (i) Rule 7(7);
 - (ii) Rule 9(3)(b);
 - (iii) Rule 16(1)(a);
 - (iv) Rule 17(1)(iii).
- (3) [Procedure] Any proposal for amending a provi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shall be sent to all Contracting Parties at least two month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session of the Assembly which is called upon to make a decision on the proposal.

Rule 34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1)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Instructions; Matters Governed by Them]
- (a) The Director General shall establish Administrative Instructions. The Director General may modify them. The Director General shall consult the Offic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Administrative Instructions or their proposed modification.
 - (b)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hall deal with matters in respect of which these Regulations expressly refer to such Instructions and with details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2. [5분의 4 다수결 요건] 이 시행규칙의 다음 조항과 동 규칙의 제3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의 5분의 4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 1) 규칙 제7조제7항;
 - 2) 규칙 제9조제3항나호;
 - 3) 규칙 제16조제1항가호;
 - 4) 규칙 제17조제1항제3목.
3.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규정의 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은 그 제안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2개월 전에 모든 계약당사자에 송부된다.

규칙 34 행정지침

1. [행정지침의 제정, 행정지침의 규율 사항]

가. 사무총장은 행정지침을 제정한다. 사무총장은 행정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행정지침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관청에 자문을 구한다.

나. 행정지침은 이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그 지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사항 및 이 시행규칙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룬다.

- (2) [Control by the Assembly] The Assembly may invite the Director General to modify any provis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the Director General shall proceed accordingly.
- (3) [Publication and Effective Date]
 - (a)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any modification thereof shall be published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 (b) Each publication shall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 published provisions become effective. The dates may be different for different provisions, provided that no provision may be declared effective prior to its publication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 (4) [Conflict with the Act, the 1960 Act or These Regulations]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on the one hand, any provis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on the other hand, any provision of the Act, the 1960 Act or of these Regulations, the latter shall prevail.

Rule 35

Declaration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 (1) [Making and Coming into Effect of Declarations] Article 30(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king of any declaration under Rules 8(1), 9(3)(a), 13(4) or 18(1)(b) and to its coming into effect.

2. [총회의 통제]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행정지침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3. [공개 및 효력발생일]

가. 행정지침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나. 각 공개 시 공개된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날을 명시한다.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전에는 어떠한 규정도 효력이 있다고 선언될 수 없는 경우, 효력발생일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다.

4. [상기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규정과의 충돌] 행정지침의 어떠한 규정이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규칙 35

체약당사자에 의한 선언

1. [선언 및 선언의 발효] 개정협정 제30조제1항과 제2항은 규칙 제8조제1항, 규칙 제9조제3항가호, 규칙 제13조제4항 또는 규칙 제18조제1항나호에 따른 모든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의 효력발생에 준용된다.

- (2) [Withdrawal of Declarations] Any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upon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 In the case of a declaration made under Rule 18(1)(b), the withdrawal shall not affect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ose date is earlier than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said withdrawal.

Rule 36

Deleted

Rule 37

Transitional Provisions

-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re provisions,
- (i) “Common Regulations” means the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1999 Act and the 1960 Act of the hague Agreement;
 - (ii) “Designation under the 1960 Act” means a designa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corded under the 1960 Act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2) [Transitional Provision Relating to the 1960 Act]
- (a) The Common Regulations as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24, shall continue to apply to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or before that date, and to the publication of any result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taining a designation under the 1960 Act.

2. [선언의 철회] 제1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총장이 선언의 철회 통지를 접수함으로써, 또는 그 통지에 기재된 더 나중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규칙 제18호제1항나호에 따라 행한 선언의 경우, 철회는 상기 철회의 효력발생일 보다 앞선 국제등록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규칙 36 [삭제]

규칙 37 경과규정

1. [정의] 이 규정의 목적상,
- 1) “공통규칙”이란 1999년법 및 1960년법에 따른 헤이그 협정의 공통 규칙을 말한다.
 - 2)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지정”이란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 등록부에 기록된 계약당사자의 지정을 말한다.
2. [1960년 개정협정에 관한 경과규정]
- 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공통규칙은 그 날, 혹은 그 이전에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과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지정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 등록 공개에 계속 적용된다.

- (b) Rule 18(1)(a), 21(3) and 26(3) of the Common Regulations as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24, shall continue to apply to any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respect of designations under the 1960 Act.
- (c) Rule 36(2) and (3)(ii) of the Common Regulations as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24, shall continue to apply to Contracting Parties to the 1960 Act.
- (3) [Transitional Provision Concerning Languages] Rule 6 of the Common Regulations as in force before April 1, 2010, shall continue to apply to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before that date and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sulting therefrom.

-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공통규칙의 규칙 제18조제1항가호, 규칙 제21조제3항 및 규칙 제26조제3항은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지정에 관한 모든 국제등록에 계속 적용된다.
 - 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공통규칙의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나호는 1960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3. [언어에 대한 경과규정] 2010년 4월 1일 이전에 유효한 공통규칙의 규칙 제6조는 그날 이전에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등록에 계속 적용된다.

SCHEDULE OF FEES

(as in force on January 1, 2025)

Swiss francs

I. International Applications

1. Basic fee*	
1.1 For one design	397
1.2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50
2. Publication fee*	
2.1 For each reproduction to be published	17
2.2 For each page, in addition to the first, on which one or more reproductions are shown (where the reproductions are submitted on paper)	150
3. Additional fee where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per word exceeding 100 words*	2

*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applicants whose sole entitlement is a connection with a Least Developed Country (LDC), in accordance with the list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or wit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States are LDCs, the fees intended for the International Bureau are reduced to 10% of the prescribed amounts (rounded to the nearest full figure). The reduction also appli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by an applicant whose entitlement is not solely a connection with suc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ed that any other entitlement of the applicant is a connection with a Contracting Party which is an LDC or, if not an LDC, is a member State of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f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each must fulfill the said criteria.

Where such fee reduction applies, the basic fee is fixed at 40 Swiss francs (for one design) and 2 Swiss francs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publication fee is fixed at 2 Swiss francs for each reproduction and 15 Swiss francs for each page, in addition to the first, on which one or more reproductions are shown, and the additional fee where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is fixed at 1 Swiss franc per group of five words exceeding 100 words.

수수료표

(2025년 1월 1일 시행)

스위스 프랑

I. 국제출원

1. 기본료*

- | | |
|-------------------------------|-----|
| 1.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 397 |
| 1.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 50 |

2. 공개료*

- | | |
|--|-----|
| 2.1 공개될 하나의 도면마다 | 17 |
| 2.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하나의 면마다 (도면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 150 |

3.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단어 당 추가 수수료*

2

* UN이 정하는 리스트에 따른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또는 회원국의 대부분이 최저개발국인 정부간 기구에만 관련된 출원인에 의해 제출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된 금액의 10% 감면한다(정수가 되도록 반올림함). 이러한 감액은,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관련된 외에 다른 자격을 가지는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국제출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즉, 출원인의 다른 자격이 최저개발국인 계약당사자나 아니면 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인 계약당사자에 관련한 경우 이러한 감액이 적용된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이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료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40 스위스 프랑 및 (동일한 국제출원에서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2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지고, 공고료는 각 도면에 대하여 2 스위스 프랑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각 면에 대하여 15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지며,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는 100단어를 초과하는 5단어당 1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진다.

4.	Standard designation fee**	
4.1	Where level one applies:	
4.1.1	For one design	42
4.1.2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2
4.2	Where level two applies:	
4.2.1	For one design	60
4.2.2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20
4.3	Where level three applies:	
4.3.1	For one design	90
4.3.2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50

**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applicants whose sole entitlement is a connection with a Least Developed Country (LDC), in accordance with the list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or wit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States are LDCs, the standard fees are reduced to 10% of the prescribed amounts (rounded to the nearest full figure).

The reduction also appli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by an applicant whose entitlement is not solely a connection with suc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ed that any other entitlement of the applicant is a connection with a Contracting Party which is an LDC or, if not an LDC, is a member State of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f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each must fulfill the said criteria.

Where such reduction applies, the standard designation fee is fixed at 4 Swiss francs (for one design) and 1 Swiss franc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level one, 6 Swiss francs (for one design) and 2 Swiss francs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level two, and 9 Swiss francs (for one design) and 5 Swiss francs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level three.

- ◆ [WIPO Note]: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Assembly of the Hague Union: “Contracting Parties that make, or that have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7(2) are encouraged to indicate, in that declaration or in a new declaration, that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applicants whose sole entitlement is a connection with a Least Developed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list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or wit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States ar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individual fee payable with respect to their designation is reduced to 10% of the fixed amount (rounded, where appropriate, to the nearest full figure). Those Contracting Parties are further encouraged to indicate that the reduction also appli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by an applicant whose entitlement is not solely a connection with suc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ed that any other entitlement of the applicant is a connection with a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Least Developed Country or, if not a Least Developed Country, is a member State of th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4. 표준 지정수수료**

4.1 제1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4.1.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42
4.1.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2

4.2 제2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4.2.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60
4.2.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20

4.3 제3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4.3.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90
4.3.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50

** UN이 정한 리스트에 따른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 관련되거나 회원국의 대부분이 최저개발국인 정부간 기구에 관련된 자격만을 가지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표준 수수료는 규정된 금액의 10%를 감면한다(정수가 되도록 반올림함). 이러한 감액은,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관련된 외에 다른 자격을 가지는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국제출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즉, 출원인의 다른 자격이 최저개발국인 계약당사자나 아니면 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인 계약당사자에 관련한 경우에 이러한 감액이 적용된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이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표준 지정수수료는, 제1수준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4 스위스 프랑 및 (동일한 국제출원에서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1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지고, 제2수준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6 스위스 프랑 및 (동일한 국제출원에서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2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지며, 제3수준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9 스위스 프랑 및 (동일한 국제출원에서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5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진다.

◆ [WIPO 설명]: 헤이그 연합의 의회가 채택한 권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하거나 한 계약당사자는, UN이 정한 목록의 최저개발국에 관련되거나 회원국의 대부분이 최저개발국인 정부간 기구에 관련된 자격만을 가지는 출원인이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에 따라 납부할 개별 수수료는 규정된 금액의 10%를 감액한다(필요한 경우 정수가 되도록 반올림함)고, 그 선언 또는 새로운 선언으로 표명할 것이 권고된다.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관련된 외에 다른 자격을 가지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즉, 출원인의 다른 자격이 최저개발국인 계약당사자거나 아니면 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인 계약당사자에 관한 경우에 이러한 감액이 적용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표명할 것이 이들 계약당사자에 추가적으로 권고된다.”

5. Individual designation fee (the amoun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s fixed by eac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I. Deleted

6. Deleted

III. Renewal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
|---|-----|
| 7. Basic fee | |
| 7.1 For one design | 200 |
| 7.2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17 |
| 8. Standard designation fee | |
| 8.1 For one design | 21 |
| 8.2 For each additional design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1 |
| 9. Individual designation fee (the amount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s fixed by eac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
| 10. Surcharge (period of grace) | *** |

IV. Deleted

11. Deleted

12. Deleted

*** 50% of the renewal basic fee.

5. 개별 지정수수료 (관련된 각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정해진
개별 지정수수료의 금액)◆

II. 삭제

6. 삭제

III. 국제등록의 갱신

7. 기본료
 - 7.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200
 - 7.2 동일한 국제등록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17
8. 표준 지정수수료
 - 8.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21
 - 8.2 동일한 국제등록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1
9. 개별 지정수수료 (관련된 각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정해진 개별 지정수수료의 금액)
10. 가산료 (유예기간) ***

IV. 삭제

11. 삭제
12. 삭제

*** 갱신 기본료의 50%.

V. Miscellaneous Recordings

13. Change in ownership	144
14. Change of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14.1 For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144
14.2 For each additional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same holder included in the same request	72
15. Renunciation	144
16. Limitation	144

VI. Information Concerning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s

17. Supply of an extract from the International Register relating to a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	144
18. Supply of non-certified copies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of items in the file of a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	
18.1 For the first five pages	26
18.2 For each additional page after the fifth if the copies are requested at the same time and relate to the same international registration	2
19. Supply of certified copies from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of items in the file of a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	
19.1 For the first five pages	46
19.2 For each additional page after the fifth if the copies are requested at the same time and relate to the same international registration	2
20. Supply of a photograph of a specimen	57

V. 기타 기록

13. 명의변경	144
14. 권리자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14.1 하나의 국제등록에 대하여	144
14.2 동일한 신청에 포함된 동일한 권리자의 추가되는 각 국제등록에 대하여	72
15. 포기	144
16. 감축	144

VI.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17.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등록부로부터의 초본 제공	144
18. 국제등록부 또는 공개된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미인증 사본의 제공	
18.1 첫 다섯 면에 대하여	26
18.2 동일한 국제등록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된 경우 다섯 면을 초과하는 각각의 면에 대하여	2
19. 국제등록부 또는 공개된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인증 등본의 제공	
19.1 첫 다섯 면에 대하여	46
19.2 사본이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경우 다섯 면을 초과하는 각각의 면에 대하여	2
20. 견본의 사진 제공	57

- | | | |
|------|--|----|
| 21. | Supply of written information on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or of the file of a published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21.1 | Concerning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82 |
| 21.2 | Concerning any additional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same holder if the same information is requested at the same time | 10 |
| 22. | Search in the list of owners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
| 22.1 | Per search by the name of a given person or entity | 82 |
| 22.2 | For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und beyond the first one | 10 |
| 23. | [Deleted] | |

VII. Service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24. The International Bureau is authorized to collect a fee, whose amount it shall itself fix, for services not covered by this Schedule of Fees.

21. 국제등록부의 내용 또는 공개된 국제등록 서류의 내용에 관한 서면 정보의 제공	
21.1 하나의 국제등록에 관하여	82
21.2 동일한 정보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동일한 권리자의 추가적인 국제등록에 관하여	10
22. 국제등록의 권리자 목록의 검색	
22.1 특정 인 또는 실체를 이름으로 검색할 때마다	82
22.2 처음 하나를 초과하여 발견된 각 국제등록에 대하여	10
23. 삭제	

VII.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24. 국제사무국은 이 수수료표에 제시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수수료 금액을 정하며, 그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
시행규칙 · 행정지침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HAGUE
AGREEMENT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지침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Hague Agreement

(as in force on January 1, 2025)

TABLE OF CONTENTS

Part One:	Definitions
Section 101:	Abbreviated Expressions
Part Two:	Communic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Section 201:	Communication in Writing; Several Documents in One Envelope
Section 202:	Signature
Section 203:	<i>[Deleted]</i>
Section 204: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ion 205:	Communications Through User Accounts Available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Part Three:	Requirements Concerning Names and Addresses
Section 301:	Names and Addresses
Section 302: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Part Four:	Requirements Concerning Reproduction and Other Element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Section 401:	Presentation of Reproductions
Section 402: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Section 403:	Disclaimers and Matter That Does Not Form Part of the Industrial Design or the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Section 404:	Requirements for Photographs and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지침

(2025년 1월 1일 시행)

목 차

제1장	: 정의
제101조	: 약어적 표현
제2장	: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보
제201조	: 서면에 의한 통보; 다수 서류의 동봉
제202조	: 서명
제203조	: [삭제]
제204조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보
제205조	: 기구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통한 통보
제3장	: 성명과 주소에 관한 요건
제301조	: 성명과 주소
제302조	: 교신용 이메일 주소
제4장	: 산업디자인의 도면; 권리 제외 선언; 번호부여
제401조	: 도면의 제출
제402조	: 산업디자인의 표현
제403조	: 권리 불요구선언과 산업디자인의 부분,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에 관한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사항
제404조	: 사진 및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에 대한 요건

- Section 405: Numbering of Reproductions and Legends
- Section 406: Requirements for Specimens
- Section 407: Relation with a Principal industrial Design or a Princip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Section 408: Permitted Matter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Permitted Documents Accompany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 Part Five: Refusals
 - Section 501: Date of Sending of Notification of Refusal
 - Section 502: Notification of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 Part Six: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or Renunciation before Publication
 - Section 601: Latest Time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or Renunciation

- Part Seven: Renewal
 - Section 701: Unofficial Notice of Expiry

- Part Eight: Fees
 - Section 801: Modes of Payment

- Part Nine: Confidential Copies
 - Section 901: Transmission of Confidential Copies
 - Section 902: Updating of Data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제405조 : 도면의 번호 부여와 범례
- 제406조 : 견본에 대한 요건
- 제407조 : 기본 산업디자인 또는 기본 출원이나 등록과의 관계
- 제408조 : 국제출원에서 허용되는 기재사항 및 국제출원 시 허용되는 서류

- 제5장 : 거절
- 제501조 : 거절통지의 송부일
- 제502조 : 국제등록의 분할의 통지

- 제6장 : 공개 전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
- 제601조 :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의 최후 기한

- 제7장 : 갱신
- 제701조 : 만료의 비공식적 통지

- 제8장 : 수수료
- 제801조 : 납부 방법

- 제9장 : 비밀사본
- 제901조 : 비밀사본의 송부
- 제902조 : 국제등록에 관한 데이터의 업데이트

Part One Definitions

Section 101: Abbreviated Expressions

- (a) For the purposes of thes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i) “Regulations” means the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 (ii) “Rule” means a Rule of the Regulations.
- (b) An expression which is used in thes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is referred to in Rule 1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Regulations.

Part Two Communic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Section 201: Communication in Writing; Several Documents in One Envelope

- (a) Communications address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be effected in writing by typewriter or other machine and shall be signed.
- (b) If several documents are mailed in one envelope, they should be accompanied by a list identifying each of them.

Section 202: Signature

- (a) A signature shall be hand written, printed, typed or stamped.
- (b) With respect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04(a)(i) of communications through a user account referred to in Section 205, a signature may be replaced by a mode of identification to be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 respect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04(a)(ii), a signature may be replaced by a mode of identification agreed upon between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Office concerned.

제1장 정의

제101조: 약어적 표현

- (a) 이 행정지침의 목적상:
 - (i) “시행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규정을 말한다;
 - (ii) “규칙”이라 함은 상기 규정의 규칙을 말한다;
- (b) 행정지침에 사용된 표현과 규칙 제1조에 언급된 표현은 시행규칙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장 국제사무국의 통보

제201조: 서면에 의한 통보; 다수 서류의 동봉

- (a) 국제사무국 앞으로의 통보는 타자기 또는 기타 기계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고, 서명되어야 한다.
- (b) 다수의 서류를 동봉하여 우송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확인하는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2조: 서명

- (a) 서명은 수기, 인쇄, 타이핑 또는 인장으로 하여야 한다.
- (b) 제204조(a)(i)에 언급된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보 및 제205조에 언급된 사용자 계정을 통한 통보에 대하여, 서명은 국제사무국이 정한 확인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204조(a)(ii)에 언급된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보에 관하여, 서명은 국제사무국과 해당 관청 간에 합의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Section 203: *[Deleted]***Section 204: Electronic Communications**

- (a) (i) Communic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ncluding the pres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take place by electronic means at a time and in a manner and format to be ascertai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particulars of which shall be published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 (ii)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i) above, and subject to paragraph (d) below, electronic communications between an Office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take place in a way agreed upon between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Office concerned.
- (b)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promptly and by electronic transmission inform the originator of an electronic transmission of the receipt of that transmission and, where the electronic transmission received is incomplete or otherwise unusable, also of that fact, provided that the originator can be identified and can be reached. Such an acknowledgement shall contain the date of receipt in the case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 (c) Where a communication is transmit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by electronic means and,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lace from where the communication is sent and Geneva, the date on which the sending started is different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complete communication, the earlier of the two dates shall be considered as the date of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d) Where the Office of Contracting Party wishes to receive a communic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date on which each issue of the Bulletin is published, that Office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at fact and indicate the email address to which the said communication shall be sent.

제203조: [삭제]

제204조: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보

- (a) (i) 국제출원의 제출을 포함한 국제사무국과의 통보는 국제사무국이 정한 방법과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항목들은 기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 (ii) (i)에도 불구하고, (d)를 조건으로, 관청과 국제사무국 간의 통보는 국제사무국과 해당 관청간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 (b) 국제사무국은 전송의 발송자에게 그 송부의 수령을 즉시 전자적 전송으로 알려야 하고, 수령한 전송이 불완전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발송자가 확인될 수 있고, 발송자에게 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수신확인에는, 국제출원의 경우, 수령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국제사무국에의 통보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고 통보가 송부된 장소와 제네바간의 시차로 인하여 송부가 개시된 날이 국제사무국이 완전한 통보를 수령한 날과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선행하는 날이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로 간주된다.
- (d) 국제사무국이 규칙 제26조(3)에 규정된 공보의 각 발행물(issue)이 게재된 날을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각 해당 관청은 그 통보를 송부할 전자우편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표시하여야 한다.

**Section 205: Communications Through User Accounts Available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 (a) A user account may be established by an interested party who has agre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Communications through the user account shall be authenticated through the use of the account holder’s user name and password.
- (b)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other request as specifi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may be submitted through an electronic interface made availabl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indicate an email address.
- (c)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transmit communications to the holder of the account through the user account.

제205조: 기구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통한 통보

- (a) 사용자 계정은 국제사무국에서 발행된 “이용 약관”에 동의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설정된다. 사용자 계정을 통한 통보는 권리자의 이름과 암호를 통해 인증된다.
- (b) “이용약관”에 정의된 국제출원, 또는 기타 신청은 기구 웹사이트에서 국제사무국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된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출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c) 국제사무국은 사용자 계정을 통해 계정 관리자에게 통보를 전송할 수 있다.

Part Three

Requirements Concerning Names and Addresses

Section 301: Names and Addresses

- (a) In the case of a natural person, the name to be indicated is the family or principal name and the given or secondary name(s) of the natural person.
- (b) In the case of a legal entity, the name to be indicated is the full official designation of the legal entity.
- (c) In the case of a name in characters other than Latin characters, the indication of that name shall consist of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which shall follow the phonetics of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the case of a legal entity whose name is in characters other than Latin characters, the said transliteration may be replac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d) An address shall be given in such a way as to satisfy the customary requirements for prompt postal delivery and shall consist, at least, of all the relevant administrative units up to, and including, the house number, if any. In addition, a telephone number may be indicated.

Section 302: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Where there are two or more applicants or new owner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on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shall be indicated. Where no such address is indicated, the email address of the person named first shall be treated as th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제3장 성명과 주소에 관한 요건

제301조: 성명과 주소

- (a) 자연인의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성명은 자연인의 성 및 이름이다.
- (b) 법인의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명칭은 그 법인의 전체 공식 명칭이다.
- (c)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로 되어 있는 성명의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를 국제출원의 음성표기법에 따른 라틴문자의 음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틴 문자 이외의 문자로 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음역을 국제출원 언어의 번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 (d) 주소는 신속한 우편배달이 가능한 통상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적어도 집의 호수가 있다면 그 호수까지를 포함한 관련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를 표시될 수 있다.

제302조: 교신용 이메일 주소

둘 또는 그 이상의 출원인 및 새로운 권리자들 또는 사용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교신용 이메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주소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첫번째로 성명이 기재된 자의 이메일 주소가 교신용 이메일 주소로 취급된다.

Part Four

Requirements Concerning Reproductions and Other Elem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ection 401: Presentation of Reproductions

- (a) One and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mprise both photographs and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in black and white or in color.
- (b) Each reproduction accompany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in a single copy.
- (c) The photographs or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accompany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paper shall be either pasted or printed directly onto a separate sheet of A4 paper which is white and opaque. The separate sheet of paper shall be used upright and shall not contain more than 25 reproductions.
- (d) The reproductions accompany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must be arranged in the orientation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hem to be published. Where that application is filed on paper, a margin of at least 5 millimeters should be left around the representation of each industrial design.
- (e) Each reproduction must fall within a right-angled quadrilateral containing no other reproduction or part of another reproduction and no numbering. The photographs or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shall not be folded, stapled or marked in any way.

Section 402: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 (a) The photographs and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shall represent the industrial design alone, or the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object, accessory, person or animal.

제4장 국제출원의 도면 및 기타 요소에 관한 요건

제401조: 도면의 제출

- (a) 하나의 동일한 국제출원이 흑백 또는 컬러로 표현된 사진과 그래픽 표현물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 (b) 국제출원에 첨부된 각 도면은 하나의 사본만 제출하여야 한다.
- (c) 서면으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첨부된 사진 또는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은 흰색의 불투명한 별도의 A4 용지에 붙이거나 직접 인쇄된 것이어야 한다. 이 용지는 세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포함되는 도면은 25개를 초과할 수 없다.
- (d) 국제출원에 첨부된 도면은 출원인이 공고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출원되는 경우, 각 산업디자인의 표현에는 둘레에 적어도 5mm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
- (e) 각 도면은 직각 사변형 내로 들어와야 하며, 다른 도면, 또는 다른 도면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번호를 매겨서는 안 된다. 사진 또는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은 접거나 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식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402조: 산업디자인의 도면

- (a) 사진 및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은 산업디자인만을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에 관한 물품을 표현하여야 하며, 다른 대상, 부속물, 사람 또는 동물을 제외하여야 한다.

- (b) The dimensions of the representation of each industrial design appearing in a photograph or other graphic representation may not exceed 16 x 16 centimeters, and in respect of at least one representation of each design, one of those dimensions must be at least 3 centimeters. With respect to the filing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by electronic means, the International Bureau may establish a data format, the particulars of which shall be published on the web site of the Organizat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se maximum and minimum dimensions.
- (c) The following shall not be accepted:
 - (i) technical drawings, particularly with axes and dimensions;
 - (ii) explanatory text or legends in the representation.

Section 403: Disclaimers and Matter That Does Not Form Part of the Industrial Design or the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 (a) Matter which is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be indicated
 - (i) in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Rule 7(5)(a) or
 - (ii) by means of dotted or broken lines or coloring, accompanied by a supporting statement in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Rule 7(5)(a).
- (b) Notwithstanding Section 402(a), matter that does not form part of the industrial design or the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may be shown in a reproduction if it is indic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

(b) 사진 또는 다른 그래픽 표현물에 나타나는 각 산업디자인 표현의 규격은 16 x 16 cm를 초과할 수 없고, 각 디자인의 적어도 하나의 표현물에 관하여, 이들 중 하나의 크기는 적어도 3 cm가 되어야 한다. 전자적 수단으로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은 이 최대 및 최소 크기의 적용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c) 아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i) 기술적 도면, 특히, 축과 규격을 포함하는 것;

(ii) 도면*에 있는 설명문 또는 범례

제403조: 권리 불요구 및 산업디자인 또는 해당 산업디자인이 사용되는 것과 관련한 제품의 일부가 아닌 사항

(a)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으나 보호를 받지 않으려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 규칙 제7조(5)(a)에 언급된 설명 또는

(ii) 규칙 제7조(5)(a)에 언급된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재와 함께, 점선 또는 파선 또는 색채를 사용하여 표시

(b) 제402조(a)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제품의 일부가 아닌 사항은 (a)에 따라 표시되는 경우 도면에 나타낼 수 있다.

* “Representation” 이란 산업디자인 표현방식(사진, 그래픽 표현물, 견본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나, 통상 산업디자인이 “도면” 으로 표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Representation” 을 “도면” 으로 번역한다.

Section 404: Requirements for Photographs and Other Graphic Representations

- (a) The photographs supplied must be of professional standard and have all the edges cut at right angles. The industrial design must be shown against a neutral plain background. Photographs retouched with ink or correcting fluid shall not be allowed.
- (b) Graphic representations must be of professional standard produced with drawing instruments or by electronic means and, where the application is filed on paper, must further be produced on good quality white, opaque paper, all of whose edges are cut at right angles. The industrial design represented may comprise shading and hatching to provide relief. Graphic representations executed by electronic means may be shown against a background, provided that it is neutral and plain and has only edges cut at right angles.

Section 405: Numbering of Reproductions and Legends

- (a) The numbering stipulated for multip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shall appear in the margin of each photograph or other graphic representation. When the same industrial design is represented from different angles, the numbering shall consist of two separate figures separated by a dot (e.g., 1.1, 1.2, 1.3, etc. for the first design, 2.1, 2.2, 2.3, etc. for the second design, and so on).
- (b) The reproductions shall be submitted in ascending numerical order.
- (c) Legends to indicate a specific view of the product (e.g., “front view”, “top view”, etc.) may be indicated in association with the numbering of the reproduction.

Section 406: Requirements for Specimens

- (a) A specimen in two dimensions which accompanies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not exceed 26.2 centimeters x 17 centimeters in size (unfolded), 50 grams in weight or 3 millimeters in thickness. Such specimens shall be pasted on sheets of A4 paper and numbe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405(b). The same number shall be assigned to each reproduction corresponding to these specimens when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제404조: 사진 및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에 대한 요건

- (a) 사진은 전문가 수준이어야 하며,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은 무채색의 민무늬 배경에 표현되어야 한다. 잉크나 수정액으로 수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그래픽 표현물은 제도 용구나 전자적 수단으로 작성된 전문가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서면으로 출원되는 경우, 모서리가 직각으로 제단된 우수한 품질의 흰색 불투명 종이에 표현되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은 요철을 보이기 위한 음영과 해칭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적 수단으로 제작된 그래픽 표현물은 배경 위에 표현될 수 있으나, 다만 그 배경은 무채색 민무늬에 직각인 모서리만을 가져야 한다.

제405조: 도면의 번호 부여와 범례

- (a)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에 요구되는 번호 부여는 각 사진 또는 다른 그래픽 표현물의 여백에 나타내야 한다. 동일한 디자인이 다른 시각에서 표현된 경우, 번호 부여는 점으로 구분되는 두개의 별개의 숫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디자인에 대하여 1.1, 1.2, 1.3, 등,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에 대하여 2.1, 2.2, 2.3, 등)로 이루어져야 한다.
- (b) 도면은 오름차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c) 물품의 특정한 도면을 표시하는 범례(예 “정면도”, “평면도” 등)는 도면의 번호와 함께 표시될 수 있다.

제406조: 견본에 대한 요건

- (a) 국제출원에 첨부된 2차원 견본은 펼쳤을 때 26.2 cm x 17 cm 의 크기를 넘을 수 없고, 무게는 50 그램, 두께는 3 mm를 넘을 수 없다. 그러한 견본은 A4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제405조(b)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이들 견본에 상응하는 각 도면은, 국제사무국에 제출되는 경우, 상응되는 견본과 동일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 (b) None of the dimensions of a package containing specimens shall exceed 30 centimeters and the weight of such package and its packing shall not exceed 4 kilograms.
- (c) Perishable products or products which may be dangerous to store shall not be accepted.

Section 407: Relation With a Principal Industrial Design or a Princip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a) Where the applicant wishes any or all of the industrial desig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be considered, under the law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at so provides, in relation to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the princip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r to any certain industrial design contained in a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contain a request to the effect, identifying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and providing that reference to the princip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r to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 (b)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a), the reference to the princip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r to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shall be indicated in either of the following manners:
 - (i) Where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s contain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number of that industrial design;
 - (ii) Where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s the subject of ano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number of the national 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together with the number of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f such a registration contain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 (iii) Where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s the subject of a national application which has not matured into registration, the number of the national application concerned or, if not available, the applicant's reference for that 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number of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f such an application contain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or

- (b) 견본을 포함하는 포장의 어느 방향 크기도 30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그 무게는 도합 4kg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c) 보관하기 어렵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407조: 기본 산업디자인 또는 기본 출원이나 등록과의 관계

- (a) 출원인이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또는 일부 산업디자인이, 지정 계약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떤 종류의 국내나 국제출원 또는 등록(기본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국내 또는 국제출원이나 등록(기본 산업디자인)에 포함된 특정 산업디자인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청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계약당사자를 명시하고, 기본 출원 또는 등록번호나 기본 산업디자인의 참조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소단락 (a)를 위하여, 기본 출원이나 등록의 또는 기본 산업디자인의 참조 번호는 아래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 (i) 기본 산업디자인이 같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경우, 그 산업디자인의 번호;
 - (ii) 기본 산업디자인이 다른 국내 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경우, 관련된 국내 또는 국제등록의 번호, 그러한 등록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기본 산업디자인의 번호와 함께;
 - (iii) 기본 산업디자인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국내 출원의 대상인 경우, 관련 국내 출원의 번호,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그 국내출원과 관련된 출원인의 참조번호, 그러한 출원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그 기본 산업디자인의 번호를 함께 표시하여;

- (iv) Where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s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which has not matured into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reference give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o that inter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number of the principal industrial design if such an application contain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 (c) Where the request under subparagraph (a) concerns only one or some of the industrial desig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request shall also indicated the numbers of the industrial designs concerned.

Section 408: Permitted Matter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Permitted Documents Accompany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Where the applicant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Rule 7(5)(c) claiming priority of an earlier filing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at claim may be accompanied by a code allowing to retrieve that filing in a Digital Access Service for Priority Documents (DAS) digital library;
- (b)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benefit from a reduction of an individual designation fee as indicated in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7(2) by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an indication or claim of the economic status entitling the applicant to the reduced fee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as well as the certificate thereof, where applicable.
- (c)(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make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may be prescribed under the law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he declaration shall be worded as follows, with the indication of those industrial designs to which the declaration relates: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e applicant claims to benefit from exceptional treatments provided for in the applicable laws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for disclosure of [all] the [following] industrial designs includ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 (iv) 기본 산업디자인이 국제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국제출원의 대상인 경우,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부여한 참조번호, 그러한 출원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의 번호를 포함한다.
- (c) 소단락 (a)에 따른 신청이 국제출원에 포함된 산업디자인의 하나 또는 일부만에 관련된 경우, 그 신청은 또한 관련된 산업디자인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08조: 국제출원에서 허용되는 기재사항 및 국제출원 시 허용되는 서류

- (a) 출원인이 규칙 제7조(5)(c)에 따라 국제출원에서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은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 디지털 도서관에서 우선권 서류를 검색하기 위한 코드를 첨부할 수 있다.
- (b) 출원인이 각 지정 계약당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에 표시된 대로 개별 지정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감면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표시 또는 청구범위를 포함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 (c)(i) 출원인이 국제출원에서 지정 계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포함된 [다음의] [모든] 산업디자인의 공개를 위해, 지정 계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예외적 대우 혜택을 주장한다.”

- (ii)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submit documentation on the type and date of disclosur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be accompanied by such documentation.
- (d) Where the applicant wishes to submit a statement as referred to in Rule 7(5)(g), the statement shall be in the format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n agreement with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concerned.

Part Five

Refusals

Section 501: Date of Sending of Notification of Refusal

In the case of a notification of refusal sent through a postal service, the date of dispatch shall be determined by the postmark. If the postmark is illegible or missing,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treat such notification as if it had been sent 20 days before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However, if the date of dispatch thus determined is earlier than any date of refusal or date of sending mentioned in the notific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treat such notification as if it had been sent on the latter date. In the case of a notification of refusal sent through a delivery service, the date of dispatch shall be determined by the indication given by such delivery service on the basis of the details of the mailing as recorded by it.

Section 502: Notification of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Where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has been divided before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following a notification of refusal as provided for in Rule 18(3), that Office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at fact, together with the following additional particulars:

- (ii) 출원인이 공개일 및 공개 형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출원에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d) 출원인이 규칙 제7조(5)(g)에 언급된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진술서는 지정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국제사무국이 정한 형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5장 거절

제501조: 거절통지의 송부일

우편업무에 의하여 송부된 거절통지의 경우에는, 발송일은 우편소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우편소인이 판독할 수 없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통지를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 20일전에 그 통지가 송부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하여진 송부일이 거절일자 또는 통지에서 언급된 송부일보다 선행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통지가 후자의 일자에 송부된 것으로 취급한다. 교부업무에 의하여 송부된 거절통지의 경우에는, 발송일은 그 교부업무에 의하여 기록된 우송 상세내역을 기초로 하여 그 교부업무에 의하여 부여된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502조: 국제등록의 분할의 통지

규칙 제18조(3)에 규정된 거절통지에 대하여 지정된 계약국의 관청에서 국제등록이 분할된 경우, 그 관청은 이 사실을 아래의 추가 사항과 함께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i) the Office making the notification;
- (ii)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 (iii) the numbers of the industrial designs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the division with the Office concerned, and
- (iv) the resulting national or regional application numbers or registration numbers.

Part Six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or Renunciation Before Publication

Section 601: Latest Time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or Renunciation

Where Rule 17(1)(ii) or (iii) applies,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or renunciation concerning that registration, complying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must be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not later than three weeks prior to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publication referred to in Rule 17(1)(ii) or (iii), respectively. In default of this,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published as provided in Rule 17(1)(ii) or (iii), as the case may be, without account being taken of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or renunciation. Provided that the request for limitation or renunciation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the limitation or renunciation is however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i) 통지 관청;
- (ii) 관련된 국제등록번호;
- (iii) 해당 관청에서 분할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의 번호 및
- (iv) 그로 인한 국내 또는 지역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제6장

공개 전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

제601조: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의 최후 기한

규칙 제17조(1)(ii) 또는 (iii)이 적용되는 경우, 그 등록에 관한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은, 요건을 갖추어, 규칙 제17조(1)(ii) 또는 (iii)에 각각 언급된 공개기간의 만료 전 3주까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의 불이행시에는, 국제등록은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규칙 제17조(1)(ii) 또는 (iii)에 규정된 대로 공개된다. 다만, 감축 또는 포기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감축 또는 포기는 국제등록부에 기록된다.

Part Seven

Renewal

Section 701: Unofficial Notice of Expiry

When, pursuant to Rule 23, the International Bureau sends to the holder and the representative, if any, a notice indicating the date of expirat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uch notice shall contain also an indic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at the date of the noti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maximum duration of protection notified by each Contracting Party pursuant to Article 17(3)(c) and Rule 37(2)(c),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possible.

Part Eight

Fees

Section 801: Modes of Payment

Fees may be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 (i) by debit to a current account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 (ii) by payment into the Swiss postal check account or to any of the specified bank accounts of the International Bureau,
- (iii) through an online payment system made availabl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제7장 갱신

제701조: 만료의 비공식적 통지

국제등록의 만료일을 표시한 통지를 규칙 제23조에 따라서 국제사무국이 권리자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는 경우에, 그 통지는 제17조 제3항다호와 규칙 제37조(2)(c)에 따라 각 체약국이 통지한 보호의 최장기간에 따라 통지일자 시점에서 국제등록의 갱신이 가능한 체약국의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수수료

제801조: 납부 방법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i) 국제사무국과의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 (ii) 스위스 우편 수표 계좌 또는 명시된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중 하나로 납부;
- (iii) 국제사무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온라인 지불시스템을 통해 납부

Part Nine

Confidential Copies

Section 901: Transmission of Confidential Copies

- (a) The confidential copy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provided for under Article 10(5) shall be transmitted to any Office concerned by electronic means in accordance with Section 204(a)(ii).
- (b) Notwithstanding paragraph (a) above, a specimen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pursuant to Rule 10(1)(ii) shall be transmitted in an appropriate manner.

Section 902: Updating of Data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a)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ferred to in Section 901(a) is cancelled pursuant to Rule 16(5), that cancella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any Office that has received a confidential copy of the said international registration.
- (b) Where,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ferred to in Section 901(a), a change i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pursuant to Rule 21(1)(a)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said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at change shall be communicated to any Office that has received a confidential copy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except where the change is specific to the designation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 (c) Paragraph (b) shall apply to any correction effected under Rule 22(1)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d) Any cancellation, change or correction referred to in this section shall be communicat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Section 901(a).

제9장 비밀사본

제901조: 비밀사본의 송부

- (a) 제10조제5항에 의해 규정된 국제등록의 비밀사본은 제204조(a)(ii)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모든 관청에 송달해야 한다.
- (b) 위 (a)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1)(ii)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견본은 적절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제902조: 국제등록에 관한 자료의 업데이트

- (a) 제901조(a)에 언급된 국제등록이 규칙 제16조(5)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는 상기 국제등록의 비밀사본을 받는 관청에 통보한다.
- (b) 제901조(a)에 언급된 국제등록에 대하여, 상기 국제등록의 공개 전에 규칙 제21조(1)(a)에 따라 국제등록부에 변경이 기록된 경우, 그 변경이 다른 계약당사자의 지정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등록의 비밀사본을 접수한 모든 관청에 통보한다.
- (c) 나호는 국제등록의 공개 전 규칙 제22조(1)에 따라 유효한 모든 경정에 적용한다.
- (d)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취소, 변경 또는 경정은 제901조(a)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참고자료

-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관련 서식



DM/1 (E)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IMPORTANT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file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nline using [eHague](#).

Warning: When using form DM/1, an extra publication fee of 150 Swiss francs applies per additional page of reproductions.

If using this form:

1.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2.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3.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4. On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up to 100 designs** in the sam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5. **Reproductions** must be prepared according to [standard requirements](#).
6. **Security clearance** is required by certain domestic laws:
 - designs cre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Uzbekistan**, by **domestic legal entities or nationals**, are subject to a security clearance procedure by the [national Offi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ain state secrets; and
 - for design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licant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national Office](#) before fil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Use the [Hague System Fee Calculator](#) to calculate the cost of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consult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
8. For more information on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Offices, refer to [Hague System Member Profil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of this form,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ANNEXES

Annex I –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or, if not possible,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mandatory if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I – submit document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5).

Annex III – identify information known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design(s) concerned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V – submit a micro entity certification in order to benefit from a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fer to item 18).

Annex V – submit documentation in support of a priority claim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3).

DM/1 (E)**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For use by the applicant**Reference (*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if any*):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Annex(es):

☐ I ☐ II ☐ III ☐ IV ☐ V
For use by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Office transmitt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applicable*):

Name of the Office:

Office reference:

Dat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Day/month/year

Signature and/or seal of the Office:

For use by WIPO

1. Applicant

- ☐ If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check this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items 1, 2 and 3 below, for each additional applicant on a **continuation sheet**.

The applicant is a:

☐ **Natural person:**

☐ **Legal entity:**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Official designation (legal nature)

Address:

E.g. street, house number (if any)

Postal code:

City:

Region/state (optional):

Country:

Email address: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unless an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4 (only for multiple applicants),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 (optional):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2. Entitlement to File

The applicant must be a national of, or have a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commercial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You must indicate the corresponding **Contracting Party(ies)** in each field. If a field is not applicable, write "None". For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also members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European Union o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dicate both entities (example: "France, European Union") in all relevant fields. As regards member states of IGOs that are themselves not Contracting Parties, only indicate the name of the IGO.

Nationality:

Domicile: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Habitual residence:

3.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Indicate the Contracting Party or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ed in item 2 above, to be considered as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If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in the box below, an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2, that Contracting Party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4.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Applicants (if applicable)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applicant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Note: If there is only one applicant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item will be disregarded.

Email address: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ptional)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Note: a legal firm is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If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are indicated,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preceding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The representative is a:

☐

Natural person:

☐

Legal entity: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Official designation (legal nature)

Address:

E.g. street, house number (if any)

Postal code:

City:

Region/state (optional):

Country:

Email address: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 (optional):

Includ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6. Number of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Unity of design is a requirement in **Brazil, China, Estonia, Kyrgyzstan, Mexico, Romania, the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the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and Viet Nam**. If this application includes more than one design and designates any of these Contracting Parties,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6](#) and the [Guidance on multiple designs](#). If designating **China**, also refer to item 16.

Total number of designs (<i>maximum of 100</i>):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Total number of A4 pages comprising reproductions:	
Total number of specimens (<i>if any</i>):	

7.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Select all **Contracting Parties** where you seek protection.

Important: Additional Contracting Parties cannot be designated in the same application after filing.

- | | |
|--|--|
| ☐ AL Albania | ☐ KR Republic of Korea |
| ☐ AM Armenia | ☐ LI Liechtenstein |
| ☐ AZ Azerbaijan | ☐ LT Lithuania |
| ☐ BA Bosnia and Herzegovina | ☐ LV Latvia |
| ☐ BG Bulgaria | ☐ MA Morocco |
| ☐ BN Brunei Darussalam | ☐ MC Monaco |
| ☐ BR Brazil | ☐ MD Republic of Moldova |
| ☐ BW Botswana | ☐ ME Montenegro |
| ☐ BX Benelux | ☐ MK North Macedonia |
| ☐ BY Belarus | ☐ MN Mongolia |
| ☐ BZ Belize | ☐ MU Mauritius |
| ☐ CA Canada | ☐ MX Mexico |
| ☐ CH Switzerland | ☐ NA Namibia |
| ☐ CN China | ☐ NO Norway |
| ☐ DE Germany |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
| ☐ DK Denmark | ☐ OM Oman |
| ☐ EE Estonia | ☐ PL Poland |
| ☐ EG Egypt | ☐ RO Romania |
| ☐ EM European Union | ☐ RS Serbia |
| ☐ ES Spain | ☐ RU Russian Federation |
| ☐ FI Finland | ☐ RW Rwanda |
| ☐ FR France | ☐ SA Saudi Arabia |
| ☐ GB United Kingdom | ☐ SG Singapore |
| ☐ GE Georgia | ☐ SI Slovenia |
| ☐ GH Ghana | ☐ SM San Marino |
| ☐ GR Greece | ☐ SR Suriname |
| ☐ HR Croatia | ☐ ST Sao Tome and Principe |
| ☐ HU Hungary | ☐ SY Syrian Arab Republic |
| ☐ IL Israel | ☐ TJ Tajikistan |
| ☐ IS Iceland | ☐ TM Turkmenistan |
| ☐ IT Italy | ☐ TN Tunisia |
| ☐ JM Jamaica | ☐ TR Türkiye |
| ☐ JP Japan | ☐ UA Ukraine |
| ☐ KG Kyrgyzstan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 ☐ KH Cambodia | ☐ UZ Uzbekistan |
| ☐ KN Saint-Kitts and Nevis | ☐ VN Viet Nam |
|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WS Samoa |

8. Product Indication

Indicate for each design the product which constitutes the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design is to be used.

Special note: Products belonging to **class 32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are not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national laws of **Canada, China (only 32-01 is excluded), Israel, Mexico**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would be refused by their respective Offices).

Locarno Class to which the design(s) belong(s) (optional):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Product(s)	Subclass (optional)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9. Description (if applicable)

General note: On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s that appear in the reproductions. Matter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also be indicated here (and/or in the reproduction by means of dotted or broken lines or coloring). The description can disclose the operation or possible use of the design so long as it is not technical. Furthermore, omission of a specific view may be indicated. If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an additional fee of two Swiss francs per word exceeding 100 applies.

Special note for some Contracting Parties: If designating the **Syrian Arab Republic**,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China, Romania** or **Viet Nam**,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the **Russian Federation**, the Office recommends that you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0. Legends (optional)

Recommended, especially when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Guidance on Reproductions**.

Associate the number in the margin of the reproduction with the corresponding code:					
1 Perspective	3 Back	5 Bottom	7 Right	9 Unfolded	11 Cross-Sectional
2 Front	4 Top	6 Left	8 Reference	10 Exploded	12 Enlarged
00 Other (limited to 50 characters)					

No. (e.g. 1.1)	Code (e.g. 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No. (e.g. 1.1)	Code (e.g. 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1. Identity of the Creator (if applicable)

I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Mexico, Romania**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In respect of the designation o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and/or Mexico, the person indicated in item 11 declares to be the creator of the design. Where the person identified as the creator is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it is hereby stated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been assigned by the creator to the applicant. 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also submit an oath or declaration of inventorship using Annex I. If **Bulgaria,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Serbia, Tajikistan** and/or **Türkiye** are designated in item 7,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you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dentity of the creator"](#)).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Creator(s)
Leave blank if the identity of the creator relates to all designs. 	Creator 1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Address (e.g. street, house number, postal code) City Region/state (optional) Country
	Creator 2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Address (e.g. street, house number, postal code) City Region/state (optional) Country
	Creator 3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Address (e.g. street, house number, postal code) City Region/state (optional) Country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2. Claim (if applicable)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or **Viet Nam**.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ornamental design for as shown and described.

Indicate the article in which the design is embodied in or applied to. If multiple designs for the same article ar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article should be written in singular form.

Viet Nam:

By designating Viet Nam in item 7, the applicant is making the following claim: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13. Priority Claim (if applicable)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for which priority is claimed. If no design is indicated, then the priority claim will relate to all design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Brazil, China, Japan,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Türkiy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ire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directly to their Office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3](#).

Office or country of earlier filing	No. of earlier filing (if available)	Date of earlier filing	DAS code (if available) Refer to Guide to the Hague System, WIPO Digital Access Service – Item 13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e.g. design 1, design 2)	Annex V provided Only if China,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is designated
		Day/month/year			
					☐ Yes
					☐ Yes
					☐ Ye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s) indicated above.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4. International Exhibition (if applicable)

You may benefit from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exhibited at an international exhibition under Article 11 of the Paris Convention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Database on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Shown at International Exhibition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at one or more designs were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Place where the exhibition was held:

Name of the exhibition:

Date on which products were first exhibited:
Day/month/year

No. of the design: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shown at the exhibition in numerical order. If no design is indicated, it is understood that all designs were shown.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5.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f applicable)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you may benefit from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prior disclosure.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5](#).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China**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claims to benefit from excep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 design law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for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You must submit supporting documentation via Annex II (see check box below) or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 Check this box if Annex II is attached.

16. Main or Principal Design (if applicable)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strongly recommends to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6](#).

China: main design

If designating **China**, you may include a maximum of 10 similar designs for the same product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more than one design is included, you **must** indicate one of them as the **main design**.

The applicant indicates the following design as the **main design** (e.g. design 1):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principal and related designs

If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designs may be registered as related to a principal design.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requests that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be registered as **related designs**: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c)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design** to which the designs indicated under item (b) are related (Note: The principal design must be subj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 The **principal design** is the subject of: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prior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Reference Number (e.g. 123456789, WIPO12345)

☐

a pri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a prior national application filed with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Number/Applicant's reference

☐

a prior national registration at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ii) If the above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tains several designs, indicate **the number of the design to be considered as the principal design**: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7.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ptional)

Publication will take pla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less the applicant selects one of the options below:

☐

immediate publication (upon recording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publication at a chosen time: months from the filing date.

Important: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ust be published within **30 months** of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of the priority date.

- If you designate Belarus, Belize, Benelux,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Finland,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Jamaica, Mexico, Monaco, Norway, OAPI, Poland, the Russian Federation, Samoa, Saudi Arabia, Sloveni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or Viet Nam,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2 months**.
- If Singapore is designated,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18.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f applicable)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Israel**, **Mexico**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eck the applicable boxes.

Israel

- ☐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a small entity whose yearly revenue does not exceed the amount set in the Israeli Design Regulations, or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cognized by Israeli law, and no priority is claimed under item 13.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a fee reduction, visit the [Israel Patent Office website](#).

Mexico

- ☐ The applicant declares under oath to fall into one of the categories (a creator who is a natural person, a micro or small entity, a public or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a public scientific or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Fourth General Provision of the Agreement setting forth the fees for services provided by the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 50 percent reduction of the corresponding amount applies.

Important: Applicants who wish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ntitled to micro or small enterprise status should consult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anish).

United States of America

- ☐ The applicant asserts **small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h)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 ☐ The applicant certifies **micro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3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PTO.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using Annex IV.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micro or small entity status, visit the [USPTO website](#).

19. 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Applicant

☐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If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em 5 above must be completed.)

Full name:

As indicated in item 1 or 5 above.

Date:

Day/month/year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PAYMENT OF FEES

- ☐ The applicant has requested deferred publication (more than 12 months indicated under item 17) and wishes to pay the publication fees at a later date. (Note: The publication fee must be paid no later than three weeks prior to the expiry of the deferment period.)

1. **Total in Swiss francs** (use the **Fee Calculator** or the Fee Calculation Sheet):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Account number: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Full name or authorized user name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WIPO receipt number:

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ay/month/year: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ay/month/year:	

5. Payment made to the Office (applicable to indirect filings only)

- ☐ Payment made to the USPTO

FEE CALCULATION SHEET (all amounts in Swiss Francs)

Note: This sheet is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Fee Calculat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may benefit from a 90% reduction in fees.

Basic fee

For one design: 397

For each additional design: 50 x designs =

Publication fees

17 x reproductions =

150 x pages showing reproductions (counting from page 2) =

Additional fee where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2 x words exceeding 100 =

Standard designation fee

Level 1

(Albania, Azerbaijan, Belize, Benelux,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Egypt, France, Greece, Italy, Liechtenstein, Monaco, Mongolia, Montenegro, North Macedonia, Oman, Rwanda,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ingapore, Slovenia, Spain, Suriname, Türkiye, United Kingdom, Uzbekistan)

For the first design: 42 x Contracting Parties =

For each additional design: 2 x designs x Contracting Parties =

Level 2

(Armenia, Belarus, Brazil, Bulgaria,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Germany, Hungary, Latvia, Mauritius, Morocco, Norway, Poland, Saint Kitts and Nevis, Saudi Arabia, Switzerland, Tunisia, Ukraine)

For the first design: 60 x Contracting Parties =

For each additional design: 20 x designs x Contracting Parties =

Level 3

(Brunei Darussala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land, Georgia, Ghana, Iceland, Jamaica, Lithuania, Namibia,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1, 2, 3, 5, 9, 11 or 19), Romania, Serb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Viet Nam)

For the first design: 90 x Contracting Parties =

For each additional design: 50 x designs x Contracting Parties =

Individual designation fee

Canada

370 x designs =

China

497 =

European Union

59 (first design) + 59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Israel

114 (standard amount) x designs =

68 (reduced amount (item 18)) x designs =

Japan

436 x designs =

Kyrgyzstan

129 (first design) + 64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Mexico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Mexico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notification by IMPI)

98 (first design) (standard amount) + 3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49 (first design) (reduced amount (item 18)) + 1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OAPI

Single design: 73 (standard amount) or 8 (f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Multiple designs: 110 (standard amount) or 12 (f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4, 6, 7, 8, 10, 12 to 18, or 20 to 32)

162 x designs =

Republic of Moldova

65 (first design) + 7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Russian Federation

107 (first design) + 22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Turkmenistan

589 (first design) + 36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invitation by the USPTO)

1,150 (standard amount) or 460 (for a small entity (item 18)) or 230 (for a micro entity (item 18)) =

TOTAL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The table below provides the type of designation fees payable.

A numeral (1, 2 or 3) indicates the applicable level of standard designation fees. The letters "IF" indicate that individual designation fees are applicable (amounts of all fees are indicated in the Fee Calculation Sheet).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Designation Fee
(AL) Albania	1
(AM) Armenia	2
(AZ) Azerbaijan	1
(BA) Bosnia and Herzegovina	1
(BG) Bulgaria	2
(BN) Brunei Darussalam	3
(BR) Brazil	2
(BW) Botswana	1
(BX) Benelux	1
(BY) Belarus	2
(BZ) Belize	1
(CA) Canada	IF
(CH) Switzerland	2
(CN) China	IF
(DE) Germany	2
(DK) Denmark	2
(EE) Estonia	2
(EG) Egypt	1
(EM) European Union (EU)	IF
(ES) Spain	1
(FI) Finland	3
(FR) France	1
(GB) United Kingdom	1
(GE) Georgia	3
(GH) Ghana	3
(GR) Greece	1
(HR) Croatia	2
(HU) Hungary	2
(IL) Israel	IF
(IS) Iceland	3
(IT) Italy	1
(JM) Jamaica	3
(JP) Japan	IF
(KG) Kyrgyzstan	IF
(KH) Cambodia	2
(KN) Saint Kitts and Nevis	2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
(KR) Republic of Korea	IF/3
(LI) Liechtenstein	1
(LT) Lithuania	3
(LV) Latvia	2
(MA) Morocco	2
(MC) Monaco	1
(MD) Republic of Moldova	IF
(ME) Montenegro	1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Designation Fee
(MK)	North Macedonia	1
(MN)	Mongolia	1
(MU)	Mauritius	2
(MX)	Mexico	IF
(NA)	Namibia	3
(NO)	Norway	2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F
(OM)	Oman	1
(PL)	Poland	2
(RO)	Romania	3
(RS)	Serbia	3
(RU)	Russian Federation	IF
(RW)	Rwanda	1
(SA)	Saudi Arabia	2
(SG)	Singapore	1
(SI)	Slovenia	1
(SM)	San Marino	1
(SR)	Suriname	1
(ST)	Sao Tome and Principe	1
(SY)	Syrian Arab Republic	3
(TJ)	Tajikistan	3
(TM)	Turkmenistan	IF
(TN)	Tunisia	2
(TR)	Türkiye	1
(UA)	Ukraine	2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F
(UZ)	Uzbekistan	1
(VN)	Viet Nam	3
(WS)	Samoa	1

DM/1/I (E)



ANNEX I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mandatory content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Declaration), following Rule 8(1)(a)(ii) OR, in the impossibility to provide such declaration,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Substitute Statement). Please provide a Declaration OR a Substitute Statement for each creator indicated under item 11 of the DM/1 form.
3. The Declaration and Substitute Statement require the signer to declare inventorship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a "claimed invention", refer to the [Hague Guide for Us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2](#).
4. This Annex may also be used by applicants who wish to submit an alternative document that they know is deemed a valid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requirements.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visit the USPTO website: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forms/aia_oathdecl_guide.pdf.
6.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Declaration/Substitute Statement/Alternative Document referred to above.
7.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For use by WIPO

Document type: DDO

Contracting Party: US

Declaration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ANNEX I – DECLARATION OF INVENTORSHIP (page 1 of 1)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iling declaration with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urnishing declaration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declaration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Legal Name of Inventor: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Inventor's Signature: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Date (optional):

Residence:

(required only if the inventor lives at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ity:

**U.S. State
(if applicable):**

Country:

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1 of 2)**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statement is directed to:

☐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urnishing statement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statement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Legal name of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Residence: (not required if the invento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the inventor is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City:

U.S. State
(if applicable):

Country:

I believe the above-named inventor or joint inventor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statement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Relationship to the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Legal Representative (for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inventor only)

☐ Assignee

☐ Person to whom the inventor is under an obligation to assign

☐ Person who otherwise shows a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 (a petition under 37 CFR 1.46 is required and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SPTO after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 Joint inventor

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2 of 2)

Circumstances permitting execution of this substitute statement:

- ☐ Inventor is deceased
- ☐ Inventor is under legal incapacity
- ☐ Inventor cannot be found or reached after diligent effort, or
- ☐ Inventor has refused to execute the oath or declaration under 37 CFR 1.63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Name:

Date (optional):

Signature:

The party who is signing the substitute statement must be an applicant. If the applicant is a juristic entity (legal entity), list the applicant name and the title of the signer below.

Applicant name:

Title of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The signer, whose title is supplied above,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

Residence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the signer's mailing address i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indicated below and the signe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ity:

U.S. State
(if applicable):

Country:

Mailing address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ity:

U.S. State
(if applicable):

Zip:

Country:

DM/1/II (E)



ANNEX 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under Section 408(c)(ii)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documents in support of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d/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refer to form DM/1, item 15). The submitted document(s) will be transmitted by WIPO to the Office(s) concerned.
2.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3. Submit only one Annex II per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gardless of how many Contracting Parties you have designated.
4. Please note that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might affect the applicant's rights in other jurisdiction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eserved.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when designating Japan, please visit the [JPO website](#).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For use by WIPO

Document type: DDD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e supporting document(s)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s), for which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claimed in item 15 of form DM/1:

- ☐ all designs, or
- ☐ the following designs:

Indicate the design number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e cover page):

DM/1/III (E)**ANNEX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under Rule 7(5)(g) and
Section 408(d)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optional and can be used to submit a statement under Rule 7(5)(g) that identifies information known by the applicant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concerned.
2.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 be used to submit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relevant accompanying documentation.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may also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3.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orms (SB08a/SB08b/SB08a-EFS-web) are available on the USPTO web site: 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visit the USPTO web site: www.uspto.gov/web/offices/pac/mpep/s609.html.
5.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For use by WIPO

Document type: DDP

Contracting Party: US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DM/1/IV (E)



ANNEX IV

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 under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s mandatory content if the applicant claims **micro entity status** in form DM/1.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2. This document is to submit a **certification** following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3. The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along with the instructions for its completion and signature, is available o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eb site: 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For use by WIPO

Document type: DDE

Contracting Party: US

Reduction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DM/1/V (E)



ANNEX V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IMPORTANT

1.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a document in support of a priority claim (priority document) t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d/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refer to DM/1 form, item 13). The submitted document(s) will be transmitted by WIPO to the Office(s) concerned.
2.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form at the time of filing.
3. Submit only one Annex V **per priority claim**, regardless of how many Contracting Parties you have designated.
4. Where the priority document is not submitted using this Annex, it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CNIPA, JPO and/or KIPO. In such a case, the priority document must be submitted to the Office concern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If the holder resides outside the country, it must be submitted through a local representative. The right of priority will be lost if the priority document is not submitted within this period.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when designating Japan, please visit the [JPO website](#).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the following reference number (applicant's or WIPO's reference number):

For use by WIPO

Document type: DDY

Priority Document

The document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s), for which priority is claimed in item 13 of form DM/1:

-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Indicate the design number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e cover page):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시행규칙·행정지침 (영한대역)

- 발행일 : 2025. 8.
- 발행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4동
(Tel : 042-481-5338)

ISBN : 979-11-6884-288-5 1350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